

생활용품 표시사항 작성 가이드북

GuideBook



생활용품 가이드북은 2021년 11월 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KPSA
한국제품안전협회
Korea Products Safety Association

이 가이드북은 사업자가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규정하는 **표시사항**을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제품별 특성에 따라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제작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생활용품 가이드북은 2021년 11월 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제품안전 관련 표시사항은
소비자 뿐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GuideBook CONTENTS



1

제품안전관리제도

제도 개요	06
표시사항 구성	07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는 시기	08
안전기준 열람 방법	08
제품 표시사항 위반 시 처분사항	09
참고사항	11

2

품목별 표시사항

안전인증	15
안전확인	27
공급자적합성확인	85
안전기준준수대상	115

부록

부록

지정 시험 기관	146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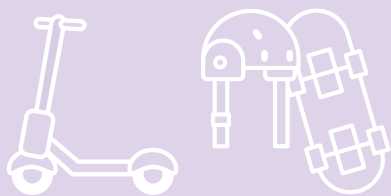
Index

색인	154
----	-----



1

제품안전관리제도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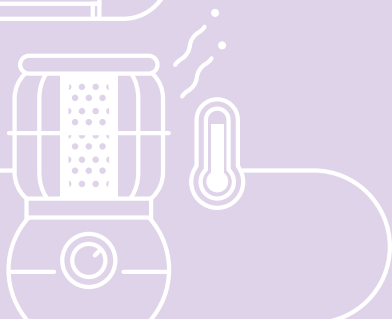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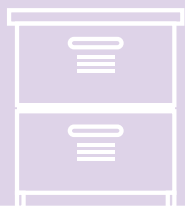
표시사항 구성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는 시기

안전기준 열람 방법

제품 표시사항 위반 시 처분사항

※ 참고사항



❶ 제도 개요

제품시장 출시 전(사전 인증, 시험 의무 부여)

생활용품은 ① 안전인증, ② 안전확인,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④ 안전기준준수 4가지로 안전관리 수준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수입업자가 ① 안전인증, ② 안전확인,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을 국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고(④ 안전기준준수는 시험의무 없음), 해당 제품에는 KC표시 부착 의무(④ 안전기준준수는 부착의무 없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수준별 시험·인증 절차〉



※ 법적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

제품시장 출시 후(제품 표시사항 및 법적 안전기준 준수 의무 부여)

국내 제조·수입업자는 사전인증 등을 거쳐 제품을 시중에 출시한 후에도,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과 함께 품목별 표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면서 제품을 유통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국가기술표준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연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제품 표시사항과 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제품의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와 내용에 따라 **제품 수거, 개선조치 등을 명령 또는 권고**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❶ 표시사항 구성

생활용품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KC표시 및 동법 운영요령에서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표시와 함께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시사항(모델명, 제조년월 등)을 조합하여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적요구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XXXXXXXXXXXXXXXXXX

인증기관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기재

- 안전인증 대상 제품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고번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기준준수 대상 제품 : 번호 미기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도안색상 :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3]에 따른 기타 필요한 표시

제품명	안전기준 상 제품명
모델명	제품별 세부 모델명(제품별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모델번호) *인증 받거나 신고한 경우는 인증서(안전확인 신고서)의 모델명과 동일하게 기재
제조업체명 (or 수입업체명)	제조업체명 (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 추가)
제조년월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제조년월, 로트번호,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연락처	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기재

2. 생활용품 품목별 안전기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각종 표시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설명서 등을 기재한다.
(예시)

제 품 명	비비탄총	제 조 연 월	2021년 11월
모 델 명	KPSA-1100	수 입 자 명	(수입제품인 경우에 한함)
제 조 자 명	한국제품안전협회	제 조 국 명	(수입제품인 경우에 한함)
주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사 용 연 령	14세 이상 19세 미만
전 화 번 호	02-000-0000	경 고 표 시	"청소년용을 어린이(만 14세 미만)에게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는 시기

국내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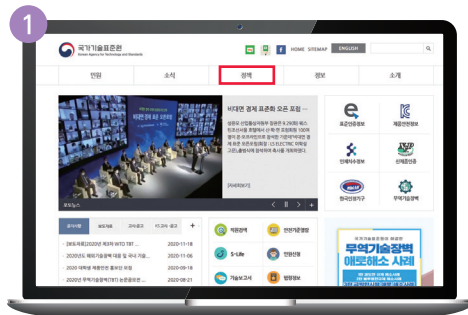
제품 출고 전 표시

수입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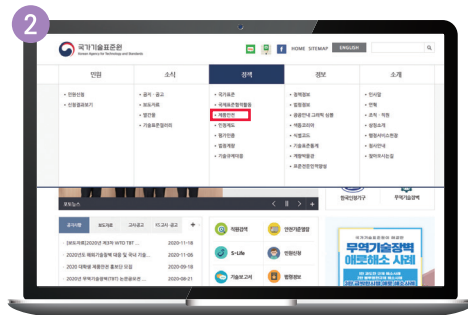
제품 통관 전 표시

① 안전기준 열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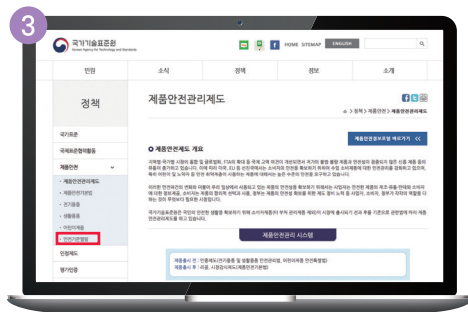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 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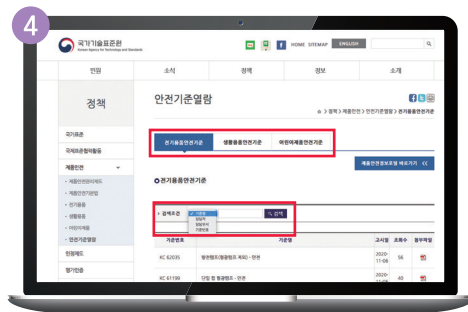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



정책 → 제품안전



제품안전 → 안전기준 열람



안전기준 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① 제품 표시사항 위반 시 처분사항

KC표시(KC마크 및 인증, 확인신고번호), 제조국, 제조년월 등의 제품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표시 등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선조치 권고

- 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에 따라 개선조치 명령 대상이 되며, 재고제품이나 향후 수입·제조하여 출고할 제품에 대해 개선을 완료한 후 국표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새로이 출고가 가능합니다.
- ※ 개선조치 명령 이후 개선조치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2. 형사고발 및 과태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KC표시 임의변경, 제거,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처벌내용	처벌기준	관련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제품에 KC표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23호, 제29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KC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2호, 제4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KC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2호, 제7호, 제13호, 제18호
	KC표시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4호, 제8호, 제14호
	KC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4호, 제9호, 제16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5호, 제19호

제품안전관리제도

3. 인증취소 및 표시 사용금지 등(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 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3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안전인증대상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2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3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2) 안전확인신고대상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2호	개선명령	안전확인신고 표시 사용금지 2개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안전확인표시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3호	개선명령	안전확인신고 표시 사용금지 2개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 제2호	개선명령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 제3호	개선명령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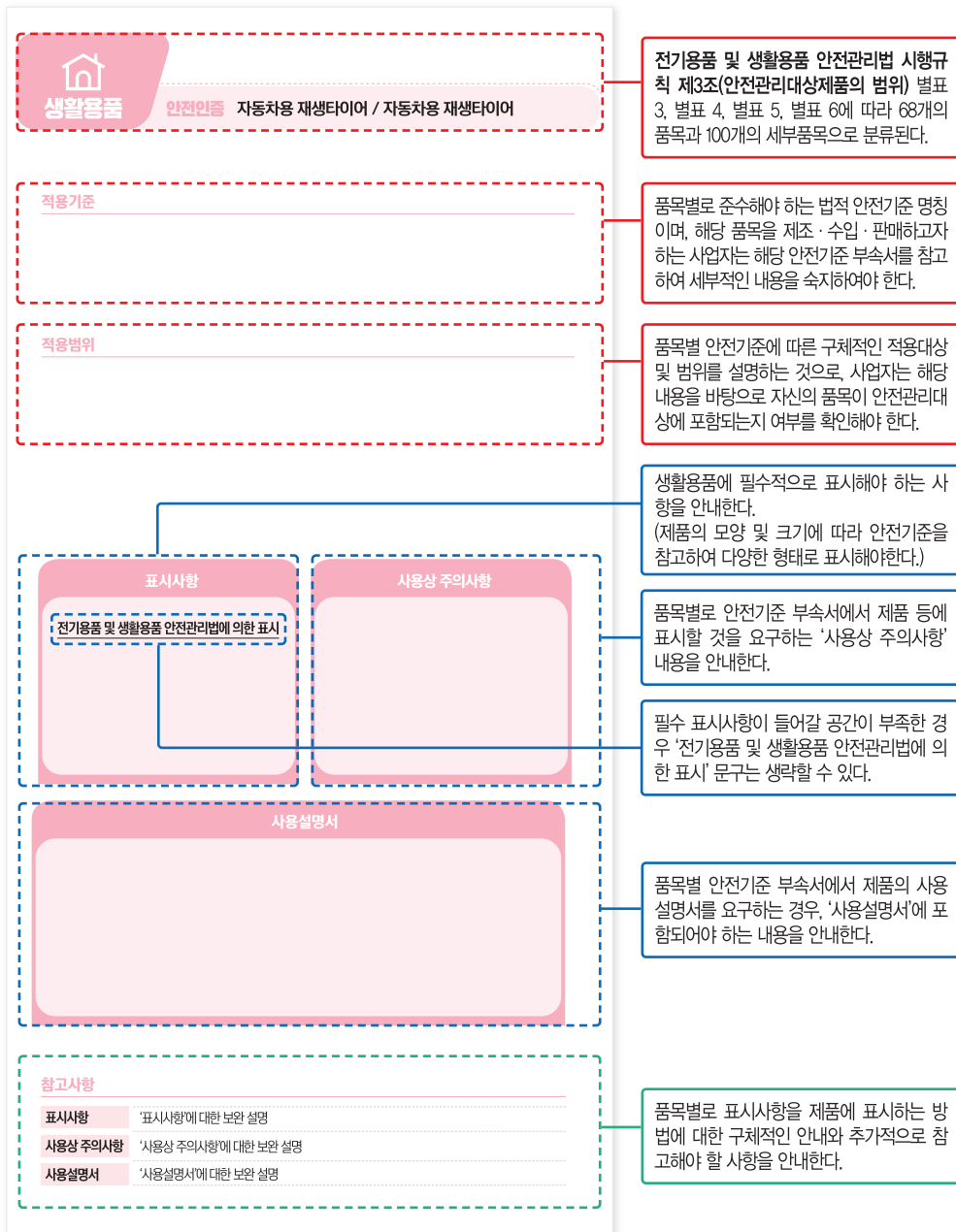
4) 안전기준준수대상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제2호	개선명령



①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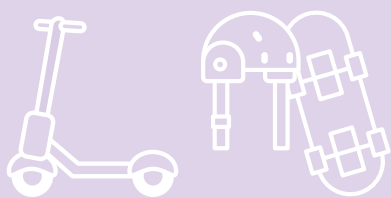
다음 장의 품목별 표시사항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있으며, 가이드북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품목별 표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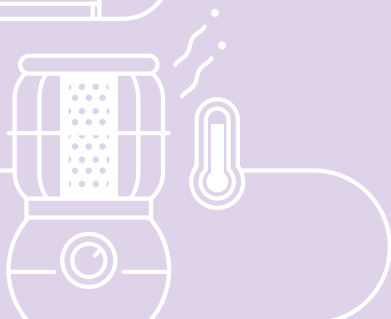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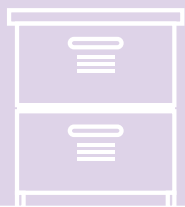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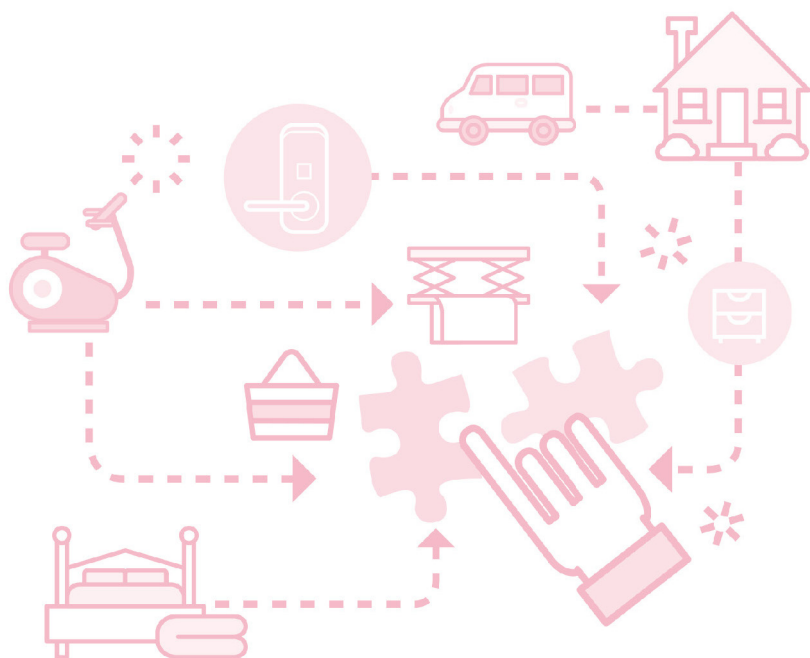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안전인증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타이어 재생용 트레드고무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솔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솔
가스라이터 /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물놀이기구 / 공기주입보트
물놀이기구 / 수영보조용품(착용형)
물놀이기구 /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비비탄총 / 청소년용
비비탄총 / 성인용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적용범위

자동차용 재생타이어란 페타이어의 트레드 고무 및 사이드 월 고무를 갈아내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한 타이어(타이어 재생용 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타이어의 크기
-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
- 제품명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모델명 : KPSA-1100
- 트레드 웨어 인디케이터(슬립라인)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호(△표시)
- 눈길용 타이어의 플레이트 폼(plate form)을 나타내는 화살표
- 재생타이어를 나타내는 약호
- 제조주차연도 : 2020년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 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경고

사용상 주의사항

1. 적재하중 및 운행 속도에 적합한 공기압 유지
2. 적정속도 준수(최대제한속도 60 km/h, 최대 연속주행시간 2시간)
3. 타이어가 가열된 상태에서 공기압 조정 금지
4. 복륜으로 장착된 두 타이어의 공기압이 동일하지 항상 확인
5. 도로상 이물질에 의한 충격 주의
6. 적절한 브레이킹 시스템 유지 및 정기적인 차량 점검 실시
7. 전륜 사용금지
8. 타이어 마찰 최소화
9. 과속, 과적 급제동 주의
10. 급격한 코너링을 피하여 운행
11. 운행조건에 알맞은 제품 사용

참고사항

표시사항

- 페타이어의 표시를 대응해도 좋다.
- 레이디얼 타이어에는 RADIAL / 벨티드 바이어스 타이어에는 BELT, BELTS 또는 BELTED / 눈길용 타이어에는 SNOW / 경트럭용 타이어에는 ULTRA LIGHT TRUCK / 소형 트럭용 타이어에는 LIGHT TRUCK 또는 그 약호
- 트레드 웨어 인디케이터(슬립라인) 타이어의 트레드 홈 깊이가 1.6 mm 까지 마모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트레드 웨어 인디케이터를, 승용차 및 경트럭용 재생타이어에 있어서는 원둘레 위의 4개소 이상에, 그 외의 재생타이어에 대해서는 6개소 이상에 넣어서 표시하여야 한다. 이 위치를 표시하는 기호(△표시)를 재생타이어 양쪽면에 재생타이어의 금형에 각인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스노우타이어는 b에 표시한 것 이외에도 트레드의 홈 깊이가 50 % 까지 마모된 것을 표시하는 플레이트 폼(plate form)을 타이어 원둘레 위의 4개소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그 위치를 표시하는 화살표(↑)를 타이어 양쪽면에 타이어의 금형에 각인 하여 표시할 수 있다.
- 타이어 표면(사이드월, 솔더부 등)에 각인의 방법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 단, 2회 이상 재생 시, 재생횟수만큼 약호를 각인(예: 2회 재행 (재) (재))



생활용품

안전인증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타이어 재생용 트레드고무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적용범위

타이어의 트레드고무 대체에 사용하는 미가황 트레드용 고무 및 가황된 트레드용 고무(이하 트레드용 고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타이어 재생용 트레드고무
- 종류
- 모델명 : KPSP-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기타 안전한 사유에 관한 주의·경고

사용상 주의사항

1. 트레드 폴리 부분 해지 시 오염물질이 닿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트레드를 열어 가까이 하지 마시고 물에 접촉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표시사항

- 트레드용 고무는 변질 및 상호 점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 권마다 셀로판, 폴리에틸렌 또는 기타 상호 점착이 되지 않는 재질의 필름을 사이에 끼워서 감아 포장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3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적용범위

내용적이 10 L 이하의 것으로 9.8 kPa 이상의 게이지압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에 대하여 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호칭(용량)
- 제품명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모델명 : KPSA-1100
- 설계사용압력(다단계일 경우 최고설계 사용압력 표기)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고무류의 종류 및 수명(교체주기)

사용상 주의사항

1. 뚜껑은 증기가 완전히 빠진 것을 확인 한 후 여시오.
2. 노즐구멍이 막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시오.
3. 최대 조리량을 넘기지 마시오.
4. 사용 전에 반드시 취급 설명서를 읽으시오(눈에 띄이게 표시)
5. 고무패킹을 오랜시간 사용할 경우 수축되어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주기적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시오.
6. 사용 전에 증기배출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 후 사용하시오.
7. 밥, 찜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특히, 삼계탕과 같은 점성이 강한 음식은 조리하지 마시오.
8. 가열하면 내부가 고온 고압상태가 되어 잘못 사용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9. 꼭 사용 전에 사용설명서를 읽고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서 사용하시오.
10.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사용설명서

1. 구조 및 성능 조리방법(최대 및 최소 조리량 포함)
2. 사용상 주의사항
3. 올바른고 안전한 제품사용 및 유지보전
4.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5.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 내용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함.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함.

사용 설명서

- 제품마다 사용부주의로 인체에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catalogue)나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함.
- 특정 작동순서가 안전하고 올바른 제품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5 가스라이터

적용범위

부탄 등의 가스를 연료로 하여 불꽃을 일으켜서 담배나 취사용 기구에 불을 점화시킬 용도로 고안된 가스라이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어린이가 장난감으로 취급할 수 있는 외형을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가스탱크가 금속재질이며 몸체가 금속재질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가스라이터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할 것
2. 얼굴 등 화상주의
3. 화재 주의
4. 50 ℃ 이상 또는 장시간의 일광에 노출 시 폭발위험
5. 구멍을 뚫거나 불 속에 던지면 폭발위험
6. 자동차 실내에 절대 보관금지

참고사항

표시사항

- 가스라이터 제품마다 표시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 주위 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예 : 적색글씨, 음양각 표시 또는 주위 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 등)으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7 물놀이기구

적용범위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란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사용한 공기실이 있고 공기에 의하여 팽창되면 형상과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여기서, '사용'이라 함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완구에 규정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을 내포하는 것으로, 에어매트리스, 에어베게, 편치볼, 비치볼과 같이 물에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검사대상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다만, 가정에서 사용할 의도로 제작된 어린이용 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경고문구(물놀이에 사용되도록 설계 되지 않은 에어매트리스의 경우에는 제품표면에 경고 문구를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물놀이기구로 이용 금지,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음”

사용상 주의사항

1. 구멍기구가 아니라는 표시와 수영장이나 풀장 등 안전한 곳에서만 사용하십시오.
2. 공기를 과하게 넣는 것은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공기를 과하게 넣지 마십시오.
3. 몹시 더운 때는 선체가 무르게 될 때가 있지만 공기의 추가 주입을 하지 마십시오.
4. 금지사항 표측한 바위, 표측한 자갈, 철조망 등 예리한 물질과의 접촉은 피하고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급류의 하천이나 추운 때의 사용. 고압펌프의 사용상의 주의와 함께 보관상의 주의를 명기할 것.
5. 공기주입 후 공기누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6.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사용설명서

1. 사용재료명, 치수(mm) 내경 × 외경 및 사용상 주의사항
2. 올바르게 안전한 제품 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사용 설명서	· 사용 재료명, 치수(mm) 내경 × 외경 및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한글 사용설명서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설명서에는 올바르게 안전한 제품 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7 물놀이기구

적용범위

공기주입 보트란 물에서 놀이나 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무 및 플라스틱을 주자재(직물로 도포한 것 포함)로 보트 형상으로 제조되고, 노 및 노반이가 있으며, 대인 1인 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성능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동력(모터)을 사용한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공기주입보트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경고문구(직물로 도포되지 않은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가소제가 포함된 제품은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본 제품을 입에 넣거나 입으로 불면 해로울 수 있으니 공기 주입기를 사용할 것"

사용상 주의사항

1. 구멍기구가 아니라는 표시와 수영장이나 풀장 등 안전한 곳에서만 사용하십시오.
2. 공기를 과하게 넣는 것은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공기를 과하게 넣지 마시오.
3. 몹시 더운 때는 선체가 무르게 될 때가 있지만 공기의 추가 주입을 하지 마시오.
4. 금지사항 뾰족한 바위, 뾰족한 자갈, 철조망 등 예리한 물질과의 접촉은 피하고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마시오. 급류의 하천이나 추운 때의 사용. 고압펌프의 사용상의 주의와 함께 보관상의 주의를 명기할 것.
5. 공기주입 후 공기누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6.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습기주의 등)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 재료명 및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7 물놀이기구

적용범위

착용형 수영보조용품은 사용자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물에 익숙해지게 하거나 수영동작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된 것으로 고체식과 팽창식 모두를 포함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수영보조용품(착용형)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경고문구(공기를 넣은 보조용품의 경우 공기주입 밸브로부터 100 mm 이내의 거리에 경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익사방지의 위험은 없음”
“적절한 감시 하에서만 사용하십시오”
“몸에 정상적으로 착용하십시오”
“팔의 위쪽에만 착용하십시오”
(팔에 착용하는 기구에만 적용됨)

사용상 주의사항

1. 공기를 주입하는 수영보조용품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 잠금장치의 사용법
2. 수영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착용하고 벗는 방법
3. 보관 및 사후관리 절차
4.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설명
5. 정보사항 및 경고 사항의 표시 크기는 10 × 5 cm 이상의 크기로 함

수영강습을 위한 수영보조용품	타입	체중 Kg
		50초과
물놀이에 친숙해지는 기구(착용용)	A	
수영 동작을 배우는 기구(착용용)	B	
경고: 익사 방지의 기능은 없음 적절한 감시 하에서만 사용할 것		

※ 기구의 크기 및 타입은 정보사항이 인쇄된 반칸 중 해당칸을 선택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식별되도록 한다.

참고사항

표시사항

- 각 제품에는 표시라벨이 있어야 하고 한글로 기록되어야 함
- 표시는 모든 수영보조용품 표면에 표시되어야 함
- 경고사항은 “경고”라는 제목은 길이가 7 mm 이상인 큰 문자로 인쇄하거나 양각으로 새겨 넣어야 함. 색상은 선택 가능하나 바탕색과 대칭되는 색상으로 하거나 튀어나온 형태로 인쇄하여 식별이 잘 되도록 해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포장사항 또는 동봉하는 설명서에 포함되어 함.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7 물놀이기구

적용범위

착용형 수영보조용품은 사용자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물에 익숙해지게 하거나 수영동작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된 것으로 고체식과 팽창식 모두를 포함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 **모델명** : KPSP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 (수입품에 한함)
- **경고문구** (공기를 넣은 보조용품의 경우 공기주입 밸브로부터 100 mm 이내의 거리에 경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익사방지의 위험은 없음”
“적절한 감시 하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1. 공기를 주입하는 수영보조용품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 잠금장치의 사용법
2. 보관 및 사후관리 절차
3. 보관용품의 특별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수영보조용품의 자세한 사용방법
4. 정보 및 경고사항

수영강습을 위한 수영보조용품 : C타입

수영동작의 일부를 향상시키는 용도이며 휴대용임

경고 : 익사방지의 기능은 없음
적절하고 계속 감시하는 상태에만 사용가능

참고사항

표시사항

- 각 제품에는 표시라벨이 있어야 하고 한글로 기록되어야 함
- 표시는 모든 수영보조용품 표면에 표시되어야 함
- 경고사항은 “경고”라는 제목은 길이가 5 mm 이상인 큰 문자로 인쇄하거나 양각으로 새겨 넣어야 함. 색상은 선택 가능하나 바탕색과 대칭되는 색상으로 하거나 튀어나온 형태로 인쇄하여 식별이 잘 되도록 해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포장상자 또는 동봉하는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함.
- 정보사항 및 경고 사항의 표시크기는 10 × 5 cm 이상의 크기로 하며 글자의 크기는 1.5 mm 이상이어야 하며 “경고”라는 글자는 크기가 5 mm 이상이어야 함.



생활용품

안전인증 비비탄총 / 청소년용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0 비비탄총

적용범위

청소년용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휘 탄환(직경 5.7 mm 이상 6.0 mm 이하의 구형)을 비행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장난감 총을 말하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사용 대상으로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 2에 의한 “모의총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탄환과 관련하여, 액체가 충전되어 있거나, 습기에 의해 크기나 형태가 현저히 변형되는 것, 완구에 해당하는 것은 비비탄총 탄환으로 보지 않는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

- 제품명 : 비비탄총(청소년용)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14세 이상 19세 미만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 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경고문구
“청소년용을 어린이(만 14세 미만)에게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1.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및 보관해야 합니다.
2. 얼굴과 머리를 향하여 쏘면 안 됩니다.
3. 눈이나 귀 옆에서 쏘면 안 됩니다.
4. 탄환이 눈에 맞으면 실명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사용하십시오.
5. 비비탄총의 파괴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구조를 바꾸거나 개조해서는 안 됩니다.
6. 탄환은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한 것 이외의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7. 그 외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

사용설명서

1. 사용상 주의사항
2. 그 외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사항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표면에는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와, 제품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15포인트 이상 글자 크기로 “만 14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하여야 함.
- 단위 포장에는 소비자 눈에 가장 띄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한글로 표시하되, 사용연령은 15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주위 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예 :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 음·양각등)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단위 포장의 가장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노란 바탕에 빨간색의 선명한 문자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함.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의 4의 보안경 의무착용 관련 문구는 다른 문구보다 최소 50 % 이상 더 크게 표시하여야 함.
- 포장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경고문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경고단어 “경고”는 안전주의 상징 “⚠” 앞에 있어야 함. 경고단어 “경고”는 경고 문구에서 다른 단어들보다 최소 50 % 이상 더 커야 함. 경고단어 “경고”는 주황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이어야 함
안전주의 상징 “⚠”은 느낌표 주위에 정삼각형으로 구성됨. 안전주의 상징 “⚠”은 경고단어와 같은 수평선에 있어야 함. 안전주의 상징의 높이는 경고단어 높이와 같거나 더 커야 함. 안전주의 상징의 짙은 삼각형은 검은색이고 느낌표 부분은 주황색이어야 함.
경고 문구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이거나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이어야 한다.
- 발사방해물(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발사방해물(탄속제한장치) 부착 위치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에는 안전장치의 잠금과 해제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사용설명서

- 사용설명서에는 사용연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작성되어야 한다.



생활용품

안전인증 비비탄총 / 성인용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0 비비탄총

적용범위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 압축가스 또는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직경 5.7 mm 이상 6.0 mm 이하의 구형)을 비행시킬 수 있는 장난감 총을 말하며, 사용연령은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정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 2에 의한 “모의총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탄환과 관련하여, 액체가 충전되어 있거나, 습기에 의해 크기나 형태가 현저히 변형되는 것, 완구에 해당하는 것은 비비탄총 탄환으로 보지 않는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비비탄총(성인용)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만 19세 이상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 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중국명(수입품에 한함)
 - 경고문구
- “성인용(만 19세 이상)을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1.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및 보관해야 합니다.
2. 얼굴과 머리를 향하여 쏘면 안 됩니다.
3. 눈이나 귀 옆에서 쏘면 안 됩니다.
4. 탄환이 눈에 맞으면 실명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사용하십시오.
5. 비비탄총의 파괴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구조를 바꾸거나 개조해서는 안 됩니다.
6. 탄환은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한 것 이외의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7. 어린이용품 판매점이 아닌 별도의 지정점에서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8. 그 외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

사용설명서

1. 사용상 주의사항
2. 그 외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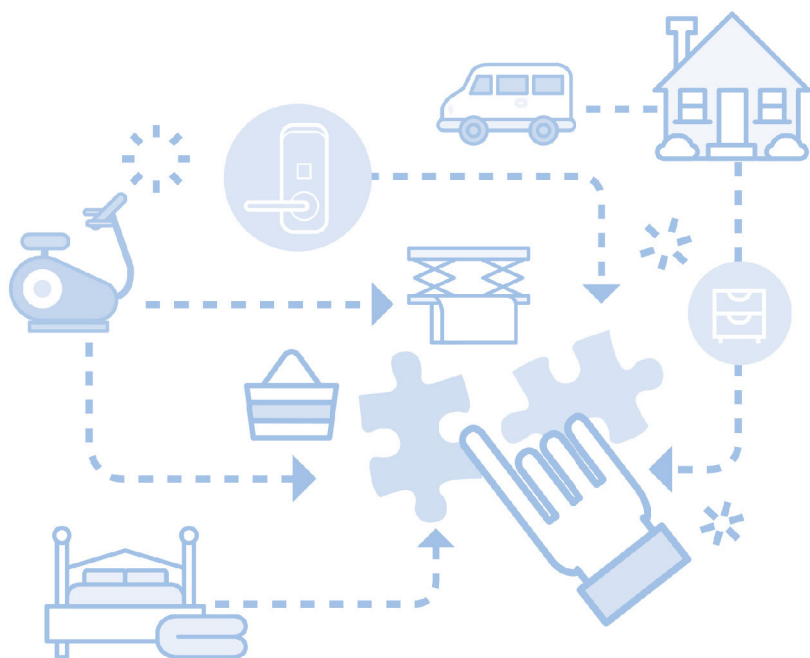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표면에는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와, 제품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15포인트 이상 글자 크기로 “만 19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하여야 함.
- 단위 포장에는 소비자 눈에 가장 띄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한글로 표시하되, 사용연령은 15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주위 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예 :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 음·양각 등)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단위 포장의 가장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노란 바탕에 빨간색의 선명한 문자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함.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 4의 보안경 의무착용 관련 문구는 다른 문구보다 최소 50 % 이상 더 크게 표시하여야 함.
- 포장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경고문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경고단어 “경고”는 안전주의 상징 “⚠” 앞에 있어야 함. 경고단어 “경고”는 경고 문구에서 다른 단어들보다 최소 50 % 이상 더 커야 함. 경고단어 “경고”는 주황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이어야 함.
- 안전주의 상징 “⚠”은 느낌표 주위에 정삼각형으로 구성됨. 안전주의 상징 “⚠”은 경고단어와 같은 수평선에 있어야 함. 안전주의 상징의 높이는 경고단어 높이와 같거나 더 커야 함. 안전주의 상징의 짙은 삼각형은 검은색이고 느낌표 부분은 주황색이어야 함.
- 경고 문구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이거나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이어야 한다.
- 발사방해물(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발사방해물(탄속제한장치) 부착 위치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에는 안전장치의 잠금과 해제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설명서에는 사용연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작성되어야 한다.





생활용품 안전확인

등산용 로프 /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 스포츠용 구명복
스포츠용 구명복 / 부력 보조복
건전지(충전지를 제외한다) / 건전지(충전지를 제외한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 자동차용 타이어
미끄럼방지타일 / 미끄럼방지타일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 워킹프레임
고령자용 보행차 / 롤레이터
고령자용 보행차 / 워킹테이블
디지털 도어록 / 디지털 도어록
롤러스포츠헤드장구 / 롤러스포츠헤드장구
스노보드 /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스케이트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스케이트보드 / 전동보드류
스키용구 /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 일반용 자전거
이륜자전거 / 산악용 자전거
이륜자전거 / 전기자전거

헬스기구 / 고정식운동기구
헬스기구 / 벤치 프레스
헬스기구 / 러닝머신
헬스기구 / 고정식 자전거
헬스기구 / 스텝퍼
헬스기구 / 로잉머신
헬스기구 / 운동용 슬라이더
휴대용 레이저용품 /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다) /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 자전거·롤러스포츠헤드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 등산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 스키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 야구용 안전모
실내용 바닥재 / PVC 바닥재
실내용 바닥재 /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 온열팩
수유판드 / 수유판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휴대용 예초기의 날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휴대용 예초기 보호덮개
기름 난로(연료소비량 600 g/h 이하) / 기름 난로
전동보드 /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보드 /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전동보드 / 전동외륜 / 이륜보드
야외 운동기구 / 야외 운동기구
가정용 미용기기 / LED마스크
가정용 미용기기 / 두피관리기
가정용 미용기기 / 눈 마사지기
가정용 미용기기 / 플라즈마 미용기기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등산용 로프

적용범위

등산용 로프란 등산·등반(암벽등반 포함)을 하는 자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는 밧줄 (로프)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

- **제품명** : 등산용 로프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 (수입품에 한함)
- **차수** (굵기 × 길이)
- **섬유의 조성** 외피실과 내피실 조직으로 덮여 짠 것은 심지실과 외피실로 구분하여 표시함.
- **사용이력카드** 사용일자,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기입할 수 있어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1. 바위의 각진 부분 등의 예상모양 또는 이에 준 하는 물체에 강한 충격으로 충돌하였을 때는 절단되는 수가 있다는 주의 사항
2. 사용 이력카드에 로프의 사용이력을 기록 관리하며 로프의 폐기시기의 결정에 참고하라는 주의사항
3. 사용횟수 또는 사용 년 수 등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로프의 사용수명에 대한 사항
4. 로프의 굵기 별 사용용도에 대한 주의사항(예 : 9mm 이하 제품은 주 등산용 로프의 사용을 금하고 가능한 보조용으로만 사용할 것 등)
5. 사용과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주의 사항
 -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읽은 후 보관할 것
 - 바위의 틈새에 끼워지거나 날카로운 모서리 등에 걸리지 말 것
 - 구두나 아이젠으로 밟거나 바위 위를 질질 끌지 말 것
 - 꼬여진 채로 사용하지 말 것 7.2.5.5 제동 확보를 할 것
 - 특히 험한 암벽 등에서는 이중 로프를 사용할 것
 - 감을 때 뒤틀리지 않도록 감으며, 가지고 다닐 때는 반드시 포대 속에 넣을 것
 - 화기에 가까이 하지 말 것
 - 사용 후에는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말려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차고 어두운 곳에 놓아 둘 것
 - 사용 후 손상의 유무를 확인할 것 또한 장시간 사용한 로프 및 한번이라도 큰 충격을 받은 로프는 겉모양에 손상이 없어도 사용하지 않을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별도의 사용설명서가 있는 경우에 표기 가능.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 스포츠용 구명복

적용범위

스포츠용 구명복이란, 스포츠 및 레저활동을 할 때 익사 방지 등 물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의복 형태의 모든 제품(이하 '구명복'이라 한다)을 말하며, 부력 보조복(buoyancy aids)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X

구명복
· 용도

구분	용도
A형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
B형	해변가 또는 악천후에 사용

- 제품명: 스포츠용 구명복
- 모델명: KPSA-1100
- 제조연월: 2020년 10월
- 제조자명: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치수 표시(예: 가슴둘레, 허리둘레, 제품 중량 등)
- 간단한 착용 및 고정방법
- 팽창식인 경우 사용기간과 유효기간
- 취급표시: 보관, 세탁방법 등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치수표시
- 간단한 착용 및 고정방법
- 팽창식인 경우 사용기간과 유효기간
- 취급표시: 보관, 세탁방법 등
- 가스실린더
- 실린더의 중량(g)
- 적정 충전량(g)
- 충전된 가스의 명칭 또는 화학구조식

사용상 주의사항

1. "방석(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금지" 표시
2. 팽창식인 경우 충분히 팽창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
3. "특정 의류와 함께 사용하거나, 특정 환경에서는 그 성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표시

사용설명서

1. 팽창식인 경우 충분히 팽창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
2. 착용자가 사용 전에 그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
3. 바다의 상태, 온도(기온)제한 등과 같은 사용상의 적절한 제한사항
4. 교환부품 및 교체방법과 서비스와 유지보수 설명, 포장방법에 관한 설명 등
5. 안전장비 및 기타의류와 관련된 장비로써의 호환성

참고사항

표시사항

- 각 제품에는 표시라벨이 있어야 하고 주된 내용이 한글로 기록되어야 함.
- 표시는 선명한 문자 또는 그림이 포함된 문자를 사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구명복으로 부터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함.
- 표시라벨의 식별표시는 최소 10회 이상의 순세탁에서도 지워지거나 변형이 없이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 표시라벨의 크기는 150 mm × 100 mm 이상이어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용도란에는 표에 해당 용도 부분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용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함.

사용설명서

- 사용설명서 각 제품에는 사용설명서가 있어야 하고 주된 내용이 한글로 기록되어야 함.



생활용품

안전확인 스포츠용 구명복 / 부력 보조복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 스포츠용 보조복

적용범위

부력 보조복이란 착용한 사람이 물에서 35 N 이상의 부력을 가지면서 정상적으로 뜬 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의복 형태의 제품으로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지역의 물에서 부피 또는 부력이 더 크면 착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면, 착용자가 위험 상태에서 수영을 하여 빠져 나오거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부력 보조복은 30 kg 이하의 체중을 가진 사람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X

안전확인

부력보조복

- 제품명 : 부력보조복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치수 표시(예: 가슴둘레, 허리둘레, 제품 중량 등)
- 간단한 착용 및 고정방법
- 팽창식인 경우 사용기간과 유효기간
- 취급표시 : 보관, 세탁방법 등
- 착용가능 체중 및 최소부력
- 용도

용도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부피 또는 부력이 더 크면 사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

가스실린더

- 실린더의 중량(g)
- 적정 충전량(g)
- 충전된 가스의 명칭 또는 화학구조식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방식(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금지” 표시
2. 팽창식인 경우 충분히 팽창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
3. “특정 의류와 함께 사용하거나, 특정 환경에서는 그 성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표시
4. “체중 30 kg 이하인 사람은 사용하지 말 것”

사용설명서

팽창식인 경우 충분히 팽창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

1. 착용자가 사용 전에 그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
2. 바다의 상태, 온도(기온)제한 등과 같은 사용상의 적절한 제한사항
3. 교환부품 및 교체방법과 서비스와 유지보수 설명, 포장방법에 관한 설명 등
4. 안전장비 및 기타의류와 관련된 장비로써의 호환성

참고사항

표시사항

- 각 제품에는 표시라벨이 있어야 하고 주된 내용이 한글로 기록되어야 함.
- 표시는 선명한 문자 또는 그림이 포함된 문자를 사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부력 보조복으로부터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함.
- 표시라벨의 식별표시는 최소 10회 이상의 손 세탁에서도 지워지거나 변형이 없이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 표시라벨의 크기는 150 mm × 100 mm 이상이어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용도란에는 표에 해당 용도 부분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용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함.



생활용품

안전확인 건전지(충전지를 제외한다) / 건전지(충전지를 제외한다)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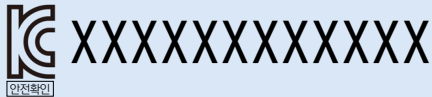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 건전지(충전지를 제외한다)

적용범위

1차 전지 중 망간 건전지, 알칼리 1차 전지 중 알칼리·망간 전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 특수용 및 단추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종류(전기화학적 기호와 모양 및 치수를 나타낸 기호의 조합. 단, 구형식을 병기하여도 좋음.)
 - 공칭 전압
 - 극성((+)극 및 (-)의 극성으로 표시)
 - 제품명 : 건전지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 권장 기한(유효 연월)
- 예) 사용 권장 기한(유효 연월)이 2012년 7월 일 때 : 07-2012(또는 07·2012)

사용상 주의사항

일반건전지는 충전하지 마세요

충전식 전지의 충전은 정해진 충전기로 하고, 일반 건전지를 충전하는 것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또한, 충전식 전지는 충전기가 달리지면 전지가 발열하거나 액이 새거나 하며, 파열의 원인이 됩니다.

+ , - 는 바르게

전지를 3개 이상 사용 가능한 기기는, 그 중 한 개가 + , -극이 거꾸로 세팅되어도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열하거나 액이 새거나, 파열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 -는 바르게 세팅해 주십시오.

상표나 종류가 다른 전지를 섞지 말 것

상표나 종류가 다른 전지를 섞으면 발열하거나 액이 새거나, 파열의 원인이 되므로 오히려 비경제적입니다.

전지를 불 속에 던져 넣지 말 것

무리한 취급을 하면, 전지 내부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이어집니다.

전지액이 눈에 들어가면

곧바로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치료를 받습니다.

전지액이 피부나 옷에 묻으면

피부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곧바로 깨끗한 물로 씻어내 주십시오.

쇼트 시키지 말 것

가방 안에서 +와 -에 목걸이 등 금속이 닿으면 쇼트/발열 합니다. 같이 휴대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참고사항

표시사항

- 몸체 또는 최소 단위 포장의 가장 눈에 띄기 쉬운 표면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극성은 제품 날개에 표시하여야 함.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0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적용범위

수송용 차량의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에 사용하는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이하 브레이크액)의 특성과 시험 방법 및 브레이크액을 위한 용기에서 갖추어야 할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브레이크액은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SBR),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계 합성 고무(EPDM)로 만들어진 밀폐 장치, 컵 또는 이중 판 구조의 패킹 마개를 갖춘 수송용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사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모델명 : KPSA-1100
- 종류 성분, 액상
- 실용량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1. 취급 시에는 물, 기름 및 티끌이 혼합하지 않도록 한다.
2. 독성이 있으므로 먹어서는 안된다.
3. 먹었을 경우는 곧 토해내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4. 보존하는 경우는 자동차용 브레이크액이라는 표시가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뚜껑을 막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이 용기에 다른 브레이크액을 넣어서는 안 된다. 또 이 브레이크액을 다른 용기에 채워서는 안 된다.
6. 탱크의 보충은 자동차마다 규정되어 있는 브레이크액 점검 보급의 취급방법에 따라야 한다.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
-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사항의 취지 내용을 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생활용품

안전확인 자동차용 타이어 / 자동차용 타이어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3 자동차용 타이어

적용범위

자동차용 타이어란 자동차의 주행을 목적으로 공기를 주입하여 차바퀴 둘레에 끼울 수 있도록 만든 타이어를 말한다. 다만 산업 차량용 및 건설 차량용, 농업 차량용, 이륜 자동차용 타이어는 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트레드의 마모 표시
- 트레드웨어 인디케이터(슬립 사인) 트레이드 홈이 1.6 mm 까지 마모된 것을 나타내는 표시
- 겨울용 타이어의 플랫폼 겨울용 타이어에는 트레드 홈이 50 % 까지 마모된 것을 나타내는 표시
- 사이드월의 표시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제품번호 또는 그 약호
- 타이어의 호칭
- 타이어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
- 제품명 : 자동차용 타이어 (타이어 표면에서 확인될 경우 생략)
- 제조주차년도 (OOOO, 예) 3409, 2009년 34번째 주 생산)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1. 타이어가 오래되었을 경우 갈라지는 등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타이어제품을 체크해야함
2. 휠얼라이먼트 : 편마모 및 핸들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 교체 후 실행
3. 타이어 공기압 체크 및 조정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 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함. 다만, b 및 c에 나타난 사항을 타이어의 금형에 각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타이어의 호칭은 KS M 6750 부속서 I에 따른다.
- 영문자의 경우는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표시한다.
- 타이어의 호칭 또는 상품명 등에 의해 명확한 경우는 생략해도 좋다.
- 타이어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는 다음에 따른다.
 - 1) 레이디얼 타이어에는 RADIAL
 - 2) 튜브리스 타이어에는 TUBELESS
 - 3) 겨울용 타이어에는 SNOW, M+S 또는 그에 준하는 문자
 - 4) 응급용 타이어에는 응급용을 나타내는 문자 표시 및 T타입 응급용 타이어에는 사용 공기압을 나타내는 표시
 - 5) 경트럭용 타이어에는 ULTRA LIGHT TRUCK 또는 그 약호
 - 6) 소형 트럭용 타이어에는 LIGHT TRUCK 또는 그 약호
 - 7)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의 홈 깊이가 얇은 타이어에는 HIGHWAY TREAD-J 또는 그 약호
 - 8)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의 홈 깊이가 깊은 타이어에는 EXTRA HEAVY TREAD 또는 그 약호, 다만 바이어스 겨울용 타이어의 경우는 생략해도 된다.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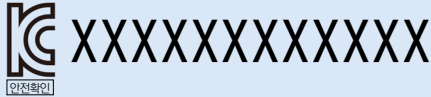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8 미끄럼방지타일

적용범위

미끄럼방지 타일이란, 욕실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때 수막현상으로 생기는 마찰력 감소로 인한 미끄럼 사고로부터 보호하거나 미끄럼 사고를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미끄럼방지 처리를 한 도자기질 바닥타일 및 모자이크 타일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제품의 표시

· 제조자명(또는 그 약호)

포장의 표시

- 제품명 : 미끄럼방지타일
- 종류(호칭명에 따른 구분, 소지의 질에 따른 구분, 유약의 유무에 따른 구분)
- 모델명 : KPSA-1100
- 모양 : 다만, 구성타일인 경우에는 제외함
- 치수 : 다만, 부속타일의 구성타일은 제외함
- 매수
- 타일 면적(㎡)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용도의 표시

· 옥내 바닥



◎ 최적



○ 조경부 사용 가능

· 옥외 바닥



△ 요구의



× 사용불가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타일은 오염성, 내약품성, 내마모성, 미끄럼 저항성 등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 제한, 시공상의 주의 등 사용상 주의 사항의 표시를 카달로그, 설명서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 표시의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산 세척 불가
- 도장 칠는 불가
- 욕실의 바닥, 경사면, 계단 등에 사용할 때 미끄러질 우려가 있음
- 유약의 색폭이 있음(요변성 있음)

비고

1. 타일 표면은 장식을 위하여 모양을 붙이거나 또는 평면 이외의 모양으로 할 수 있다.
2.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의 4모서리와 계단용의 뒷모서리는 원호로 할 수 있다.
3. 모떼기 및 모서리용은 직사각형으로 할 수 있다.
4. 계단용의 흠은 줄모양의 솟음으로 할 수 있다. 이 수는 어는 경우라도 2가닥 이상으로 한다.
5. 그림에 나타내는 모양이 좌우 비대칭인 것은 그 대칭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사항

표시사항

- 타일에는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함
- 다만, 제조 방법 때문에 곤란한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됨. 또, 구성 타일인 경우는 첨지에 표시할 수 있음.
- 포장의 겉면에 표시함.
- 부속서 4.1~4.4항 참조
- 타일은 소지의 질, 표면 및 유약의 상태, 접착성(흡수율, 뒷면의 모양)에 따라 적합 유무를 카달로그, 설명서 등에 명확히 표시한다.
- 또한 내동해성의 정도에 따라 한랭지 사용에 적합 여부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9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적용범위

자체적으로 자립보행이 가능한 고령자가 외출할 때 보행이나 물건의 운반 및 휴식에 이용하는 차바퀴가 4륜 이상의 보행 보조차(이하 “보조차” 라고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비고 : 보조차라는 것은 핸들, 프레임, 스톱퍼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다만, 보조차의 기능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체중의 일부를 바쳐 이동하는데 사용되는 고령자용 보행차의 기능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예를 들면 롤레이터류)은 이 기준에서의 적용을 제외 하고,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0(고령자용 보행차) 제2부(롤레이터)에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안전확인

- XXXXXXXXXXXXXXXXX
- 제품명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모델명 : KPSA-1100
 - 차의 적재중량
 - 최대 사용자 체중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1. 핸드브레이크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경사길 등의 사용에 주의(핸드브레이크가 붙어있지 않은 것)
2. 좌석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주차용 스톱퍼를 좌우 양바퀴에 걸어서 사용할 것
3. 이 제품은 주로 고령자의 외출 때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자립 보행할 수 없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음

사용설명서

1.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읽은 후에는 보관할 것.
2. 이제품은 주로 고령자가 외출할 때 보행이나 운반 및 휴식에 이용하는 제품을 자립보행 할 수 없는 사람(예 : 손잡이 등을 붙잡지 않으면 보행할 수 없는 사람)의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
3. 각부의 명칭(그림으로 표시할 것)
4. 조립 또는 조절, 접이 등의 방법 또는 주의방법
5. 주차용 스톱퍼 및 핸들 브레이크의 조작방법
6. 좌석의 사용방법
7. 가방 안에 유아를 실는 다든지, 좌석위에 사람을 실은 채 이동하지 않을 것
8. 보관방법(비 맞지 않도록 등) 및 손질 방법
9. 사용상의 주의
 - 최대사용체중을 지킬 것.
 - 가방 안에는 적재중량 이상의 화물을 실지 않을 것.
 - 사용전의 각부를 점검하고, 특히 핸드브레이크의 좌우 양바퀴의 성능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해서 사용 할 것.
 - 조립 및 조절은 확실히 행할 것.
 - 단차나 도랑이 있는 곳에서의 사용은 충분히 주의할 것.
 - 교통이 번잡한 곳, 혼잡한 곳 및 야간에서의 사용은 충분히 주의 할 것.
 - 타이어나 브레이크의 마찰이 없는지를 보수, 점검하고 필요 시 교환 할 것.
 - 좌석을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차용 스톱퍼를 좌우 양바퀴에 걸어서 사용할 것. 또 경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 핸들에 기대어 차체만이 앞으로 움직이지 않게 주의할 것.
 -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할 때는 좌우 양 바퀴를 동시에 걸것.
 - 또 캐스터를 가동상태로 해서 한 방향만의 브레이크를 걸면 회전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주의할 것. (브레이크가 좌우 분리되어있는 것)
10. 제원(각부의 치수, 중량 등)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 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 이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

사용설명서

- 알기 쉬운 내용으로 첨부한다. 단, 2에 대해서는 안전경고 표시를 해서 보다 알기 쉬운 것으로 할 것.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0 고령자용 보행차

적용범위

보행의 안정성 확보 또는 지지를 위해 이용하는 보행차 중 핸들 이외의 다른 지지 장치가 없고 프레임 하단부 다리 끝에 팀이 부착된 워킹프레임에 대해서 적용한다.

비고 : 워킹프레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바퀴가 부착된 제품은 제2부 롤레이터에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X

- 제품명 : 워킹프레임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최대 사용자 체중

사용상 주의사항

1. 취급 설명서를 반드시 읽은 후 보관할 것
2. 각 부분의 명칭(그림으로 표시할 것)
3. 조립 또는 조절 등의 방법 및 주의
 - 핸들을 적절한 위치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정성이 나빠지는 것이 있는 것
 - (핸들을 좌우 방향으로 조절 가능한 것)
 - 높이조절은 최대신장의 위치이하로 사용할 것 (높이 조절 가능한 것)
 - 폭, 길이, 지지판의 조절은 적절한 위치에서 행할 것 (본체의 폭, 길이, 지지판의 조절이 가능할 것)
4. 보관방법 (비 맞게 하지 않을 것 등) 및 손질방법
5. 사용상주의
 - 최대사용체중을 지킬 것
 - 사용 전에 각 부분을 점검하고 사용할 것
 - 조립 및 조절은 확실히 행할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알기 쉬운 내용으로 첨부하여야 함.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0 고령자용 보행차

적용범위

보행의 안정성 확보 또는 지지를 위해 이용하는 보행차 중 손잡이가 장착되고 3개 이상의 다리와 그 중 2개 이상은 바퀴를 가져 손잡이에 체중을 받쳐 이동하는 롤레이터에 대해서 적용한다.

비고 : 이 기준 제1부 워킹프레임 형태의 제품에 바퀴가 2개 이상 부착된 제품을 포함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롤레이터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최대 사용자 체중
- 옥내용, 옥외용

사용상 주의사항

1. 취급 설명서를 반드시 읽은 후 보관할 것
2. 각 부분의 명칭(그림으로 표시할 것)
3. 조립 또는 조절 등의 방법 및 주의
 - 부가장치(바구니, 쇼핑백 등)에 대한 최대용량
 - 핸들이 비스듬하게 조절이 가능할 경우, 핸들과 진행방향 사이의 허용 각도
 - 부재에 표기된 최대 연장 조절 높이
 - 최대 폭, 최대높이, 최소높이
 - 옥외용 또는 옥내용
4. 보관방법 (비 맞게 하지 않을 것 등) 및 손질방법
5. 사용상주의
 - 최대사용체중을 지킬 것
 - 사용 전에 각 부분을 점검하고 사용할 것
 - 조립 및 조절은 확실히 행할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알기 쉬운 내용으로 첨부하여야 함.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0 고령자용 보행차

적용범위

보행의 안정성 확보 또는 지지를 위해 이용하는 보행차 중 3개 이상의 바퀴 또는 틱이 달린 다리에 받침테이블 또는 팔뚝 받침을 가지고 있는 워킹테이블에 대해서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

- 제품명 : 워킹테이블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최대 사용자 체중
- 옥내용, 옥외용

사용상 주의사항

1. 취급 설명서를 반드시 읽은 후 보관할 것
2. 각 부분의 명칭(그림으로 표시할 것)
3. 조립 또는 조절 등의 방법 및 주의
 - 부가장치(바구니, 쇼핑백 등)에 대한 최대용량
 - 부재에 표기된 최대 연장 조절 높이
 - 최대 폭, 최대높이, 최소높이
 - 옥외용 또는 옥내용
4. 보관방법 (비 맞게 하지 않을 것 등) 및 손질방법
5. 사용상주의
 - 최대사용체중을 지킬 것
 - 사용 전에 각 부분을 점검하고 사용할 것
 - 조립 및 조절은 확실히 행할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알기 쉬운 내용으로 첨부하여야 함.



생활용품

안전확인 디지털 도어록 / 디지털 도어록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2 디지털 도어록

적용범위

디지털 도어록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 디지털도 어록이란 건축물 입구 출입문 등에 사용되며 모터나 솔레노이드 등의 전기적 동작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데드볼트나 래치볼트를 동작시키는 도어록(이하 “디지털 도어록”이라 한다)의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디지털 도어록
- **종류 및 기호**
예) 내화형, 온도센서식, 비열쇠식, 주카도어록 혹은 F-T-NK-M
- **모델명** : KP5A-1100(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수동개폐장치 부근에 “수동개폐장치” 표시**
- **“24시간 A/S 전화번호”**(제품에 직접 인쇄)

사용상 주의사항

1. 정격전압
2. 역삽입시 건전지의 회로가 차단되지 않는 구조일 경우 다음 문구 표시
“전자실내부의 건전지 삽입방향 및 극성표시와 함께 역삽입 시 누액이나 파열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의”
3. 건전지의 수명이 끝난 경우 동시에 모든 전지를 교체하고 사용하지 않은 전지와 사용 중이거나 사용이 완료된 전지를 혼용하지 말 것
4. 화재시 대비시험 중 온도센서형의 경우 센서동작 온도 표시
5. 다음 사항을 적색 글자당 가로 세로 5mm 이상으로 포장 표면 및 설명서 겉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한다.
“비상 대비 수동 개·폐장치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함”
비 열쇠식 도어록의 경우 다음 사항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주의 : 본 제품은 비 열쇠식 도어록으로 고장시 도어록 일부를 파손할 수 있음”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함.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및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4 롤러스포츠편 호장구

적용범위

롤러스포츠편 호장구(이하 '호장대'라 한다)란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넘어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손, 손목, 팔꿈치, 무릎에 입는 찰과상이나 찢어짐, 골절 등의 상해로부터 호장하거나 상해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호장대를 말한다. 다만, 롤러 하키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롤러스포츠편호장구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호장장구의 크기
- 해당되는 호장장구에 대해 왼쪽에 적합한지 오른쪽에 적합한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 호장장구에 의해 제공되는 호장의 수준에 대한 설명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 세탁방법
- 보관방법
- 올바른 착용방법
- 한번이라도 큰 충격을 받은 호장장구는 충격 흡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겉모양에 손상이 없더라도 사용하지 마시오.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1 스노보드

적용범위

스키장 등의 눈 위에서 사용되는 스노보드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

보드

- 제품명 : 스노보드(보드)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호칭길이
- 조임기구의 부착범위(구두중심위치)

부츠

- 제품명 : 스노보드(부츠)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신발의 크기
- (45 kg)의 최대 무게 및 그림 표시

바인딩

- 제품명 : 스노보드(바인딩)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25~45kg

사용상 주의사항

보드

1. 사용 후에는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할 것
2. 보드바닥은 가끔 왁싱 해줄 것
3. 옛지날이 무디어지면 날을 세워줄 것

부츠

1. 사용 후에는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할 것
2. 발에 꼭 맞는 부츠를 선택할 것(신어보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을 때 뒷부분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백이 남는 것이 좋다)
3. 스노보드는 타기 전에 조임장치를 확실히 조인 후에 탈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 제품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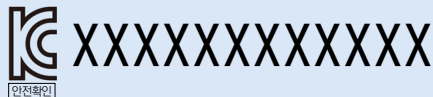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2 스케이트보드

적용범위

스케이트보드란 탑승자의 힘이나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레저 및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스케이트보드와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드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로 나눈다. 단, 연료를 사용하여 작동되는 것과 자전거나 오토바이형태로 되어 있는 것, 장애인 및 노약자가 사용하는 스쿠터는 이 규격에서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스케이트보드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최대하중(제조사 지정 한계하중)

사용상 주의사항

- 경고
-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를 착용한 후 탈 것
-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 차도나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 것
- 젖어있거나 편평하지 않는 표면에서는 타지 말 것
-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천천히 배울 것.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균형을 잃었다면 내려와서 다시 시작할 것. 처음에는 완만한 경사에서 타고 그 후에는 넘어지지 않고 보드에서 내릴 수 있는 속도의 경사면에서 탈 것.
- 탑승 중의 안전사고 대부분은 골절이므로 처음에는 스케이트보드 없이 떨어지는 방지연습을 할 것.
- 처음 배우는 사람은 친구나 보호자와 함께 탈 것.
-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뛰어 내리기 전에 스케이트보드 진행 방향을 인지 없는 곳으로 설정한 후 뛰어내릴 것.

사용설명서

- 사용 전 안전상태 확인
- 임의 또는 불법 개조 금지
-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 착용(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 기타 필요한 사항(위험한 장소의 사용금지, 도로교통법 준수 등)
- 합선보호, 과전류보호, 저전압보호 장치에 관한 내용
- 최대 주행 가능한 연속 주행거리
- 가속 및 브레이크 등 작동방법(전륜 및 후륜 브레이크에 대한 정보)
- 계기판의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
- 배터리의 충전시간 등 정확한 사용과 유지방법, 충전기의 안전한 사용방법 및 경고문
- 제품의 설명도와 전기단선도를 첨부
-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제품의 기능을 이해하기 전에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을 조작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대여하여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 배터리사양에 대한 설명(전압, 용량 등)
- 기타 제조업체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
- 스케이트보드 구조에 관한 정보 다음의 유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안전성을 해치는 어떠한 부품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유의사항
 - 자동잠금 너트와 다른 자동잠금장치가 그것의 효과를 잃는 시기를 알려주는 유의사항
- 스케이트보드 조정장치가 있을 경우 그것이 올바르게 조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연결구성부분이 견고한가를 확인하라는 지시사항
- 점검과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사항 장치의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정기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사항을 표시한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다양한 베어링 구조의 각기 다른 특징과 그것의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사항
 - 바퀴와 완충장치의 교체
 - 베어링의 윤활
 - 조정장치의 조절
 - 사용 중에 생겨나는 날카로운 모서리의 제거에 대한 지시사항
 - 이동 중의 점검사항
 - 갑판의 찌개진 조각과 틈을 발견해 필요시 그것을 교체해야 할 때에 대한 지시사항
 - 배터리 충전 및 교환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사항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기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경고문구는 제품의 날개에 다음의 “⚠경고”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스케이드보드 위에서 달리거나 뛰지 말 것”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2 스케이트보드

적용범위

전동킥보드는 배터리를 동력에너지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있고 붙잡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부착되어 있으며 좌석이 없고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타는 이동기구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동킥보드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최대하중(제조자가 지정한 한계하중)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
2.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를 착용한 후 탈 것
3.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4. 차도나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5.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 것
6. 젖어있거나 편평하지 않는 표면에서는 타지 말 것

사용설명서

1. 사용 전 안전상태 확인
2. 임의 또는 불법 개조 금지
3.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 착용(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4. 기타 필요한 사항(위험한 장소의 사용금지, 도로교통법 준수 등)
5. 합선보호, 과전류보호, 저전압보호 장치에 관한 내용
6. 최대 주행 가능한 연속 주행거리
7. 가속 및 브레이크 등 작동방법(전륜 및 후륜 브레이크에 대한 정보)
8. 계기판의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
9. 배터리의 충전시간 등 정확한 사용과 유지방법, 충전기의 안전한 사용방법 및 경고문
10. 제품의 설명도와 전기단선도를 첨부
11.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제품의 기능을 이해하기 전에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을 조작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대여하여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12. 배터리사양에 대한 설명(전압, 용량 등)
13. 기타 제조업체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경고문구는 제품의 날개에 다음의 "⚠경고"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알기 쉬운 내용으로 표시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2 스케이트보드

적용범위

전동이륜평행차란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자기평형장치(자이로스코프) 및 전기모터로 구동되며 각 측면에 바퀴가 있고 그 사이에 발판 및 핸들이 있어 입식자세로 탑승하여 핸들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이동기구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동이륜평행차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최대하중(제조사 지정한 한계하중)

사용설명서

1. 사용 전 안전상태 확인
2. 임의 또는 불법 개조 금지
3.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 착용(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4. 기타 필요한 사항(위험한 장소의 사용금지, 도로교통법 준수 등)
5. 합선보호, 과전류보호, 저전압보호 장치에 관한 내용
6. 최대 주행 가능한 연속 주행거리
7. 가속 및 브레이크 등 작동방법(전륜 및 후륜 브레이크에 대한 정보)
8. 계기판의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
9. 배터리의 충전시간 등 정확한 사용과 유지방법, 충전기의 안전한 사용방법 및 경고문
10. 제품의 설명도와 전기단선도를 첨부
11.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제품의 기능을 이해하기 전에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을 조작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대여하여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12. 배터리사양에 대한 설명(전압, 용량 등)
13. 기타 제조업체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
2.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를 착용한 후 탈 것
3.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4. 차도나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5.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 것
6. 젖어있거나 편평하지 않는 표면에서는 타지 말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경고문구는 제품의 날개에 다음의 “⚠경고”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알기 쉬운 내용으로 표시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2 스케이트보드

적용범위

전동보드는 전동외륜보드로 전동이륜보드로 나뉘어져 있다.

전동이륜보드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에너지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자기평형능력(자이로스코프)을 이용한 개인용 이동기구로 내장된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차체의 자세 상태를 판단하고 제품의 운동상태를 제어하며 가운데 바퀴가 있으며 그 양 옆으로 발판이 있는 이동기구이다. 전동이륜보드는 두륜보드라고도 하며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자기평형능력을 이용한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내장된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차체의 자세 상태를 판단하고 제품의 운동상태를 제어하며 양사이드에 각각 바퀴가 있으며 그 사이에 발판이 있는 이동수단이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동보드류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 (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최대하중 (제조자가 지정한 한계하중)

사용설명서

1. 사용 전 안전상태 확인
2. 임의 또는 불법 개조 금지
3.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 착용(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4. 기타 필요한 사항(위험한 장소의 사용금지, 도로교통법 준수 등)
5. 합선보호, 과전류보호, 저전압보호 장치에 관한 내용
6. 최대 주행 가능한 연속 주행거리
7. 가속 및 브레이크 등 작동방법(전륜 및 후륜 브레이크에 대한 정보)
8. 계기판의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
9. 배터리의 충전시간 등 정확한 사용과 유지방법, 충전기의 안전한 사용방법 및 경고문
10. 제품의 설명도와 전기단선도를 첨부
11.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제품의 기능을 이해하기 전에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을 조작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대여하여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12. 배터리사양에 대한 설명(전압, 용량 등)
13. 기타 제조업체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
2.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를 착용한 후 탈 것
3.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4. 차도나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5.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 것
6. 젖어있거나 편평하지 않는 표면에서는 타지 말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함.
- 경고문구는 제품의 날개에 다음의 “⚠경고”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알기 쉬운 내용으로 표시





생활용품

안전확인 스키용구 / 스키용구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3 스키용구

적용범위

스키를 타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여러 기구를 말하며 알파인용의 스키, 스키화(합성수지제) 및 스키바인딩(이하 “스키용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경기용 및 특수용도인 것은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

스키

- 제품명 : 스키용구(스키)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호칭길이
- 조임기구의 부착범위(구두중심위치)

스키화

- 제품명 : 스키용구(스키화)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신발의 크기

바인딩

- 제품명 : 스키용구(바인딩)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 스키 사용상 주의사항

1. 사용 후에는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할 것
2. 스키바닥은 가끔 왁싱 해줄 것
3. 옛날날이 무디어지면 날을 세워줄 것
4.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장에 15cm를 더한 길이의 것을 사용할 것

· 스키화 사용상 주의사항

1. 사용 후에는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할 것
2. 발에 꼭 맞는 스키화를 선택할 것(신어보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을 때 뒷부분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백이 남는 것이 좋다)
3. 스키는 타기 전에 조임장치를 확실히 조인 후에 탈 것

사용설명서

· 장착설명서

1. 바인딩의 해제 값의 조절 절차
2. 스키어에 대한 적절한 해제 값을 정하기 위한 권고
3. 바인딩이 정확하게 작동하는데 필요한 솔의 특징
4. 부츠 및 솔의 필요조건 및 필요에 따라서 다른 부품 장착의 준비
5. 지그의 사용, 스키와의 적합성 등의 바인딩의 준비 및 부착
6. 상이한 솔의 길이 및 높이에 적합한 시키는데 필요한 조절 지시, 솔의 중심 위치 결정과 길이 조절 방법
7. 부착 후의 기본적인 성능 테스트의 절차
8. 부착 지그 사용에 의한 바인딩의 부착 권장
9. 비대칭 해제 및 재 조절을 위한 간단한 절차

· 사용 설명서

1. 권장되는 설정의 중요한 변경에 대한 경고
2. 바인딩 착탈의 방법, 해제 후의 바인딩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 전도되었을 경우의 무리한 자세에서 바인딩을 벗어나는 방법 등에 관한 설명
3. 시간의 경과에 의한 해제 강도 증가 등의 트러블을 피하는 방법
4. 바인딩의 손질·보관·기능 유지의 방법
5.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용구 사용에 의한 바인딩의 조정 및 매년 조정의 권고
6. 깊은 눈에서 스키를 탈 때 스키 브레이크만으로는 스키판 분실 방지가 되지 않는다는 주의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 설명서

- 설명서 판매점에 대해서 장착 설명서를 배포하여야 함.
- 바인딩에는 모든 스키어에게 알기 쉬운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 이륜자전거

적용범위

이륜자전거 중 일반용자전거에 대하여 적용하며 일반용자전거란 일반도로에서 일상의 교통수단, 스포츠, 레저 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1인승용의 2륜 자전거를 말하며 프레임이 접음식 또는 분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X

- **제품명** : 일반용 자전거
- **종류**
- **모델명** : KPSA-1100
- **차체번호 차체번호는 일반적으로 일련의 통용번호로 함**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첨부카드**
- **바퀴의 고정**

사용상 주의사항

1. 취급 설명서를 읽고 읽은 후 보관할 것. 어린이가 사용하는 자전거는 보호자가 반드시 취급 설명서를 읽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지도할 것
2. 사용에 있어서는 교통 법규를 지킬 것(정지한 자동차의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한 주의, 보행자에게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장착 금지를 포함한다)
3. 적재하는 화물의 무게 및 크기의 한도, 적합한 캐리어의 용량 등급의 표시, 캐리어 및 바스켓의 사용주의(화물의 운반에 캐리어 및 바스켓 이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의 주의, 큰 용량 등급의 뒷 짐받이를 부착해도 무거운 화물을 적재하면 자전거의 안전성을 손상하므로 그 자전거의 허용 중량 이상은 적재할 수 없다는 뜻의 주의를 포함한다)
4. 유아용 좌석의 부착에 대하여는 부착의 가부, 부착 방법의 주의, 유아를 태울 때의 주의, 유아를 태운 채 주차하지 않을 것 등
5. 정상적인 승차 자세
6. 적절한 승차자의 체격(신장, 체중, 하체 치수 등)
7. 안장 및 핸들 높이의 조정 방법, 특히 끼워맞춤 한계 표시를 초과하여 조정하지 않는 것의 주의
8. 브레이크를 거는 법 및 주의(우천시에는 제동 거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주의를 포함한다)
9. 퀵 릴리스 허브의 사용법(바퀴의 탈착·고정력의 조정 방법 등)
10. 변속 기어 장치의 사용법
11. 주차시의 주의(자전거의 방치에 관한 주의를 포함)
12. 타이어의 권장 공기압
13. 접음 또는 분할의 방법 및 주의
14. 승용 직전의 확인
15. 앞 브레이크 및 뒤 브레이크 작동
16. 핸들 및 앞·뒷바퀴의 고정
17. 타이어의 공기압
18. 주행 중 의복의 자락 등이 체인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의
19. 점검·조정 시기, 점검의 위치 및 방법
20. 변형 부품은 즉시 교환할 것
21. 사용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판매점에서 점검을 받을 것
22. 1년에 한번, 그리고 이상을 느낀 경우에 판매점에서 점검을 받을 것
23. 브레이크 와이어 및 브레이크 블록의 교환 시기
24. 주의
25. 주유의 위치(그림으로 표시)
26. 브레이크 작동면에 주유 금지
27. 야간 사용시 주의
28. 전조등 및 미등의 점등 확인
29. 반사경이 파손되거나 더러워진 채로 사용하지 않을 것
30. 비 눈 및 강풍시의 사용상 주의
31. 보관상의 주의사항
32. 표준 예비 부품(부품 교환상의 주의, 적절한 타이어·튜브 등)
33. 어린이가 사용하는 자전거인 경우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를 착용한 후 승차할 것
34. 그 밖의 필요한 주의 사항(위험한 승차법이나 밟는 대 등 부적당한 사용 방법에 대한 주의)
35. 사용자를 위한 상담창구의 주소, 전화번호

견정사항

자물쇠 상자형 자물쇠를 부착한 자전거에는 반드시 회전 멈춤 및 떨어짐 방지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결모양 자전거의 결모양은 다음과 같다.

1. 도금 및 도장을 실시한 면에는 소지의 노출, 벗겨짐, 녹 그 밖의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도금 및 도장을 실시하지 않은 마무리 면에는 녹, 갈라짐 그 밖의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마크류에는 밀착 불량, 인쇄 불량, 어긋남 등이 없어야 한다.

참고사항

표시사항

- 자전거에는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 설명서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함.
- 자전거에는 차종, 제원, 기능, 성능 등을 기재한 카드 등을 잘 보이는 곳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확인 앞바퀴에 킥 릴리스 허브를 사용한 자전거에는 캠 레버측 앞포크의 잘 보이는 곳에 승차 전에 바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용상
주의사항

- 자전거에는 취급상의 주의 사항을 명시한 취급 설명서를 첨부함.
- 다만, 그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할 필요는 없음. 또 취급 설명서에는 일반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명시하거나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문자를 크게 하거나 별색으로 하는 등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 이륜자전거

적용범위

산악 전용 자전거(MTB)에 대하여 적용하며 산악 전용 자전거란 황야, 산악지대 등에서의 고속주행, 급한 고갯길의 오르내림, 단층 넘기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승용에 대응하여 경량화, 내충격성을 위시하여 주행성능 및 승차자세의 자유도 등의 향상을 꾀한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안장 높이의 조절폭 100 mm 이상의 차체, 평행 핸들, 캔틸레버형 캘리퍼 브레이크 등 폭 넓은 변속기어 및 나비호칭 1.5 이상의 블록패턴 타이어를 장비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산악용 자전거
- 종류
- 모델명 : KPSA-1100
- 차체번호 : 차체번호는 일반적으로 일련의 통용번호로 함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첨부카드
- 바퀴의 고정 확인

사용상 주의사항

1. 취급설명서를 잘 읽은 후에 보관할 것
2. 일반도로에서는 교통법규를 지킬 것
3. 적재하는 물건의 무게와 크기의 제한
4. 올바른 승차 자세
5. 타는 사람의 체격
6. 안장, 핸들의 높이 조정 방법
7. 핸들스텝과 같이 끼워 맞추는 부위의 한계표지를 초과하는 조정은 하지 않을 것
8. 브레이크의 조작법과 주의
9. 퀵 릴리스 허브의 사용방법(적정 조정 방법, 고정 확인 방법 등)
10. 변속기어 장치의 사용방법
11. 주차시의 주의사항(자전거 방치 등에 관한 주의)
12. 타이어의 공기압
13. 승차 직전의 확인사항
14. 앞 뒤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
15. 핸들과 앞뒤 바퀴의 고정상태
16. 타이어의 공기압
17. 기타 필요사항
18. 점검, 조정의 시기, 점검의 부위와 방법
19. 초기점검은 2개월 이내에 할 것
20. 매 1년마다 그리고 이상을 느낄 때는 즉시 점검을 받을 것
21. 브레이크 와이어의 교환 시기
22. 야간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
23. 전조등과 후미등의 점등 확인
24. 반사경의 파손여부 또는 유지상태
25. 비, 눈, 바람때의 주의사항
26. 주유
27. 주유 부위
28. 브레이크 제동면에는 주유 불가
29. 보관상의 주의사항
30. 기타 필요한 주의사항

참고사항

표시사항

- 자전거에는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 설명서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함.
- 차종, 제원, 기능, 성능 등을 기재한 카드 등을 잘 보이는 곳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앞바퀴에 퀵 릴리스 허브를 사용한 자전거에는 캠 레버측 앞포크의 잘 보이는 곳에 승차 전에 바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취급상의 주의 사항을 명시한 취급 설명서를 첨부함. 다만, 그 산악 전용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됨. 또 취급 설명서에는 일반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하거나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은 큰 글자 또는 색상별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함.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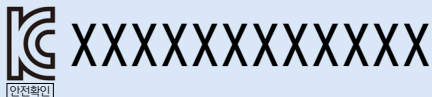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 이륜자전거

적용범위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기 모터 동력을 장착한 이륜자전거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기자전거
- 종류
- 모델명 : KPSA-1100
- 차체번호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첨부카드
- 바퀴의 고정 확인

사용상 주의사항

1. 취급설명서를 잘 읽은 후에 보관할 것
2. 일반도로에서는 교통법규를 지킬 것
3. 적재하는 물건의 무게와 크기의 제한
4. 올바른 승차 자세
5. 타는 사람의 체격
6. 안장, 핸들의 높이 조정 방법
7. 핸들스텝과 같이 끼워 맞춤 부위의 한계표지를 초과하는 조정은 하지 않을 것
8. 브레이크의 조작법과 주의
9. 킥 릴리스 허브의 사용방법(적정 조정 방법, 고정 확인 방법 등)
10. 변속기어 장치의 사용방법
11. 주차시의 주의사항(자전거 방치 등에 관한 주의)
12. 타이어의 공기압
13. 승차 직전의 확인사항
14. 앞 뒤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
15. 핸들과 앞뒤 바퀴의 고정상태
16. 타이어의 공기압
17. 기타 필요사항
18. 점검, 조정의 시기, 점검의 부위와 방법
19. 초기점검은 2개월 이내에 할 것
20. 매 1년마다 그리고 이상을 느낄 때는 즉시 점검을 받을 것
21. 브레이크 와이어의 교환 시기
22. 야간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
23. 전조등과 후미 등의 점등 확인
24. 반사경의 파손여부 또는 유지상태
25. 비, 눈, 바람때의 주의사항
26. 주유
27. 주유 부위
28. 브레이크 제동면에는 주유 불가
29. 전기 사용상 주의사항
30. PAS, Throttle 구동방식별 최대속도
31. 전기자전거 최대 무게
32. 보관상의 주의사항
33. 기타 필요한 주의사항

참고사항

표시사항

- 자전거에는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 설명서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함.
-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곳에서의 승차를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 및 PAS 구동방식 전기자전거에 한하여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표시를 하여야 함.
- 차종, 제원, 기능, 성능 등을 기재한 카드 등을 잘 보이는 곳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앞바퀴에 킥 릴리스 허브를 사용한 것에는 캠 레버쪽의 앞포크 다리에 스티커 등으로 승차 전에 바퀴가 윽게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취급상의 주의 사항을 명시한 취급 설명서를 첨부함. 다만, 그 산악 전용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됨. 또 취급 설명서에는 일반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하거나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은 큰 글자 또는 색상별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함.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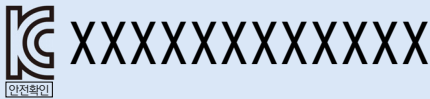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5 헬스기구

적용범위

고정식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고정식운동기구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설명서

가정용

1. 운동기구가 헬스기구 안전 확인기준 - 제1부 : 일반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이 가정용에 일치한다는 내용
2. 어린이들이 운동기구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동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어린이 보호책임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어린이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때에는 그들의 정신과 신체 발달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이 정확한 사용을 위해 통제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운동기구가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업소용

1. 운동기구가 헬스기구 안전 확인기준 - 1부 : 일반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이 업소용에 일치한다는 내용
2. 운동장비가 소유주에 의해 관리되고 유지되는 곳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통제의 정도는 사용자의 신뢰도, 연령, 경험 등에 따른다.
3. 운동기구가 축소형 케이스처리에 따라 설계된 경우, 사용자는 운동기간 내내 장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중량 스택은 제3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운동기간 동안 사용자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
4. 운동기구가 통제되는 곳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권고 업소용의 경우, 주요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간략한 설명서가 운동기구에 직접 부착되거나 가까운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생활용품

안전확인 헬스기구 / 벤치 프레스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5 헬스기구

적용범위

벤치 프레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벤치 프레스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설명서

1. 제품의 조립방법
2. 각 운동기구의 사용방법
3. 사용상의 주의사항

추가 사용설명서

헬스기구 안전확인기준 - 1부 : 일반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서 언급한 사용설명서에 추가하여 제조자는 자립형 바벨지대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설명서

- 한글사용설명서에는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생활용품

안전확인 헬스기구 / 러닝머신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5 헬스기구

적용범위

발이 이동면으로부터 자유로이 떨어질 수 있고, 걷거나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면을 가지는 체력훈련용 장비이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러닝머신
- 모델명 : KPSA-1100
- 정확도 등급
- 최대사용자체중
- 정격전압 및 정격모터 마력
- 정격소비전력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벨트의 폭 및 길이(mm)
- 어린이를 위한 보호조치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1. 사용방법 및 연습방법
2. 사용상의 주의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추가사용설명서

1. 고정방법
2. 비상차지
3. 비상정지 기능
4. 러닝머신 후방 2000 mm × 1000 mm 의 안전공간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 한글사용설명서에는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용설명서

-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사용설명서가 각 러닝머신에 제공되어야 함.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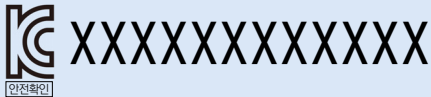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5 헬스기구

적용범위

고정식자전거는 페달에 힘을 가함으로써 일이 수행되는 자전거와 유사한 고정식 체력 훈련기구이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고정식 자전거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월일 : 2020년 10월 10일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어린이를 위한 보호조치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1. 제품의 조립방법
2. 사용상의 유의사항

추가사용설명서

1. 안장 및 핸들 조정, 최소안장 삽입깊이
2. 부하결정
3. 정확한 운동자세 및 장비용도에 대한 정보
4. A급 운동기구 설명서인 경우, 캘리브레이션 방법
5. 제동장치에 대한 정보
6. 사용자가 파워를 조절하는 방법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 설명서

-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가 각 고정식자전거마다 제공되어야 함.
- 일반인들이 고정식자전거를 작동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쉽게 작성되어야 함.
- 난해하고 복잡한 조작은 설명서에 부가하여 실례를 들어 설명하여야 함.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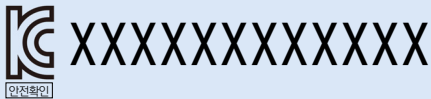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5 헬스기구

적용범위

발이 페달에서 이탈되지 않고 왕복운동형태로 움직이는 고정식 훈련 장비이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스텝퍼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월일 : 2020년 10월 10일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어린이를 위한 보호조치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1. 제품의 조립방법
2. 사용상의 유의사항

추가 사용설명서

1. 제동장치에 대한 정보(속도 의존형, 속도 독립형)
2. 스텝핑 동작에 대한 정보(속도 의존형 또는 속도 독립형)
3. A급 스텝퍼의 경우 시험변인 : 운동속도, 저항 설정 및 운동범위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 설명서

- 각 스텝퍼에 이해하기 쉬운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용품

안전확인 헬스기구 / 로잉머신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5 헬스기구

적용범위

노를 젓는 동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앉는 자리를 이동시키는 고정식 체력훈련 장비이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X

- 제품명 : 로잉머신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월일 : 2020년 10월 10일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어린이를 위한 보호조치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1. 제품의 조립방법
2. 사용상의 유의사항

추가 사용설명서

1. 하중 결정
2. 제동장치(속도 의존형, 속도 독립형)에 대한 정보
3. A급인 경우, 시험변인 : 운동속도, 저항 설정 및 운동범위
4. 안전취급 및 보관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설명서

-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사용설명서가 로잉머신별로 제공되어야 함.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5 헬스기구

적용범위

일정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왕복운동 또는 스프링 힘에 의해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한 기구이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운동용 슬라이더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월일 : 2020년 10월 10일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1. 제품의 조립방법 및 사용방법
2. 사용상의 주의사항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

-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기재되어야 한다.



생활용품

안전확인 휴대용 레이저용품 / 휴대용 레이저용품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6 휴대용 레이저용품

적용범위

휴대용 레이저용품이란 레이저를 외부로 방사하도록 고안된 휴대용 장치를 말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적용대상은 레이저 장난감 및 레이저 포인터에 한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X

- 제품명 : 휴대용 레이저용품
- 종류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1. 레이저광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2. 레이저광을 사람에게 향하지 마시오.
3.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게 하시오(A종에 한함)
4.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함.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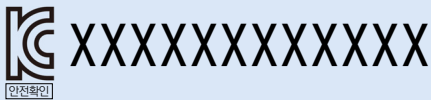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2 승차용 안전모

적용범위

승차용 안전모란 차량(4륜 자동차, 2륜 자동차, 원동기 부착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승차하고 있는 자의 머리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안전모를 말하며 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승차용 안전모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크기의 호칭(대형은 머리모형의 참조평면 바깥둘레가 61 cm 이상이고 중형은 57 cm 이상 61 cm 미만, 소형은 57 cm 미만임)
- 투시부의 재질(승차용 눈 보호구에 한함)
- 취급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① 승차용 안전모

주 의

1. 머리에 잘 맞는 안전모를 사용하십시오.
2. 턱걸이 끈은 반드시 바르게 매어 주십시오.
3. 한번이라도 큰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충격흡수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겉모양에 손상이 없더라도 사용하지 마시오.

② 승차용 눈보호구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사용설명서

1. 선택방법
2. 사용상의 주의사항
3. 보수 및 점검사항
4. 보관요령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생활용품

안전확인 운동용 안전모 / 자전거·롤러스포츠폰 안전모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

적용범위

자전거 및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등과 같이 시속 30 km 미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놀이기구 또는 스포츠·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가 착용하도록 고안된 안전모를 말한다.

가) 차양이 있는 안전모 나) 차양이 없는 안전모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X

- 제품명 : 자전거·롤러스포츠폰 안전모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머리에 잘 맞는 안전모 사용하십시오.
2. 턱걸이 끈은 반드시 바르게 매어주십시오.
3. 한 번이라도 큰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충격흡수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겉모양에 손상이 없더라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4.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사용설명서

1. 올바르게 안전한 제품 사용
2. 유지보전에 필요한 정보
3. 사용설명서 발간 일자
4. 환경 및 자원의 보존 내용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함.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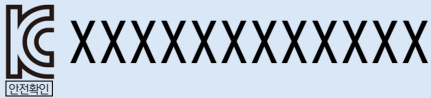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

적용범위

계곡등반, 암벽등반, 트래킹, 고소 등반 등산을 하는 자가 착용하도록 고안된 안전모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등산용 안전모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크기의 호칭 및 무게(무게는 50 g 단위로 표시함)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안전모를 착용자에게 맞게 조절하여 사용하십시오.
2. 심한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폐기하십시오.
3. 예정된 보호기능을 보증하기 위해 안전모를 머리에 쓰는 방법
(예, 이마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모를 놓아야하고 안전모를 머리의 뒷부분으로 너무 밀어서는 안됩니다.)
4.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음.



생활용품

안전확인 운동용 안전모 / 스키용 안전모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

적용범위

스키 또는 스노보드 등을 이용하여 눈 위에서 타는 자가 착용하도록 고안된 안전모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스키용 안전모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크기의 호칭 및 무게(무게는 50 g 단위로 표시함)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안전모를 착용자에게 맞게 조절하여 사용하십시오.
2. 심한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폐기하십시오.
3. 예정된 보호기능을 보증하기 위해 안전모를 머리에 쓰는 방법
(예, 이마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모를 놓아야하고 안전모를 머리의 뒷부분으로 너무 밀어서는 안됩니다.)
4.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음.



생활용품

안전확인 운동용 안전모 / 야구용 안전모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

적용범위

야구를 하는 자가 착용하도록 고안된 안전모를 말한다.

가) 타자용 나) 포수용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야구용 안전모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머리에 잘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십시오.
2. 한 번이라도 큰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충격흡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겉모양에 손상이 없더라도 사용하지 마시오.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음.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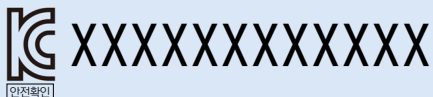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7 실내용 바닥재

적용범위

주택, 아파트, 보육시설 등 사람이 거주, 체류하는 건축물 내부 바닥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PVC 계통의 바닥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용도(운동용/비운동용)
운동용 제품의 경우 '비운동용 겸용'이라는 문구를 부기할 수 있음
- 제품명 : PVC 바닥재
- 모델명 : KPSA-1100(제품 뒷면에 표기시 약호 사용 가능)
- 치수(두께, 나비, 길이)
- 제조연월 또는 로트번호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제품 뒷면에 표기 시 약호 사용 가능)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하며, 제품 뒷면에 표기 시 약호 사용 가능)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마다 표시를 하여야 함.
- 또한 제품 뒷면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KC마크, 용도, 모델명, 제조연월(또는 로트번호) 및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은 제품의 뒷면 매 1 m 이내 마다(제품 길이가 1 m 이하인 경우 1회) 인쇄 등의 방법으로 지워지지 않게 표시하여야 함.
- 다만, 비닐바닥타일은 제품의 뒷면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생활용품

안전확인 실내용 바닥재 /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7 실내용 바닥재

적용범위

주택, 아파트, 보육시설 등 사람이 거주, 체류하는 건축물 내부 욕실의 바닥에 사용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욕실 바닥매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적용대상에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 모델명 : KPSP-1100
- 치수(두께, 나비, 길이)
- 제조연월 또는 로트번호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발이 끼거나 빠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발이 끼거나 빠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 등)은 제품 또는 포장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



생활용품

안전확인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 온열팩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8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적용범위

사용 시에 불, 전기 등의 외부 에너지(산소, 물 등을 제외한다.)를 제공하지 않고, 내장된 성분의 화학 반응을 열원으로 하여 온도가 상승되는 온열 용품(이하 주머니 난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군납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X

- 제품명 : 온열팩
- 모델명 : KPSA-1100
-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NOP, DINP 또는 DIDP가 포함된 주머니 난로는 제품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사용상 주의사항

1. 저온 화상의 주의
2. 침구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온도보다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한 주의
3. 유아, 피부가 약한 사람,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의 사용에 관한 주의
4.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는다는 주의
5. 붙이는 타입에서는 직접 살에 붙이지 않는다는 주의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함.
-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사용상 주의사항

- DNOP, DINP 또는 DIDP가 포함된 주머니 난로는 제품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예)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생활용품

안전확인 수유판드 / 수유판드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9 수유판드

적용범위

수유판드란 모유수유 기간 동안 모유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유부가 착용하는 직물 또는 부직포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수유판드
- 모델명 : KPSA-1100
- 재료(주재료명을 표기하며 안감, 흡수층, 방수층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 포장단위 : 최소 판매단위 개수로 표시함
-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피부에 발진 등 이상이 생기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할 것
3. 기타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추가 주의 사항(필요시)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음.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0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적용범위

휴대용 동력 예초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금속재질의 회전 절단날(metal blade for brush cutters, 이하 절단날이라 한다. 예초용으로 제작된 초경팁 달린 둥근톱형 절단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호칭 치수(L × T)
- 절단날의 재료명(또는 기호)
- 제품명 : 휴대용 예초기의 날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경고문구 : “위험 : 상해 위험”

사용상 주의사항

1. 작업시 보호장구 착용 안내
2. 비산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 보호구,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그 외 신체를 보호하는 긴소매의 작업복, 작업신발 등을 착용하고 사용하십시오.
3. 사용전에 잔디속의 돌, 나뭇조각, 금속파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사용하십시오.
4. 용도 이외(돌이나 철구조물 등 장애물 제거) 사용 금지
5. 작업시 반드시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십시오.
6. 날부의 연결에 사용되는 연결핀이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십시오.
7. 날 주위에 이물질이 끼어 정지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예초기 동력을 차단하고 제거하십시오.
8. 예취날은 작업 용도에 적합한 날을 준비하십시오.
9. 절단날의 비산방호 커버를 반드시 부착하고 사용하십시오.
10. 작업 주위 반경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십시오.
11. 작업 중 절단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용하십시오.
12.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올 때 및 야간에는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13.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습기주의 등)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날개에는 중심축으로부터 반경 70 mm 이내에 음각으로 호칭 치수(L × T), 절단날의 재료명(또는 기호), 모델명, 제조회사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함.
- 제품의 표면에 “⚠ 위험 : 상해 위험”이라는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생활용품

안전확인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휴대용 예초기 보호덮개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0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적용범위

휴대용 동력 예초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제조된 회전 절단날(blade for brush cutters)에 부주의한 접촉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덮개의 겉모양, 치수 및 강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잔디 전용 예초기의 보호덮개는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휴대용 예초기 보호덮개
- **모델명** : KP5A-1100(제품 표면에 표기 시 약호의 사용이 가능하며 표준형(s) 및 일반환경형(N) 약호 표시는 생략)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사회사명** : 한국제품안전협회(제품 표면에 표기시 약호 사용 가능)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경고문구**

사용상 주의사항

1. 작업시 보호장구 착용 안내
2. 비산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 보호구,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그 외 신체를 보호하는 긴소매의 작업복, 작업 신발 등을 착용하고 사용하십시오.
3. 사용전에 잔디속의 돌, 나뭇조각, 금속파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사용하십시오.
4. 작업시 반드시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십시오.
5. 날부의 연결에 사용되는 연결핀이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십시오.
6. 날 주위에 이물질이 끼어 정지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예초기 동력을 차단하고 제거하십시오.
7. 예취날은 작업 용도에 적합한 날을 준비하십시오.
8. 절단날에 적합한 비산방호덮개(안전 덮개를 반드시 부착하고 사용하십시오).
10. 작업 주위 환경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십시오.
11. 작업 중 절단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용하십시오.
12.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올 때 야간에는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13.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파손주의 등)
14. 안전 덮개의 탈부착 방법 및 주의사항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표면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KC마크, 모델명, 제조회사명을 표시하여야 함.
- 또한 개별제품의 포장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예초기 완제품 포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개별제품 포장에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예시 : “툽날용-표준형-일반환경형”은 “툽날용”으로 표기, 기타 “툽날용 F”, “툽날용 FE”
- 제품의 표면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날회전방향표시 및 “⚠️위험:상해 위험, 예취날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라는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함.
- 다만 예초기 완제품이나 예초기 날용으로 비치된 안내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음.



생활용품

안전확인 기름 난로(연료소비량 600 g/h 이하) / 기름 난로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1 기름 난로

적용범위

등유를 연료로 하고 연료 소비량이 600 g/h 이하인 이동형 개방식 기름 난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명판 표시

- 난로 명칭
- 종류(연소 방식 및 용도별 방식('난방용' 표시는 생략해도 됨))
- 형식의 호칭
- 사용 연료 및 기름 탱크 용량(L)
기름 탱크 용량의 표시는 난로와 기름 탱크가 일체로 된 것에 한함
- 연료 소비량(연소량의 조절이 가능한 것은 최대 연료 소비량(L/h))
- 발열량(kJ/h) 또는 kW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한국제품안전협회
- 제조연월 또는 그 약호 : 2020년 10월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모델명 : KP5A-1100
- 제품명 : 기름 난로

취급 표시

- 급유상의 주의(난로와 기름 탱크가 일체로 된 것에 한함)
- 점화 및 소화의 방법
- 환기에 관한 주의(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1시간에 1~2회 환기하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할 것)
- 취침 시 소화에 관한 사항
- 화력 조절방법(연소량의 조절이 가능한 것에 한함)
- 보관상의 주의
- 건전지를 사용한 전기 점화 장치가 있는 난로에 한함
- 취급 설명서를 읽고 바르게 사용하라는 내용의 주의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 손잡이 등의 표시
- 유량계의 표시
- 기름 탱크의 표시
- 사용 연료 : 백등유(가솔린, 보일러 등유 사용 금지)
- 연료 공급은 반드시 불을 끈 상태에서 하십시오.
- 형식 검사 합격의 표시
- 표시 보기 형식 검사 합격

사용설명서

1. 난로 명칭
2. 형식 호칭
3. 주의 사항
4. 사용하는 장소
5. 각 부의 명칭
6. 사용 전의 주의(포장재의 제거 또는 그 확인과 부품의 장착, 건전지 등의 장착, 연료에 관한 주의사항, 급유에 관한 주의, 점화전의 준비와 확인 등을 포함)
7. 사용방법(점화, 화력 조절, 소화, 사용상의 주의 등을 포함)
8. 안전 장치
9. 점화, 청소
10. 부품의 교환 요령
11. 고장, 이상의 구별방법과 조치방법
12. 보관(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포장 용기에도 기재할 것.)
13. 심지 종류 및 치수
14. 사후 관리(고장, 수리할 때의 연락처)
15.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참고사항

표시사항

- 난로에는 적당한 곳에 탈락하지 않으며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또한 아래 사항 중 형식의 호칭 및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에 대하여서는 난로 본체에 각인 또는 조각,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함. 다만 알루미늄, 그 밖의 경합금 이외의 금속 명판을 사용하여 코킹 또는 나사 조임한 것은 본체에 각인하지 않아도 좋음.
- 난로에는 잘 보이는 곳에 떨어지지 않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난로에 따라서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표시하지 않아도 좋음.
- 난로의 손잡이 등에는 점화, 소화, 그 밖의 필요한 조작 요령, 회전(이동) 방향 등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또한 점화, 소화의 표시에는 잘 보이도록 14호 활자 정도 이상의 크기인 것을 사용하고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함.
- 난로의 유량계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공량, 최대량, 최소량, 위험범위 등을 표시하여야 함. 또한 기밀 기름 탱크의 경우는 이에 따르지 않음. 최대량의 표시에는 'F', 최소량의 표시에는 'E'를 사용하여 잘 보이도록 10.5호 활자 정도 이상의 크기인 것을 사용함.
- 난로의 기름탱크에는 급유할 때 잘 보이는 위치에 쉽게 떨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문자를 16호 활자 정도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함.
- 형식 검사에 합격한 난로에는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2 전동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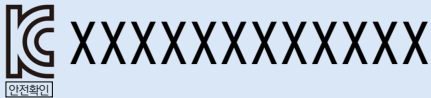
적용범위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스케이트보드를 말한다.

스케이트보드란 체중이 20 kg 을 초과하는 탑승자 혼자서 힘이나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가속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수레와 바퀴가 있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연결 갑판으로 구성된 놀이기구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동스케이트보드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최대하중(제조자가 지정한 한계하중)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
2.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를 착용한 후 탈 것
3.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4. 차도나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5.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 것
6. 젖어있거나 편평하지 않는 표면에서는 타지 말 것
7.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천천히 배울 것.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균형을 잃었다면 내려와서 다시 시작할 것. 처음에는 완만한 경사에서 타고 그 후에는 넘어지지 않고 보드에서 내릴 수 있는 속도의 경사면에서 탈 것.
8. 탑승 중의 안전사고 대부분은 골절이므로 처음에는 스케이트보드 없이 떨어지는 착지연습을 할 것.
9. 처음 배우는 사람은 친구나 보호자와 함께 탈 것.
10.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뛰어 내리기 전에 스케이트보드 진행 방향을 인적 없는 곳으로 설정한 후 뛰어내릴 것.

사용설명서

1. 사용 전 안전상태 확인
2. 임의 또는 불법 개조 금지
3.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 착용(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4. 기타 필요한 사항(위험한 장소의 사용금지, 도로교통법 준수 등)
5. 합선보호, 과전류보호, 저전압보호 장치에 관한 내용
6. 최대 주행 가능한 연속 주행거리
7. 가속 및 브레이크 등 작동방법(전륜 및 후륜 브레이크에 대한 정보)
8. 계기판의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
9. 배터리의 충전시간 등 정확한 사용과 유지방법, 충전기의 안전한 사용방법 및 경고문
10. 제품의 설명도와 전기단선도를 첨부
11.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제품의 기능을 이해하기 전에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을 조작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대여하여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12. 배터리사양에 대한 설명(전압, 용량 등)
13. 기타 제조업체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
14. 스케이트보드 구조에 관한 정보 다음의 유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안전성을 해치는 어떠한 부품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유의사항
 - ② 자동잠금 너트와 다른 자동잠금장치가 그것의 효과를 잃는 시기를 알려주는 유의사항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제품의 날개에 “ 경고”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 경고!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달리거나 뛰지 말 것”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2 전동보드

적용범위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킥보드를 말한다.

킥보드는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있고 붙잡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부착되어 있으며 좌석이 없고 한쪽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다른 발로 지면을 지침으로 추진력을 얻는 이동기구이다. 여기서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타는 이동기구란 좌석이 있더라도 좌석이 탈부착되어 발을 발판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동킥보드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최대하중(제조자가 지정한 한계하중)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
2.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를 착용한 후 탈 것
3.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4. 차도나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5.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 것
6. 젖어있거나 평평하지 않는 표면에서는 타지 말 것

사용설명서

1. 사용 전 안전상태 확인
2. 임의 또는 불법 개조 금지
3.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 착용(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4. 기타 필요한 사항(위험한 장소의 사용금지, 도로교통법 준수 등)
5. 합선보호, 과전류보호, 저전압보호 장치에 관한 내용
6. 최대 주행 가능한 연속 주행거리
7. 가속 및 브레이크 등 작동방법(전륜 및 후륜 브레이크에 대한 정보)
8. 계기판의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
9. 배터리의 충전시간 등 정확한 사용과 유지방법, 충전기의 안전한 사용방법 및 경고문
10. 제품의 설명도와 전기단선도를 첨부
11.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제품의 기능을 이해하기 전에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을 조작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대여하여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12. 배터리사양에 대한 설명(전압 용량 등)
13. 기타 제조업체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제품의 날개에 “⚠경고”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생활용품

안전확인 전동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2 전동보드

적용범위

전기에너지로 동력으로 하고 자기평형장치(자이로스코프) 및 전기모터로 구동되며 각 측면에 바퀴가 있고 그 사이에 발판 및 핸들이 있어 입식자세로 탑승하여 핸들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이동기구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전동이륜평행차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최대하중(제조자가 지정한 한계하중)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
2.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를 착용한 후 탈 것
3.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4. 차도나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5.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 것
6. 젖어있거나 편평하지 않는 표면에서는 타지 말 것

사용설명서

1. 사용 전 안전상태 확인
2. 임의 또는 불법 개조 금지
3.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 착용(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4. 기타 필요한 사항(위험한 장소의 사용금지, 도로교통법 준수 등)
5. 합선보호, 과전류보호, 저전압보호 장치에 관한 내용
6. 최대 주행 가능한 연속 주행거리
7. 가속 및 브레이크 등 작동방법(전륜 및 후륜 브레이크에 대한 정보)
8. 계기판의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
9. 배터리의 충전시간 등 정확한 사용과 유지방법, 충전기의 안전한 사용방법 및 경고문
10. 제품의 설명도와 전기단선도를 첨부
11.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제품의 기능을 이해하기 전에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을 조작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대여하여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12. 배터리사양에 대한 설명(전압 용량 등)
13. 기타 제조업체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제품의 날개에 “⚠경고”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앞 브레이크를 급제동 시 전복의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2 전동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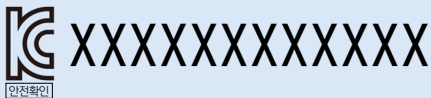
적용범위

전동외륜보드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에너지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자기평형능력(자이로스코프)을 이용한 개인용 이동기구로 내장된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차체의 자세 상태를 판단하고 제품의 운동상태를 제어하며 가운데 바퀴가 있으며 그 양 옆으로 발판이 있는 이동기구를 말한다.

전동이륜보드는 투휠보드라고도 하며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자기평형능력을 이용한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내장된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차체의 자세 상태를 판단하고 제품의 운동상태를 제어하며 양사이드에 각각 바퀴가 있으며 그 사이에 발판이 있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전동외륜/이륜보드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최대하중(제조자가 지정한 한계하중)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
2.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를 착용한 후 탈 것
3.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4. 차도나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5.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 것
6. 젖어있거나 평평하지 않는 표면에서는 타지 말 것

사용설명서

1. 사용 전 안전상태 확인
2. 임의 또는 불법 개조 금지
3.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 착용(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4. 기타 필요한 사항(위험한 장소의 사용금지, 도로교통법 준수 등)
5. 합선보호, 과전류보호, 저전압보호 장치에 관한 내용
6. 최대 주행 가능한 연속 주행거리
7. 가속 및 브레이크 등 작동방법(전륜 및 후륜 브레이크에 대한 정보)
8. 계기판의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
9. 배터리의 충전시간 등 정확한 사용과 유지방법, 충전기의 안전한 사용방법 및 경고문
10. 제품의 설명도와 전기단선도를 첨부
11.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제품의 기능을 이해하기 전에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을 조작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대여하여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12. 배터리시양에 대한 설명(전압 용량 등)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제품의 날개에 “⚠경고”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앞 브레이크를 급제동 시 전복의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생활용품

안전확인 야외 운동기구 / 야외 운동기구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3 야외 운동기구

적용범위

야외에 설치되어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운동기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기준은 야외 운동기구 제품 제조 시 사용되는 재료와 제품의 구조 및 설계에 관한 안전기준은 포함하지만, 제조 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안전기준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용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실내 전동/수동 헬스기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기구 등 다른 안전기준으로 관리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X

- 제품명 : 야외 운동기구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1. 운동지침
2. 기구의 주요기능
3. 안전 정보
4. 최대 사용자 체중 허용치(안장 및 발판이 있는 경우)
5.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사용하지 말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의 본체의 각 부분에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함.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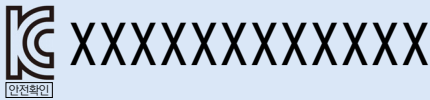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4 가정용 미용기기

적용범위

LED(Light Emitting Diode) 소자를 이용하여 피부에 광을 조사하는 마스크 형태의 제품에 적용한다. 다만,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받은 제품은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가정용 미용기기(LED 마스크)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설명서

1. 안전표지
 - 안구 관련 안전표시
예) 눈을 감고 사용하세요.
 - 피부 관련 안전표지
예) 민감성 피부는 주의하세요.
 2. 사용설명서
 -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사항
 - LED 마스크 형태의 제품은 LED 파장별 스펙트럼 복사 조도($\text{mW} \cdot \text{cm}^{-2}$)
 - 파장 (Wavelength: nm)
- 비고) 파장값은 LED 소자 제조업체 또는 LED 마스크 형태 제품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파장대역의 피크값임.
- 광학 방사구의 위치
 - 주위 가동 온도 (ambient operating temperature)
 - 의도된 사용거리 (intended use distance)
- 비고) LED 마스크 형태 제품의 광학 조사부와 사용자 안구 간의 가장 짧은 거리 및 광학 조사부와 피부 간의 가장 짧은 거리를 각각 기재한다.
- LED 마스크 형태 제품의 권장 사용 시간 및 횟수
 - 열적 화상이나 광학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예비 대책과 경고문을 포함한 안전한 사용에 대한 지침
- 예) 눈을 감고 사용하세요.
- 예) 안구 보호장치(보안경 또는 안구 광학 보호대 등)가 제공된 경우 안구 보호장치를 착용 후 사용하세요
- 예)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이 24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 예) 사용자의 피부가 빛에 민감하거나 빛에 민감한 약물(광감각제)을 사용하는 경우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설명서

- 한글사용설명서에는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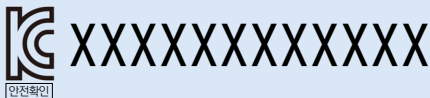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4 가정용 미용기기

적용범위

두피관리기 제품 중 광원, 고주파, 진동,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제품에 적용한다. 다만,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은 제품은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가정용 미용기기(두피관리기)
- 모델명 : KPSA-1100
- 정격 : AC 220 V 60 Hz 750 W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설명서

-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사항
- 권장사용 시간, 횟수, 사용환경, 최대 출력거리
- 광원 파장별 스펙트럼 복사 조도 ($\text{mW}\cdot\text{cm}^{-2}$) (비레이저 광원을 사용하는 두피관리기에만 적용함.)
- 스펙트럼 복사 조도의 총합 ($\text{mW}\cdot\text{cm}^{-2}$) (비레이저 광원을 사용하는 두피관리기에만 적용함.)
- 레이저 출력 세기 (mW 또는 $\text{mW}\cdot\text{cm}^{-2}$)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는 두피관리기에만 적용함.)
- 의도된 사용거리 (피부)
- 첨두 파장 (Peak Wavelength; nm)
비고) 파장값은 광원 소자 제조업체 또는 광원을 사용하는 두피관리기 형태 제품의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파장 대역의 피크값임.
- 광학 방사구의 위치
- 주위 가동 온도 (Ambient operating temperature)
- 광학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예비 대책과 경고문을 포함한 안전한 사용에 대한 지침
예)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이 24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예) 레이저(또는 LED)를 직접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 안구 보호장치(보안경 또는 안구 광학 보호대 등)가 제공된 경우 안구 보호장치를 착용 후 사용하세요

참고사항

- | | |
|-------|---|
| 표시사항 |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
| 사용설명서 | · 한글사용설명서에는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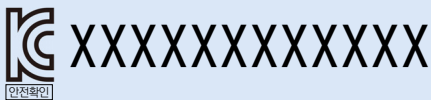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4 가정용 미용기기

적용범위

눈 주변의 자극을 통해 눈 피로개선 마사지를 목적으로 하는 눈 마사지기 제품에 적용한다. 다만,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은 제품은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가정용 미용기기(눈 마사지기)
- 모델명 : KPSA-1100
- 정격 : AC 220 V 60 Hz 750 W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설명서

- 주의사항
 -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사항
 - 화상 관련 주의사항
 - 예) 기기는 가열 표면을 가지므로 열에 둔감한 사람들은 기기를 사용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 예) 기기 사용 중 수면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화상 등의 위험이 있다.)
 - 안구 관련 주의 사항
 - 예) 눈에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피하고 안구 수술, 녹내장, 백내장, 망막 박리 등의 주요 안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
 - 예)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확하게 착용하여 사용하고 사용시간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예) 제품 사용 중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 기재사항
 - 열을 의도하고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의 최대 온도
 - 사용연령
 - 소음
 - 타이머의 정확도
 - 권장 사용 시간, 횟수, 사용환경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설명서

- 한글사용설명서에는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생활용품

안전확인 가정용 미용기기 / 플라즈마 미용기기

적용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4 가정용 미용기기

적용범위

피부에 사용하는 플라즈마 제품에 적용한다. 다만, 플라즈마 제트(Plasma jet)를 발생하는 제품은 미용기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은 제품은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X

- 제품명 : 가정용 미용기기(플라즈마 미용기기)
- 모델명 : KPSPA-1100
- 정격 : AC 220 V 60 Hz 750 W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설명서

- 주의사항
 -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사항
 - 밀폐된 환경에서 사용하지 말 것
 - 제조사가 의도한 시간 사용
 - 호흡기(코, 입)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을 제한
 - 의도된 사용거리 내로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
 - 제품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환기 권고
 - 사용 시, 오존이 발생함을 사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구 또는 표시
 - 고온 및 고습 환경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
- 기재사항
 - 사용대상 및 연령
 - 의도된 사용거리
 - 최대출력거리
 - 권장사용시간, 횟수, 사용환경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설명서

- 한글사용설명서에는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폴리염화비닐관 / 연질염화비닐호스

폴리염화비닐관 / 폴리염화비닐관

물탱크 / 물탱크

가구(높이 762 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해 적용한다.)

롤러 스케이트 / 롤러 스케이트

바퀴달린 운동화 / 바퀴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 모터 달린 보드

창문블라인드 / 창문블라인드

쌍꺼풀용 테이프 / 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 속눈썹 열 성형기

자동차용 휴대용잭 / 자동차용 유압식 잭

자동차용 휴대용잭 / 자동차용 나사식 잭

가(假)속눈썹 / 가(假)속눈썹

쇼핑카트 /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 주택용 사다리

휴대용 사다리 / 도배용 사다리

휴대용 사다리 / 원예용 사다리

휴대용 사다리 / 계단식 소형 사다리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 킥보드

빙삭기 / 빙삭기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마스크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마스크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착서 1 폴리염화비닐관

적용범위

연질염화비닐호스란 주로 액체의 수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폴리염화비닐 또는 염화비닐을 재질로 한 공중 합체를 압출 가공하여 제조하는 연질의 염화비닐 호스(이하 호스라고도 한다.)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연질염화비닐호스
- 모델명 : KPSA-1100
- 종류(용도), 호칭
- 길이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만, 포장방법의 특성상 포장재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꼬리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나선형(호스)을 제외한 제품의 표면에 매 1m 마다 KC마크, 종류, 제조자명(제조자명을 표기하기 곤란할 경우 그 약호)을 각인 또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지워지지 않게 표시하여야 함.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 폴리염화비닐관

적용범위

폴리염화비닐을 주 구성 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폴리염화비닐관 및 이음관(이하 부속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수도용 폴리염화비닐관 및 이음관, KS 또는 단체표준에 따라 인증된 전선용, 통신선용 폴리염화비닐관 및 이들의 이음관은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품명 : 폴리염화비닐관
- 모델명 : KPSA-1100
- 종류(관 및 이음관의 종류, 기호 및 호칭 지름 : 제품 표면에 표시할 경우 약호 사용 가능)
- 길이(이음관은 생략 가능)
- 제조연월(제품 표면에 표시할 경우 약호 사용 가능) : 2020년 10월
- 제조자명(제품 표면에 표시할 경우 약호 사용 가능) : 한국제품 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참고사항

표시사항

- 폴리염화비닐관의 표면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KC 마크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를 매 2m 이내 마다 하여야 함.
- 이음관은 제품의 표면 보기 쉬운 곳 및 최소단위 포장마다 KC 마크와 아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하되, 제품 표면에 표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2차 성형 이음관에는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음.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사양서 또는 카탈로그 등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KC 마크, 종류, 호칭, 길이(이음관은 생략 가능), 제조자명은 반드시 제품 표면에 표기하여야 함.(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자명과 제조국명을 포함)
- 관에는 주소를, 이음관에는 주소 및 전화번호를 생략할 수 있음. 다만, 이음관은 박스 및 마대 등에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여야 함.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2 물탱크

적용범위

가정의 실내외 및 기타 건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급수설비에 사용하는 물탱크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물탱크
- 모델명 : KPSA-1100
- 재료의 종류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의 주의

1. 수질확보에 관한 것
예 : 장기간 저유수를 채류할 경우(예 : 학교의 여름방학 등)에는 사용 전에 저유수를 배출한다.
2. 보수점검에 관한 것
예 : 환기구, 오버플로우구 등에 막힘이 없는 것을 적의(適宜)확인할 것
3. 충격방지에 관한 것
예 : 드라이버, 스파나 등 금속제 공구를 물탱크에 부딪힘이 없을 것
4. 화기사용에 관한 것
예 : 물탱크 주변에서 화기의 사용을 피할 것

청소상의 주의

- 예 : 물탱크 내면의 더러움을 없앨 시에는, 플라스틱계의 브러쉬 등 유연한 것을 사용할 것

설치하는 배관시공시의 주의

1. 적정 받침대 확인에 관한 것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다음 공식에 의거 받침대의 최소지지간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면바닥에 놓도록 설계된 제품은 최소지지간격을 표시하지 않는 대신 설치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 받침대의 지지간격이 소정의 간격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소정의 간격이 넘는 것은 보장하도록 한다.

※ 받침대의 최소지지간격이 표시공식

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했을 때 그림 3의 표시한 것에서 바닥의 변형 W2(%)이 2.5 % 이하가 되도록 다음 공식에 의거 산출하여 L을 표시한다.

$$\text{바닥의 변형 } W_2 = \frac{d_2}{L} \times 100$$

여기에서 d2 : 바닥의 최대변위(mm)

L : 받침대의 최소지지간격(mm)

2. 배출구의 이상부하 발생방지에 관한 것

예 : 배관작업시에는 물탱크의 배관 취출구와의 중심이 어긋남이 없도록 주의한다. 또한 이상부하를 걸지 않도록 계수의 삽입, 밸브 등의 자체중량을 받는 지지구 장치를 할 것

운반, 들어 올릴시의 주의

1. 집중하중 및 충격방지에 관한 것
예 : 운반, 들어올릴 때, 취출구, 환기구, 기타 부속부품에 로프를 걸지 말 것
2. 들어올릴시의 사고방지에 관한 것
예 : 물탱크에 붙어 있는 들어올리는 금구(金具)를 사용해서 들어올릴 것. 들어올리는 금구가 없는 것은 바닥면에 각재 등을 통하여 이것에 로프를 걸어서 들어올릴 것
3. 들어올린후의 낙하방지에 관한 것.
예 : 들어올린 후 설치장소에 고정시키지 않고 어쩔수 없이 일시 방치할 경우에는 바람에 불려 날리지 않도록 로프 등으로 반드시 고정할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 물탱크 또는 단일패널에는 공통표시사항을 용이하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사용·설치상의 주의사항은 사용·설치·취급상의 설명서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
- 사용설명서에는 올바르게 안전한 제품 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 내용이 제공되어야 함.
- 실링제, 구성부품에 관한 사항 및 설치와 유지,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이 표시된 사용설명서를 별도 첨부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단일패널일 경우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설명서에는 반드시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공급자 적합성확인 가구(높이 762 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해 적용한다.)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3 가구(높이 762 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한다.)

적용범위

높이 762 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해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가정용 서랍장,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 모델명 : KPSA-1100
- 외형치수
- 구조부재
- 표면가공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취급상의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설치장소는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하여 수명을 유지하도록 바닥을 조정할 것
2.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3. 이동시 끌지말고 들어서 이동할 것
4.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 서만 사용할 것
5.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할 것”
6. 가구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고정장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벽등에 고정하여 사용할 것
7. 어린이가 서랍 또는 선반을 밟고 올라서거나 매달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8. 제품의 상부면에는 되도록 어떤 물건도 올려놓지 않을 것
9. 카펫(carpet)이나 불안정한 바닥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을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 길이, 나비 및 높이는 mm로 표시하고, 표시치의 허용오차는 ± 2 m로 한다. 높이는 받침틀 및 부착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높이를, 나비는 손잡이 등 앞면에 돌출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포함하지 않음.
- 재료가 강판인 경우 두께를 mm로 표시,
-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
- 다만, 동일한 재질, 표면처리 등으로 제작된 단위제품이 조합되어 일체형으로 된 제품의 경우 주된 제품 한 곳에 표기 가능.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4 롤러 스케이트

적용범위

구두의 앞부분 및 뒷부분에 각각 2개의 바퀴를 병렬로 장착시킨 것으로서 구두가 장착된 부분의 최대 길이가 180 mm 이상의 롤러스케이트에 대하여 적용하며, 또한 롤러스케이트는 탈착식 또는 비 탈착식 신발과 사용자의 발에 부착 가능한 장치로 이루어진다. 다만,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롤러 스케이트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사용상 주의사항을 포장 또는 별도의 설명서 등에 표시하여야 함.
- 별도의 조립 부품이 있는 경우 그 조립 요령, 사이즈 맞추는 방법, 보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장 또는 설명서 등에 표시하면 좋음.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5 바퀴달린 운동화

적용범위

바퀴 달린 운동화란, 운동화의 밑창에 바퀴를 부착하여 인라인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와 같이 주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K XX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바퀴달린 운동화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신발의 치수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 경고
“ 경고 :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 하시오”
 - 주의
1)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마시오.
2) 젖었거나 편평하지 않은 표면에서는 타지 마십시오.
3) 장시간 사용시에는 신체에 무리를 주고 나쁜 걸음걸이 습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4)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사용설명서

- 경고
“ 경고 :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 하시오”
- 주의
 - ①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마시오.
 - ② 젖었거나 편평하지 않은 표면에서는 타지 마십시오.
 - ③ 장시간 사용시에는 신체에 무리를 주고 나쁜 걸음걸이 습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 ④ 부주의할 경우 추락·넘어짐·충돌 등으로 치명적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⑤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 제조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 바퀴 달린 운동화의 구조에 대한 정보
 - 안전성을 해치는 어떠한 부품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유의사항
- 용자에 대한 지시사항
 - ① 올바른 조립 및 사용 · 제동요령
 - ② 올바른 안전보호장구 사용요령
 - ③ 타기 적합한 표면에 대한 추천사항 및 그에 대한 설명
- 점검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사항
 - 부품(바퀴 등)의 교체시기
- 기타 필요한 사항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제품 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및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제품 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에 사용상 주의사항의 경고를 주의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예: 적색글씨, 음양각표 또는 주위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로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설명서에는 올바르게 안전한 제품 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내용이 제공되어야 함.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6 모터 달린 보드

적용범위

바퀴가 달린 보드에 엔진을 장착해 놀이를 즐기는 모터 달린 보드(이하 “보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모터 달린 보드
- 모델명 : KPSA-1100
- 속도 범위(km/h) 및 최대 하중(kg)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 “⚠경고 : 엔진 과열시 화상 위험”
2. 주의
“헬멧 및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할 것”

사용설명서

1. 사용상 주의사항
 - ① 안전보호장구(안전모, 손목·팔꿈치·무릎보호대 등)를 착용하고 사용할 것
 - ② 포장도로나 차도에서 탈 경우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후 탈 것
 - ③ 육각렌치 등으로 조립한 후 조립이 확실한지 확인 후 탈 것
 - ④ 연료 혼합한 후 연료가 충분히 보충되었는지 확인 후 탈 것
 - ⑤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천천히 배울 것
 - ⑥ 처음 배우는 사람은 친구나 보호자와 함께 탈 것
2. 제조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문자 또는 그림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3. 보드의 구조에 관한 정보
 - ① “안전성을 해치는 어떠한 부품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유의사항
 - ② 자동잠금 너트와 다른 자동잠금장치가 그것의 효과를 잃는 시기를 알려주는 유의사항
4. 사용자에 대한 지시사항
 - ① 도로안전에 대한 규정, 사용이 적합한 표면(다른 도로사용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편평하고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대한 추천사항과 그것에 대한 설명.
 - ② 다음과 같은 안전보호장비의 사용 : 손/손목 보호대, 무릎보호대, 머리보호대, 팔목보호대, 헬멧
 - ③ 보드 조정장치가 있을 경우 그것이 올바르게 조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연결구성부분이 견고한가를 확인하라는 지시사항
 - ④ 올바른 사용 및 제동방법에 대한 설명
5. 점검과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사항
장치의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정기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사항을 표시한다.
 - ① 다양한 구조의 각기 다른 특징과 그것의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사항
 - ② 바퀴와 조절장치의 교체
 - ③ 베어링의 윤활
 - ④ 연료장치외의 조절
 - ⑤ 사용 중에 생기는 날카로운 모서리의 제거에 대한 지시사항
 - ⑥ 기타 교체해야 할 때에 대한 지시사항 등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및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엔진부 온도상승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엔진부에 표시하여야 함. · 제품 본체의 뒷면에 다음의 주의문을 표시하여야 함.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7 창문블라인드

적용범위

창문블라인드란 차광용, 실내장식용 등으로 이용되는 유리창 또는 기타 건축물의 실내에 설치하는 줄을 포함하는 블라인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사무실, 공장, 제한구역 등 만7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설치되는 줄을 포함하는 창문블라인드 제품에는 표시사항과 경고라벨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1. 만7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설치되는 창문블라인드

- 제품명 : 창문블라인드
- 모델명 : KPSA-1100
- 치수 : 블라인드크기 가로 × 세로 × 높이(cm)
- 설치장소 : 만7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용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설명서
- 경고 라벨 및 태그
- 사용상 주의사항

2. 만7세이하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창문블라인드

- 제품명 : 창문블라인드
- 모델명 : KPSA-1100
- 치수 : 블라인드크기 가로 × 세로 × 높이(cm)
- 설치장소 : 만7세이하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용
- 적용 안전요건(당김줄 형식) : 분리 기능이 있는 당김줄 형식(내측줄 없음)
- 설치높이(H) : 240 cm
- 당김줄 길이(L1) : (길이가 변화하는 당김줄의 경우 최대길이 표시) 80 cm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설명서
- 경고 라벨 및 태그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설치할 것
2. 당김줄의 안전장치 및 부속품을 반드시 설치할 것
3. 창문블라인드 제품 및 안전장치 등 부속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해하여 사용하지 말 것
4. 사용중 주기적으로 창문블라인드 제품 및 안전장치 등 부속품의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할 것
5. 사용중 분실, 고장, 파손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수리하도록 할 것
6. 당김줄은 어린이의 목 주위를 조를 수 있으니 항상 당김줄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
7. 당김줄 근처에 가구나 기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어린이가 당김줄에 닿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
8. 분리장치가 분리되어 당김줄이 끊어질 수 있으니 갑자기 당기거나 과도한 힘으로 당기지 말 것
9. 당김줄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부품을 임의로 분해하지 말고 당김줄 작동시 다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10. 하나의 당김줄을 꼬이게 하거나 두 개로 분리된 당김줄을 함께 묶지 말 것
11. 고정장치를 사용설명서에 따라 반드시 고정 할 것
12. 누적장치는 바닥으로부터 160 cm 이상의 위치에 제조사 사용설명서의 설치방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 할 것
13. 당김줄 사용후에는 반드시 누적장치에 감아 올려 놓을 것

참고사항

-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공동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만7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설치되는 창문블라인드에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고” 문구를 세로 높이 8mm 이상 크기로 표시하고 경고 내용 문구를 세로 높이 3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함. 경고 라벨에는 만7세 이하 어린이의 목 주위에 당김줄이 감겨 있고 금지표시가 있는 그림문자가 있어야 함.

 경고		이 제품의 당김줄은 만7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만7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경고		
		
이 제품의 당김줄은 만7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만7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경고 문구는 만7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3곳 이상의 위치에 다음과 같이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함.

1. 최종유통 단위포장 : 경고 라벨
2. 창문블라인드의 하단레일 또는 동등의 위치 : 경고 라벨
3. 당김줄 또는 동등의 위치 : 경고 라벨 또는 태그

- 만7세이하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창문블라인드에는 만7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3가지 이상의 위치에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함.

- 최종유통 단위포장 : 경고 라벨
- 창문블라인드의 하단레일 또는 동등의 위치 : 경고 라벨
- 당김줄 또는 동등의 위치 : 제품 특성별 경고 라벨 또는 태그

- 최종유통 단위포장에는 경고 라벨을 표시하여야 하며 경고 라벨에는 만7세 이하 어린이 목주위의 당김줄 감김과 당김줄의 접근의 위험성에 대한 금지를 표시하는 2개의 그림문자가 포함되어야 함. 경고라벨은 제품 또는 최종 유통단위포장에 눈에 쉽게 뜨는 곳에 표시하여야 함. 만7세 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경고” 문구를 세로 높이 8mm 이상 크기로 표시하고 경고 내용 문구를 세로 높이 3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함.

표시사항

 경고	
	이 제품의 당김줄은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7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기능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경고라벨 하단레일에는 만7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고” 문구를 세로 높이 8mm 이상 크기로 표시하고 다음 예와 같은 경고 내용 문구를 세로 높이 3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함. 경고 라벨에는 만7세이하 어린이의 목 주위에 당김줄이 감겨 있고 금지표시가 있는 그림문자가 있어야 함. 경고 라벨은 창문블라인드의 하단레일에 영구적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하단레일의 색과 대조적인 색으로 인쇄되어야 함. 하단레일이 없는 창문블라인드에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단레일에 대응하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함. 경고 라벨은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하여야 함.

 경고		당김줄은 만7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항상 당김줄을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도록 가구 등을 근처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	---	---

- 제조자는 제품의 특성 또는 제품에 포함된 안전장치에 근거하여 제품 취급상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경고” 문구를 세로 높이 8mm 이상 크기로 표시하고 경고 내용 문구를 세로 높이 3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함. 경고 라벨 또는 태그에는 만7세이하 어린이의 목 주위에 당김줄이 감겨 있고 금지표시가 있는 그림문자가 있어야 한다. 제품 특성별 경고 라벨 또는 태그는 접근가능한 당김줄이 있는 모든 창문블라인드에 표시하여야 함. 제품 특성별 경고 라벨 또는 태그는 1~5중 하나 이상을 표시하여야 함. 내측줄이 있는 제품의 경우 별도로 6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경고라벨 예시는 부속서 7.창문블라인드 6.3.3 참고)

1. 분리기능이 포함된 당김줄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2. 보호덮개로 덮힌 당김줄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3. 영킹 방지 기능이 있는 당김줄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4. 고정하여 사용하는 당김줄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5. 길이가 변화하는 당김줄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6. 내측줄이 있는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다만, 그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도 됨.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8 쌍꺼풀용 테이프

적용범위

일시적으로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윗 눈꺼풀에 붙여 사용하는 테이프 형태의 제품에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쌍꺼풀용 테이프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1. 피부에 상처,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2. 사용중 피부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3.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4. 장시간 사용할 경우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음.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사항을 표시함.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9 속눈썹 열 성형기

적용범위

속눈썹 열 성형기는 발열체의 전기적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속눈썹의 외형을 일시적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열성형기로 전열소자와 이를 감싸는 유연부 및 전원부,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정격출력전압이 DC 24 V 이하인 건전지 또는 직류전원장치 등의 전원을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켜 속눈썹을 위로 올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열 성형기에 대한 안전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속눈썹 열 성형기
- 모델명 : KPSSA-1100
- 최고온도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방법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피부에 눈의 점막, 각막 등에 화상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하십시오.
2.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3. 콘택트렌즈 사용자의 경우 렌즈를 제거하고 사용하십시오.
4. 화기 또는 열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5. 사용 중 눈에 이상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말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음.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의 한글 또는 기호로 다른 표시사항보다 눈에 띄는 방법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사항을 표시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착서 10 자동차용 휴대용잭

적용범위

자동차에 사용하는 자동차용 유압식 휴대용잭(이하 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t을 초과하는 잭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자동차용 유압식 휴대용잭
- 모델명 : KPSA-1100
- 작동방식 : ST301-유압식
- 최대 사용 하중 : 5 kg
- 제품의 주요 재질 및 무게 : 스틸, 10 kg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방법
- 사용할 때의 안전 지침
- 작동유의 종류
- 사용상 주의사항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별표 10]의 규정사항 및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음.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함.
- 제품에는 사용하는 작동유의 종류를 명기한 명판을 첨부함.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착서 10 자동차용 휴대용잭

적용범위

자동차에 사용하는 자동차용 나사식 휴대용잭(이하 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자동차용 나사식 휴대용잭
- 모델명 : KPSA-1100
- 작동방식 : SP106-나사식
- 최대 사용 하중 : 5 kg
- 제품의 주요 재질 및 무게 : 스틸, 10 kg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방법
- 사용할 때의 안전 지침
- 사용상 주의사항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별표 10]의 규정사항 및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설명서에는 올바르게 안전한 제품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내용이 제공되어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설명서에는 올바르게 안전한 제품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가 포함되어야 함.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착서 11 가(假)속눈썹

적용범위

가속눈썹이라 함은 사람 눈의 위속눈썹 또는 아래속눈썹 자리에 부착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속눈썹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가 속눈썹
- 종류
- 모델명 : KPSA-1100
- 재료의 조성(테의 재료 조성 및 혼용률)
- 치수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취급, 세탁, 보관, 접·탈착시 등

예시) 테이프에 손때나 그 밖의 오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더운 곳에 두지 말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 또는 별도의 사용설명서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2 쇼핑카트

적용범위

쇼핑카트란 소비자가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 쇼핑센터 등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넣고 직접 밀어서 운반할 용도로 사용되는 손수레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전용 및 장애인 전용으로 제작된 것, 바스켓의 용량이 80 L 이하인 것, 바스켓을 탈착하는 구조의 것, DIY(Do It Yourself) 매장 전용의 것, 상품을 운반하는 용도 외의 부가적인 특수한 기능(이용자가 앉을 수 있는 보조의자가 부착되어 있거나 바퀴의 구름성을 조절하여 운동기능을 부여한 것 등)이 있는 것, 동력을 이용하는 것, 공항, 터미널 등에서 가방 및 짐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짐반이용과 점포내의 작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이 기준은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쇼핑카트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0 쇼핑카트 부속품의 안전요건도 만족하여야 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XXXXXXXXXXXXXXXX

- 제품명 : 쇼핑카트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바스켓 용량(L로 표시)
- 최대적재하중(kg 으로 표시)
- 경고
- 그림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1. 사용자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요령
2. 유지 및 보수 시 필요사항
3. 적재하는 물건의 크기와 무게의 제한
4. 보관상의 주의사항
5. 정기적인 검사 방법 및 시기
6. 기타 필요한 사항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에는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함.
- 안전주의 “경고” 문구는 14포인트(4.92 mm) 이상, 나머지 문구는 8포인트(2.811 mm)이상이어야 함.
- 핸들부위에 “컨베이어에서는 계속적으로 핸들을 붙잡고 있을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오른쪽의 그림을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3 휴대용 사다리

적용범위

가정에서 사용하고 버팀대, 디딤대 등 주요 부위가 금속으로 이루어진 사다리를 말한다.

아래와 같은 구조의 종류는 적용되지 않는다.

- (1) 접어주는 기구, 회전 기구(힌지)가 2조 이상 있는 것
예) 관절형 및 복합 관절형 사다리(Articulated Ladder, Multiple Hinge-Joint Ladder 등)
- (2) 버팀대 최하단 내부에서 신축용 버팀대가 신장 시 일부 겹치는 기능을 가진 것
예) 안테나 사다리, 망원경 사다리(Telescoping Antenna Ladder, Telescopic Ladder 등)
- (3) 이동식 스탠드 사다리, 이동식 스탠드 플랫폼 사다리 유형의 것
예) 모바일 사다리(Mobile Ladder Stand, Mobile Ladder Stand Platform 등)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휴대용 사다리
- **모델명** : KPSA-1100
- **종류 및 호칭** : 발붙임 겸용 신축형 사다리(B1-13)
- **종류에 따른 표시 치수**
 - a) 발붙임 전용 사다리 : 높이, 최대 사용 높이
 - b) 발붙임 겸용 사다리 : 높이, 최대 사용 높이, 길이
 - c) 발붙임 전용 신축형 사다리 : 높이, 최대 높이, 최대 사용 높이(신장 시)
 - d) 발붙임 겸용 신축형 사다리 : 높이, 최대 높이, 최대 사용 높이(신장 시), 길이, 최대 길이
 - e) 보통 사다리 : 길이
 - f) 신축형 사다리 : 길이, 최대 길이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사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 (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1. 발붙임 전용 사다리 및 발붙임 전용 신축형 사다리
 - (1) 발판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의 경우 “발판 위에서 발돋움 또는 한쪽 발로 서지 마시오” 등의 주의 발판에 올라설 수 없는 것의 경우 “발판(꼭대기)에 올라서지 마시오” 등의 주의
 - (2) 발판까지 수직 높이가 800 mm 를 초과하는 경우 “발판에 올라서지 마시오” 등의 주의 단, 위틀이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 (3) “사용 전에는 제품 각 부분을 충분히 점검하십시오” 등의 주의
 - (4) “고정 기구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등의 주의
 - (5) “지정된 사용 각도를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등의 주의 및 사용 각도와 설치 방법
 - (6) “감전에 주의하십시오” 등의 주의
 - (7) “승강면을 뒤로 하고 오르내리지 마시오” 등의 주의
 - (8) “승강면에 대하여 좌우로 쓰러지기 쉬운 구조임” 등의 주의
 - (9) “버팀대를 연장하거나 받침대 등을 높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 (10) “회전부 등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주의
2. 발붙임 겸용 사다리
 - (1) 발판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의 경우 “발판 위에서 발돋움 또는 한쪽 발로 서지 마시오” 등의 주의 발판에 올라설 수 없는 것의 경우 “발판(꼭대기)에 올라서지 마시오” 등의 주의
 - (2) 발판까지 수직 높이가 800 mm 를 초과하는 경우 “발판에 올라서지 마시오” 등의 주의 단, 위틀이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 (3) “사용 전에는 제품 각 부분을 충분히 점검하십시오” 등의 주의
 - (4) “고정 기구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등의 주의

사용상 주의사항

- (5) “지정된 사용 각도를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등의 주의 및 사용 각도와 설치 방법
- (6) “감전에 주의하십시오” 등의 주의
- (7) “승강면을 뒤로 하고 오르내리지 마시오” 등의 주의
- (8) “승강면에 대하여 좌우로 쓰러지기 쉬운 구조임” 등의 주의
- (9) “버팀대를 연장하거나 받침대 등을 높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 (10) “회전부 등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주의
- (11) “승강면을 뒤집어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3. 발붙임 겸용 신축형 사다리
 - (1) 발판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의 경우 “발판 위에서 발돋움 또는 한쪽 발로 서지 마시오” 등의 주의
발판에 올라설 수 없는 것의 경우 “발판(꼭대기)에 올라서지 마시오” 등의 주의
 - (2) 발판까지 수직 높이가 800 mm 를 초과하는 경우 “발판에 올라서지 마시오” 등의 주의
단, 위틀이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 (3) “사용 전에는 제품 각 부분을 충분히 점검하십시오” 등의 주의
 - (4) “고정 기구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등의 주의
 - (5) “지정된 사용 각도를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등의 주의 및 사용 각도와 설치 방법
 - (6) “감전에 주의하십시오” 등의 주의
 - (7) “승강면을 뒤로 하고 오르내리지 마시오” 등의 주의
 - (8) “승강면에 대하여 좌우로 쓰러지기 쉬운 구조임” 등의 주의
 - (9) “버팀대를 연장하거나 받침대 등을 높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 (10) “회전부 등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주의
 - (11) “승강면을 뒤집어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 (12) “사용 중 뒷사다리 고정 기구를 잡아당기지 마시오” 등의 주의
 - (13) 최대 길이의 사다리로 사용 시 “버팀대 겹침 부위는 최소 디딤대 2개 이상 간격으로 하시오” 등의 주의
4. 보통 사다리
 - (1) “사용 전에는 제품 각 부분을 충분히 점검하십시오” 등의 주의
 - (2) “지정된 사용 각도를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등의 주의 및 사용 각도와 설치 방법
 - (3) “감전에 주의하십시오” 등의 주의
 - (4) “승강면을 뒤로 하고 오르내리지 마시오” 등의 주의
 - (5) “승강면에 대하여 좌우로 쓰러지기 쉬운 구조임” 등의 주의
 - (6) “버팀대를 연장하거나 받침대 등을 높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 (7) “승강면을 뒤집어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 (8) “중간 연결용 또는 지면과 수평한 상태로 하여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5. 신축형 사다리
 - (1) “사용 전에는 제품 각 부분을 충분히 점검하십시오” 등의 주의
 - (2) “지정된 사용 각도를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등의 주의 및 사용 각도와 설치 방법
 - (3) “감전에 주의하십시오” 등의 주의
 - (4) “승강면을 뒤로 하고 오르내리지 마시오” 등의 주의
 - (5) “승강면에 대하여 좌우로 쓰러지기 쉬운 구조임” 등의 주의
 - (6) “버팀대를 연장하거나 받침대 등을 높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 (7) “승강면을 뒤집어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 (8) “중간 연결용 또는 지면과 수평한 상태로 하여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 (9) “사용 중 신축형 사다리의 뒷사다리를 들어올리지 마시오” 등의 주의
 - (10) 최대 길이의 사다리로 사용 시 “버팀대 겹침 부위는 최소 디딤대 2개 이상 간격으로 하시오” 등의 주의
6. 그 밖의 주의사항
 - (1) 표시 및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내용에 따를 것.
 - (2) 사용설명서는 읽은 후 잘 보관할 것.
 - (3) 사용 시에는 제품이 안정된 상태임을 확인할 것.
 - (4) 2 m 이상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 및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
 - (5) 정해진 제품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 (6) 사다리 형태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성인 보조자가 사다리를 지지할 것.
 - (7) 본체에 표시된 최대 사용 하중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
 - (8) 제품을 가공하거나 개조하지 말 것.
 - (9) 사용설명서·경고 라벨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 (10) 첨부된 표시, 사용, 경고 라벨이 사라지거나 읽을 수 없게 된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 (11) 사용 전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 (12) 변형된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 (13) 운반 시에는 바닥에 끌거나 던지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 것.
- (14) 신축형 사다리는 신장하지 않은 상태로 조절 후 이동할 것.
- (15) 설치 또는 운반 시에는 배전선 및 전신주에 주의할 것.
- (16) 제품이 안정되지 않는 장소나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 (17) 신축형 사다리의 경우 부드러운 지면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
- (18) 버팀대 길이나 발판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 그 조작 방법.
- (19) 발판 또는 디딤대가 지면과 수평을 이루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버팀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발판 또는 디딤대가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신축 다리의 길이를 조절할 것.
- (20) 신축 다리를 무리한 힘으로 조작하지 말 것.
- (21) 버팀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모든 신축 다리를 단단히 고정할 것.
- (22)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구 또는 문 앞에는 설치하지 말 것.
- (23)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한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 (24) 발밑 또는 주위가 잘 안 보이는 어두운 곳에는 설치하지 말 것.
- (25) 주변에 위험한 것이 있는 장소 또는 머리 위에 장애물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 (26) 모든 고정 기구 및 장치를 확실히 고정할 것.
- (27) 신축형 사다리는 로프에서 손을 떼기 전에 고정 기구가 고정 상태임을 확인할 것.
- (28) 가동부, 회전부 등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
- (29) 신축형 사다리를 높이거나 줄일 때는 버팀대 또는 디딤대를 들거나 다리를 걸지 말 것.
- (30) 제품을 받침대 또는 상자 위에 얹어놓고 사용하지 말 것.
- (31) 발붙임 겸용 사다리를 사다리 형태로 사용할 경우 및 사용면이 정해져 있는 사다리의 경우 이면을 사용하지 말 것.
- (32) 지정된 경사 각도로 사용할 것.
- (33) 사다리를 지붕에 기대어 세워 놓는 경우 사다리와 건물의 접점은 위에서 2단 또는 3 단 정도가 되는 것이 이상적임.
- (34) 발붙임 겸용 사다리를 사다리 형태로 건물 지붕 등에 기대어 세워 놓는 경우, 발붙임 겸용 사다리와 건물의 접점은 최상단과 그 아래 디딤대 사이에 오는 것이 이상적임.
- (35) 발붙임 겸용 사다리를 사다리 형태로 건물 벽에 기대어 세워 놓았을 경우 위에서 3단 이상의 디딤대에는 오르지 말 것.
- (36) 사다리를 지면과 수평한 상태로 하여 사용하지 말 것.
- (37) 신축형 사다리는 윗사다리를 고정하지 말 것.
- (38) 신축형 사다리는 윗사다리를 들어올리지 말 것.
- (39) 사용 중 제품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두지 말 것.
- (40) 사다리 형태로 사용 시 건물의 대들보나 튀어나온 벽 부분에 끝부분을 기대어 세워 놓지 말 것.
- (41) 접은 채로 건물, 나무의 줄기나 가지, 담 등에 기대어 세우거나 지면과 수평한 상태로 하여 사용하지 말 것.
- (42) 전주, 나무 등 둥근 것에는 기대어 세워 놓지 말 것.
- (43) 발판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인 경우 "발판 가장자리에 올라서거나 발판 위에서 발돋움하거나 한쪽 발로 서지 말 것"이라는 내용.
- (44) 발판에 올라설 수 없는 것인 경우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금지함"이라는 내용.
- (45) 올라설 수 없는 디딤대인 경우 "오르지 말 것"이라는 내용.
- (46) 동시에 2명 이상 오르지 말 것.
- (47) 제품 뒷면으로 오르내리지 말 것.
- (48) 제품에서 신체를 내밀지 말 것.
- (49) 신체의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짐을 들고 오르내리지 말 것.
- (50) 위틀에 기대거나 오르지 말 것.
- (51) 사용 중에 벽 또는 물건을 무리하게 누르거나 당기지 말 것.
- (52) 2개 제품 사이에 판을 걸쳐 사용하지 말 것.
- (53) 오르내릴 때 충분히 주의하여 차분히 행동할 것.
- (54) 제품 중간에서 뛰어내리지 말 것.
- (55) 사다리와 지붕 사이를 건너갈 때 사다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56) 사다리와 건물의 접점보다 위쪽에 있는 디딤대 또는 버팀대에 체중을 싣지 말 것.
- (57) 지붕 위에서 사다리를 이동하지 말 것.
- (58) 비를 맞도록 보관하지 말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 표시사항은 제품 본체에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 단, 사용상 주의사항은 주택용 사다리 모양 종류에 따라 표시함. 그 밖의 주의사항은 제품 종류 및 제품 특징에 따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그림 및 기호를 포함하여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이나 포장 또는 별도의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음.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3 휴대용 사다리

적용범위

주택에서 도배, 페인트, 청소 등의 간단한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사다리로 금속 재질의 4개의 버팀대와 디딤대, 발판 등의 구조를 가지며 승강면에 대한 발판의 폭이 500 mm 이상이고 발판까지 수직 높이가 1200 mm 이하의 구조인 것을 말하며, 승강면에 대한 발판의 폭 및 버팀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아래와 같은 구조의 종류는 적용되지 않는다.

- (1) 접어주는 기구, 회전 기구(힌지)가 3조 이상 있는 것 (예) 관절형 및 복합 관절형 사다리(Articulated Ladder, Multiple Hinge-Joint Ladder 등)
- (2) 이동식 비계 사다리 유형의 것 (예) 모바일 비계(Mobile Scaffolding Ladder 등)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도배용 사다리
- **모델명** : KPSA-1100
- **호칭** : 도배형 사다리(E-13)
- **최대 사용 하중** : 130 kg
- **표시 치수**
 - a) 버팀대 및 발판 조절 기능이 있는 것 :
(최대 조절 후)최대사용 높이, 발판 폭
 - b) 버팀대 및 발판 조절 기능이 없는 것 :
최대 사용 높이, 발판폭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사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1. 사용상 주의사항

- (1) “사용 전에는 제품 각 부분을 충분히 점검하십시오” 등의 주의
- (2) “고정 기구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등의 주의
- (3) “지정된 사용 각도를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등의 주의 및 사용 각도와 설치 방법
- (4) “감전에 주의하십시오” 등의 주의
- (5) “승강면을 뒤로 하고 오르내리지 마시오” 등의 주의
- (6) “승강면에 대하여 좌우로 쓰러지기 쉬운 구조임” 등의 주의
- (7) “버팀대를 연장하거나 받침대 등을 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 (8) “회전부 등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주의
- (9) 버팀대 및 발판 조절이 가능한 것의 경우 “조절 부분의 고정을 확인하십시오” 등의 주의

2. 그 밖의 주의사항

- (1) 표시 및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내용에 따를 것.
- (2) 사용설명서는 읽은 후 잘 보관할 것.
- (3) 사용 시에는 제품이 안정된 상태임을 확인할 것.
- (4)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 및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
- (5) 정해진 제품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 (6) 본체에 표시된 최대 사용 하중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
- (7) 제품을 가공하거나 개조하지 말 것.
- (8) 사용설명서·경고 라벨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 (9) 첨부된 표시, 사용, 경고 라벨이 사라지거나 읽을 수 없게 된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사용상 주의사항

- (10) 사용 전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 (11) 변형된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 (12) 운반 시에는 바닥에 끌거나 던지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 것.
- (13) 버팀대 및 발판 조절형 도배용 사다리는 기본형태(조절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할 것.
- (14) 설치 또는 운반 시에는 배전선 및 전신주에 주의할 것.
- (15) 제품이 안정되지 않는 장소나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 (16) 버팀대 길이나 발판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 그 조작 방법.
- (17) 발판 또는 디딤대가 지면과 수평을 이루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버팀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발판 또는 디딤대가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다리의 길이를 조절할 것.
- (18) 조절형 버팀대를 무리한 힘으로 조작하지 말 것.
- (19) 버팀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사다리의 경우 모든 조절형 다리를 단단히 고정할 것.
- (20)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구 또는 문 앞에는 설치하지 말 것.
- (21)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한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 (22) 발밑 또는 주위가 잘 안 보이는 어두운 곳에는 설치하지 말 것.
- (23) 주변에 위험한 것이 있는 장소 또는 머리 위에 장애물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 (24) 모든 고정 기구 및 장치를 확실히 고정할 것.
- (25) 가동부, 회전부 등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
- (26) 제품을 받침대 또는 상자 위에 얹어놓고 사용하지 말 것.
- (27) 지정된 경사 각도로 사용할 것.
- (28) 사용 중 제품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두지 말 것.
- (29) “발판 가장자리에 올라서거나 발판 위에서 발돋움하거나 한쪽 발로 서지 말 것”이라는 내용.
- (30) 동시에 2명 이상 오르지 말 것.
- (31) 제품에서 신체를 내밀지 말 것.
- (32) 신체의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짐을 들고 오르내리지 말 것.
- (33) 사용 중에 벽 또는 물건을 무리하게 누르거나 당기지 말 것.
- (34) 2개 제품 사이에 판을 걸쳐 사용하지 말 것.
- (35) 오르내릴 때 충분히 주의하여 차분히 행동할 것.
- (36) 제품 중간에서 뛰어내리지 말 것.
- (37) 비를 맞도록 보관하지 말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 표시사항은 제품 본체에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및 그 밖의 주의사항은 제품 특징에 따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그림 및 기호를 포함하여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이나 포장 또는 별도의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음.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3 휴대용 사다리

적용범위

주택 외부에서 조경 작업 시 사용하고 전방 버팀대, 후방 버팀대, 발판, 디딤대 등 주요 부위가 금속으로 이루어진 사다리로 3발 형태의 것을 말하며 올라설 수 있는 발판 또는 올라설 수 있는 최상단 디딤대까지의 수직 높이가 3000 mm 이하인 사다리를 말한다.

아래와 같은 구조의 종류는 적용되지 않는다.

- (1) 후방 버팀대 조절을 위한 접이 기구 1조 이상인 사다리
- (2) 전방 및 후방의 버팀대가 3개를 초과하는 사다리
예) 발붙임 사다리, 도배용 사다리 등(Stepladder, Scaffolding ladder 등)
- (3) 각 버팀대 끝부분에 지면에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스파이크 등이 없는 사다리
- (4) 승강면 전방 버팀대에 신축 기능 등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후방 버팀대에 보강금구를 제외한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부품을 설치한 것과 후방 버팀대가 좌우 양측에서 접히는 구조의 사다리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원예용 사다리
- **모델명** : KPSA-1100
- **호칭** : 원예용 사다리(F-13)
- **최대 사용 하중** : 130 kg
- **표시 치수**
 - a) 후방 버팀대 기능이 있는 것 :
(최대 조절 후) 최대 사용 높이, 높이
 - b) 후방 버팀대 기능이 있는 것 :
높이, 최대 사용 높이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 (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1. 사용상 주의사항

- (1) “사용 전에는 제품 각 부분을 충분히 점검하십시오” 등의 주의
- (2) “고정 기구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등의 주의
- (3) “지정된 사용 각도를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등의 주의 및 사용 각도와 설치 방법
- (4) “감전에 주의하십시오” 등의 주의
- (5) 높이가 800 mm 초과 2000 mm 이하인 것은 위에서 두 번째 디딤대에, 2000 mm 를 초과하는 것은 위에서 세 번째 디딤대에 “이 디딤대에서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마시오” 등의 주의. 단, 위틀이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 (6) “승강면을 뒤로 하고 오르내리지 마시오” 등의 주의
- (7) “승강면에 대하여 좌우로 쓰러지기 쉬운 구조임” 등의 주의
- (8) “버팀대를 연장하거나 받침대 등을 높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 (9) “회전부 등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주의
- (10) 후방 버팀대 조절이 가능한 것의 경우 “조절 부분의 고정을 확인하십시오” 등의 주의

2. 그 밖의 주의사항

- (1) 표시 및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내용에 따를 것.
- (2) 사용설명서는 읽은 후 잘 보관할 것.
- (3) 사용 시에는 제품이 안정된 상태를 확인할 것.
- (4) 2 m 이상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 및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
- (5) 정해진 제품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사용상 주의사항

- (6) 본체에 표시된 최대 사용 하중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
- (7) 제품을 가공하거나 개조하지 말 것.
- (8) 사용설명서·경고 라벨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 (9) 첨부된 표시, 사용, 경고 라벨이 사라지거나 읽을 수 없게 된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 (10) 사용 전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 (11) 변형된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 (12) 운반 시에는 바닥에 끌거나 던지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 것.
- (13) 후방 버팀대 조절형은 기본형태(조절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할 것.
- (14) 설치 또는 운반 시에는 배전선 및 전신주에 주의할 것.
- (15) 제품이 안정되지 않는 장소나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 (16) 후방 버팀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 그 조작 방법.
- (17) 후방 버팀대 조절 다리를 무리한 힘으로 조작하지 말 것.
- (18) 후방 버팀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인 경우 조절 다리를 단단히 고정할 것.
- (19) 후방 버팀대를 승강면 중심에서 벗어나도록 설치하지 말 것.
- (20)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구 또는 문 앞에는 설치하지 말 것.
- (21)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한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 (22) 발밑 또는 주위가 잘 안 보이는 어두운 곳에는 설치하지 말 것.
- (23) 주변에 위험한 것이 있는 장소 또는 머리 위에 장애물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 (24) 모든 고정 기구 및 장치를 확실히 고정할 것.
- (25) 가동부, 회전부 등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
- (26) 제품을 받침대 또는 상자 위에 얹어놓고 사용하지 말 것.
- (27) 지정된 경사 각도로 사용할 것.
- (28) 사용 중 제품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두지 말 것.
- (29) 사다리 형태로 사용 시 건물의 대들보나 튀어나온 벽 부분에 끝부분을 기대어 세워 놓지 말 것.
- (30) 접은 채로 건물, 나무의 줄기나 가지, 담 등에 기대어 세우거나 지면과 수평한 상태로 하여 사용하지 말 것.
- (31) 전주, 나무 등 둥근 것에는 기대어 세워 놓지 말 것.
- (32) 발판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인 경우 “발판 가장자리에 올라서거나 발판 위에서 발돋움하거나 한쪽 발로 서지 말 것”이라는 내용
- (33) 발판에 올라설 수 없는 것인 경우 “발판(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금지함”이라는 내용
- (34) 올라설 수 없는 디딤대인 경우 “오르지 말 것”이라는 내용
- (35) 동시에 2명 이상 오르지 말 것.
- (36) 제품 뒷면으로 오르내리지 말 것.
- (37) 제품에서 신체를 내밀지 말 것.
- (38) 신체의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짐을 들고 오르내리지 말 것.
- (39) 위틀에 기대거나 오르지 말 것.
- (40) 사용 중에 벽 또는 물건을 무리하게 누르거나 당기지 말 것.
- (41) 2개 제품 사이에 판을 걸쳐 사용하지 말 것.
- (42) 오르내릴 때 충분히 주의하여 차분히 행동할 것.
- (43) 제품 중간에서 뛰어내리지 말 것.
- (44) 비를 맞도록 보관하지 말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 표시사항은 제품 본체에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및 그 밖의 주의사항은 제품 특징에 따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그림 및 기호를 포함하여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이나 포장 또는 별도의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음.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착서 13 휴대용 사다리

적용범위

가정에서 사용하고 발판, 디딤대, 버팀대 등 주요 부위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 최대 사용 하중 150 kg, 높이 1 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를 말하며, 가구형 목재 스텝 스톨은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계단식 소형 사다리
- 모델명 : KPSA-1100
- 호칭 : 접이형 소형 사다리(B-3)
- 최대 사용 하중 : 150 kg
- 높이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1. 사용상 주의사항

- (1) 발판까지 수직 높이가 800 mm 를 초과하는 경우 “발판에 올라서지 마시오” 등의 주의.
단, 위틀이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 (2) “사용 전에는 제품 각 부분을 충분히 점검하십시오” 등의 주의
- (3) “고정 기구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등의 주의
- (4) “지정된 사용 각도를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등의 주의 및 사용 각도와 설치 방법
- (5) “감전에 주의하십시오” 등의 주의
- (6) “승강면을 뒤로 하고 오르내리지 마시오” 등의 주의
- (7) “승강면에 대하여 좌우로 쓰러지기 쉬운 구조임” 등의 주의
- (8) “버팀대를 연장하거나 받침대 등을 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 (9) “화전부 등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주의

2. 그 밖의 주의사항

- (1) 표시 및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내용에 따를 것.
- (2) 사용설명서는 읽은 후 잘 보관할 것.
- (3) 사용 시에는 제품이 안정된 상태임을 확인할 것.
- (4) 정해진 제품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 (5) 본체에 표시된 최대 사용 하중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
- (6) 제품을 가공하거나 개조하지 말 것.
- (7) 사용설명서·경고 라벨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 (8) 첨부된 표시, 사용, 경고 라벨이 사라지거나 읽을 수 없게 된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 (9) 사용 전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 (10) 변형된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 (11) 운반 시에는 바닥에 끌거나 던지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 것.
- (12) 설치 또는 운반 시에는 배전선 및 전신주에 주의할 것.

사용상 주의사항

- (13) 제품이 안정되지 않는 장소나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 (14) 발판 또는 디딤대가 지면과 수평을 이루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 (15)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구 또는 문 앞에는 설치하지 말 것.
- (16)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한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 (17) 발밑 또는 주위가 잘 안 보이는 어두운 곳에는 설치하지 말 것.
- (18) 주변에 위험한 것이 있는 장소 또는 머리 위에 장애물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 (19) 모든 고정 기구 및 장치를 확실히 고정할 것.
- (20) 가동부, 회전부 등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
- (21) 제품을 받침대 또는 상자 위에 얹어놓고 사용하지 말 것.
- (22) 지정된 경사 각도로 사용할 것.
- (23) 사용 중 제품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두지 말 것.
- (24) "발판 가장자리에 올라서거나 발판 위에서 발돋움하거나 한쪽 발로 서지 말 것"이라는 내용
- (25) 동시에 2명 이상 오르지 말 것.
- (26) 제품 뒷면으로 오르내리지 말 것.
- (27) 제품에서 신체를 내밀지 말 것.
- (28) 신체의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짐을 들고 오르내리지 말 것.
- (29) 위틀에 기대거나 오르지 말 것.
- (30) 사용 중에 벽 또는 물건을無理하게 누르거나 당기지 말 것.
- (31) 2개 제품 사이에 판을 걸쳐 사용하지 말 것.
- (32) 오르내릴 때 충분히 주의하여 차분히 행동할 것.
- (33) 제품 중간에서 뛰어내리지 말 것.
- (34) 비를 맞도록 보관하지 말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 표시사항은 제품 본체에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및 그 밖의 주의사항은 제품 특징에 따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그림 및 기호를 포함하여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이나 포장 또는 별도의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음.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4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적용범위

인라인스케이트는 바퀴가 운동방향으로 나란히 연결된 운동 장비이다.

인라인스케이트는 탈착식 또는 비 탈착식 신발과 사용자의 발에 부착 가능한 장치로 이루어진다.

부착장치는 사용자의 발과 인라인스케이트를 연결하는 장치이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명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신발의 치수

사용설명서

1. 경고

“⚠ 경고 :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

2. 주의

- ①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 것
- ② 젖은 도로나 편평하지 않은 표면에서는 타지 말 것

3. 제조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 ① 구조에 대한 정보
- ② 사용자에 대한 지시사항
- ③ 점검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사항
-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

“⚠ 경고 :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

2. 주의

- ①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 것
- ② 젖어있거나 편평하지 않은 표면에서는 타지 마십시오.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및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5 킥보드

적용범위

킥보드는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있고 붙잡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부착되어 있으며 좌석이 없고 한쪽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다른 발로 지면을 지침으로 추진력을 얻는 이동기구를 말한다.
발판이란 사용자가 한쪽 또는 양쪽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수평 판을 말한다.
다만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 연료를 사용하여 작동되는 것, 좌석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킥보드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한계하중(제조자가 지정한 한계하중)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
2. 주의
 - ① 킥보드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를 착용한 후 탈 것
 - ②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 ③ 차도나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 ④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 것
 - ⑤ 젖어있거나 평평하지 않는 표면에서는 타지 말 것

사용설명서

1. 사용 전 안전상태 확인
2. 점프 등 안전하지 못한 묘기주행 금지
3. 임의 또는 불법 개조 금지
4.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착용(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5. 기타 필요한 사항(위험한 장소의 사용금지, 도로교통법 준수 등)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및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
- 제품의 날개에 다음의 “⚠경고”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6 빙삭기

적용범위

빙삭기란 얼음을 회전시켜 갈거나 부수는데 사용되는 수동식의 빙삭기를 말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빙삭기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칼날의 재질(도금되었을 경우 도금 종류)

사용상 주의사항

1. 사용시 또는 구입시에 칼날과 스파이크에 주의하십시오.
2. 화기에 가까이 하지 마시오.
3.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시오. 사용 후 물기를 제거하십시오.
4. 사용 후 물기를 제거하십시오.
5. 기타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 경고

사용설명서

1. 부품의 일부가 바깥에 붙어있는 빙삭기는 이의 조립하는 방법
2. 사용방법
3. 사용상의 주의
 -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십시오.
 - 본체를 잡을 때는 고정장치를 확실히 고정하여 사용하십시오.
 -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보호자의 관찰 하에 사용하도록 하시오.
 - 칼날의 부착 나사는 확실하게 조여서 사용하십시오.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함.
-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이나 포장 이외에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음.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눈에 확실하게 띄게 하여야 함.

사용 설명서

- 사용상 주의사항을 사용설명서로 첨부하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함. 사용설명서에는 올바르게 안전한 제품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환경 및 자원의 보존에 관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함. 또한 일반소비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명시하여 표시하는 것이 좋음.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7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마스크

적용범위

일상 생활에서 방한용, 패션용 및 스포츠용으로 착용하는 마스크에 대하여 규정한다. 마스크는 외기로부터 얼굴과 목의 피부, 입이나 코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섬유, 합성수지, 가죽 또는 모피 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일회용 마스크를 포함)을 말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마스크
- **재질의 종류**
(겉감) 폴리에스터 95%, 폴리우레탄 5%
(중간층) 폴리프로필렌 100%
(안감) 폴리아미스 100%(전기방사)
- **치수**
(특대형) 171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1.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은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 제품은 황사, 미세먼지, 비말,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 제품에 방향제, 탈취제, 살균제를 처리하거나 또는 직접 뿌리는(덧붙이는 패치 등 포함) 경우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및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

가정용 섬유제품 /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 양탄자
가족제품 / 가족제품
간이빨래걸이 / 간이빨래걸이
가구(높이 762 mm 이상 서랍장/파일링캐비닛 제외)
선글라스 / 선글라스
안경테 / 안경테
텐트 / 텐트
고령자용 신발 /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침대 매트리스 /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 /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 벽지 및 종이장판지
합성수지제품 / 합성수지제품
감열지 / 감열지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적용범위

섬유제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피부에 직접 또는 간접 접촉하는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외의류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우의,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샌들, 아쿠아 슈즈 등을 말하며,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사출 성형한 100% 합성수지제 신발과 천연가죽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 벨트류, 멜빵 등(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을 말한다.

중의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블라우스, 원피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헤어밴드, 가발, 귀마개 등(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을 말한다.

내의류 지속적으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거들),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임부속옷류, 잠옷류, 양말류(타이츠, 스타킹 포함), 복대, 레깅스류, 목욕가운, 가슴패드, 속치마 등을 말한다.

침구류 잠을 자는 데 이용하는 제품으로서, 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덮개, 시트, 해먹, 카펫(면적이 1㎡ 미만), 매트류(합성수지 재질인 바닥매트1)는 제외) 등을 말한다.

기타 제품류 성인용 섬유제품 중 직접 착용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가방,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커튼, 수의 등을 말하며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대상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의류(외의류, 중의류, 내의류, 유아용 및 아동용 의류, 학생복, 한복 등)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안감,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시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 2020년 10월
 - 치수(권장사항)
 -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 02-000-0000
 - 취급상 주의사항
2.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이불 및 요, 모포, 침낭, 카페트, 방석류, 쿠션류, 신발류, 숄, 가방, 커튼 등)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안감,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 병기,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시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 한국제품
 - 제조국명 : 대한민국
 -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 2020년 10월
 - 치수(숄, 가방, 커튼 등 일부 제품은 생략)
 -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 02-000-0000
 - 취급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취급상 주의 표시
 - 1) 물세탁 방법
 - 2) 산소 또는 염소표백의 가부
 - 3) 다림질 방법
 - 4) 드라이클리닝
 - 5) 짜는 방법
 - 6) 건조방법
2. 기타 취급상 주의·경고 문구
 - 1) 녹 및 피부 접촉 주의사항
 - 2) 불꽃주의



불꽃주의

참고사항

표시사항	• 개별제품에는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표시자' 표시는 제품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품문의처', '소비자상담실', '제조자명(국산품에 한함)', '수입자명', '판매자명'으로 표시할 수 있음. 또한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함. • 개별제품에는 제품의 추적이 가능한 제조연월, 최초 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여 동제품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피부 접촉이 일시적인 타올 및 직접 착용하지 않은 가방, 방석류, 모기장, 덮개, 수의 등은 자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번호를 관리하고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개별제품의 박음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류, 런닝셔츠, 팬티류, 양말류, 장갑류,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머플러, 손수건, 가발류, 모자, 기저귀류, 신발, 수의류, 타올, 넥타이, 모기장, 덮개류, 턱받이류는 개별제품의 포장, 꼬리표 또는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침낭 및 카페트는 방염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개별제품의 표시한 경우도 소비자가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개별제품의 표시도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사용상 주의사항	• 취급상 주의사항은 부속서 1 [별표 10]에 따라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해 4 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기호는 KS K 0021 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류, 손수건, 타올, 모기장, 덮개류, 가방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금속 액세서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속서 1 [별표 10](7)에 따라 녹 및 피부 접촉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불꽃 접근시 제품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속서 1 [별표 10](8) "불꽃주의"의 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b 섬유제품의 치수를 표시할 경우는 부속서 1 [별표 12]에 따른다. • 안전요건 적합 표시 안전요건에 적합함을 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시사항에 "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임"의 표시문구를 추가할 수 있다.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2 양탄자

적용범위

일반 가정에서 일정한 넓이(1m²) 이상의 바닥깔개용 또는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의 털이나 합성섬유 등으로 만든 섬유제품에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제품명 : 양탄자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 2020년 10월
- 치수(솔, 가방, 커튼 등 일부제품은 생략)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 02-000-0000
- 방염여부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취급상 주의사항은 아래 표에 따라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해 4 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기호는 KS K 0021 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류, 손수건, 타올, 모기장, 덮개류, 가방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취급상 주의 사항
물의 온도 95℃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삶을 수 있다.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60℃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40℃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40℃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1)도 할 수 있다.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30℃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1)도 할 수 있다. 세제 종류는 중성 세제를 사용한다.
물의 온도 30℃를 표준으로 하여 약하게 손세탁(1)할 수 있다(세탁기 사용 불가).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물세탁은 안 된다.

2. 금속 약세사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표에 따라 녹 및 피부 접촉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불꽃 주의 표시
불꽃 점근시 제품에 옮겨 불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표에 따라 "불꽃주의"의 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유아 또는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이 안전확인 부속서36(원구)제2부 4.2시험(작은 부품시험)에서 통과되는 작은 부품이 부착된 경우에는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취급상 주의사항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

5.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은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취급상 주의사항
"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깔 수 있음"

6. 섬유제품의 치수를 표시할 경우는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별표 9]에 따른다.
7. 안전요건 적합 표시 안전요건에 적합함을 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시사항에 "가정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임"의 표시문구를 추가할 수 있다.

참고사항

표시사항

- 개별 제품에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더라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로 표시하여야 함
- 박음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제품은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표시하여야 함
-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표시할 수 있음(상하위로 구분되는 가정용 섬유제품은 제외)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3 가족제품

적용범위

“가족 제품”이라 함은 천연가족(피혁) 및 인조가족(피혁), 천연모피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족면적 비율의 60 % 이상인 제품을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가족제품
- 모델명 : KPSA-1100
- 재료의 종류(조성 표시)
- 치수(cm)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취급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가족 및 모피의류(가정 및 모피의류의 취급상 주의사항은 별도 표기표를 사용할 수 있다)
 - 1) 세탁(벤젠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물로 씻을 때에 가족 및 모피의 색이 바래지거나 또는 가족이 경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
 - 2) 겹쳐두지 않고 온도, 습도가 낮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장마철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3) 가족 및 모피의 때를 빼는 경우에는 가족 및 모피의류 전문용 클리너를 사용하고 특히 스웨이드 가족은 고무지우개로 때를 뺀 후 솔로 털 것
 - 4) 다림질은 저온에서 두꺼운 종이 또는 형판을 대고 해야 하며 증기 다리미는 사용하지 말 것
2. 가방 및 핸드백
 - 1) 천연가족의 경우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아니할 것
 - 마른 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것
 - 보존 시에는 온도나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할 것
 - 2) 인조가족의 경우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3. 신발
 - 1) 천연가족의 경우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아니할 것
 - 솔로 잘 닦을 것
 - 보존 시에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할 것
 - 2) 인조가족의 경우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4. 기타 가족제품 제품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

참고사항

표시사항	• 개별제품에는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공통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함. • 개별제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지갑류, 가방류, 벨트류, 신발류 등은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 (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포장단위 표면에 품질표시를 할 수도 있음. • 가죽 및 모피의류의 표시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의 표시는 섬유 부분에 한하며, 가죽 및 모피 원단의 표시와 사용상 주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가죽제품의 표시 규정에 따름. • 재료의 종류는 겉감 및 안감(의류에 한함)에 대하여 모두 표시하고 신발류는 갑피,창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 천연가죽은 '천연가죽'으로 표시하고 안전기준준수 부속서 3.가죽제품 7.1.2 표2와 같이 동물명을 부기함. • 코팅가죽, 라미네이팅가죽에 해당하는 경우 '인조가죽'으로 표시하거나 각 항목에 맞게 표시하고, 코팅 또는 라미네이팅 재료의 성분을 병기할 수 있다(예 : 인조가죽(폴리우레탄 코팅), 인조가죽(폴리우레탄 라미네이팅) 또는 코팅가죽(폴리우레탄 코팅), 라미네이팅가죽(폴리우레탄 라미네이팅) 등). 재조합가죽에 해당하는 경우 '인조가죽'으로 표시하거나 '재조합가죽'으로 표시하고, 재조합 방식을 부기하거나(예 : 인조가죽(본딩가죽), 인조가죽(그라인딩가죽), 인조가죽(분쇄가죽) 또는 재조합가죽(본딩가죽), 재조합가죽(그라인딩가죽), 재조합가죽(분쇄가죽) 등), 가죽성분과 가죽 이외 성분의 혼용율을 조성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예 : 인조가죽(가죽 60 %, 기타 40 %) 또는 재조합가죽(가죽 60 %, 기타 40 %)). 3.3.4에 따라 합성가죽에 해당하는 경우 '인조가죽(합성가죽)'으로 표시하거나 '합성가죽'으로 표시한다. • 천연모피는 '천연모피'로 표시하고 동물명을 부기한다(예 : 천연모피(밍크), 천연모피(토끼), 천연모피(여우), 천연모피(너구리) 등). • 가죽 및 모피의류의 안감이 섬유재질일 경우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른다. • 치수 표시는 의류, 신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가죽 및 모피의류의 경우는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별표9]에 따르며, 신체 치수를 표시한다. • 신발치수는 KS M 6681 또는 KS M ISO 9407에 따라 표시하고 기타 신체치수인 발길이(mm)를 표시한다. • 치수표시는 제품내의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단위 성분·성능·규격 등의 표시에 있어서의 단위는 국제 표준 단위(SI)로 표시하여야 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기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고 제품 특성에 따라 취급상 주의사항을 푸가 가능.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6 간이빨래걸이

적용범위

가정에서 세탁물을 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조대를 말한다. 이불을 말리기 위한 것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간이빨래걸이
- 모델명 : KPSA-1100
- 치수(폭 × 길이 × 높이)
- 견딜 수 있는 하중(kg)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 1) 사용 전에 제품각부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 2) 세탁물은 균형에 맞게 말릴 것
- 3) 옥외에서 사용할 때 강풍이 불 때는 실내에 넣을 것
- 4) 사용 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사항을 표시함.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5 가구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책상 및 테이블, 의자, 수납가구, 침대, 썬크대, 소파, 기타 가구류에 대하여 적용하며, 각 품목별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의자, 유아용 침대 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별도 품목으로 관리되거나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실험실용 기자재, 소품형 가구(예: 연필꽂이, 책꽂이, 장식함, 독서대, 액자, 벽 옷걸이, 거울, 우산꽂이, 휴지통 등), 소형 가구(예: 벽걸이형 소형선반, 행거, 비키니 옷장, 와인/와인잔 수납랙, 발판 등) 및 옥외용 가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높이 762 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수납가구
- 모델명 : KPSA-1100
- 외형치수(mm) : 500 × 400 × 600(길이 × 나비 × 높이)
- 구조부재 : 아카시아
- 표면가공 : 티코오일 도장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취급상 주의사항
 -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 마른 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것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가구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벽고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벽에 고정하여 사용할 것
 - 어린이가 서랍 또는 선반을 밟고 올라서거나 매달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사용상 주의사항

품목	적용범위	개별 요구사항
책상 및 테이블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책상, 테이블, 식탁, 교자상 등에 적용한다.	
의자	일반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회전/비회전/접이식의자, 스тол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마감재 -쿠션재
수납 가구	일반 가정, 학교,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옷장, 이불장, 서랍장, 책장, 사무용 캐비닛, 파일링캐비닛, 로커, 선반장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침대	침대란수면에 사용하는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지지하는 구조체를 조합된 것을 말하며 주먹용 보통침대, 소파침대, 분할침대, 2단침대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매트리스의 쿠션재
썬크대	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복합 취사대, 벽장, 후드장, 장식장, 상부수납장, 하부 수납장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벽장의 최대 적재하중 (kg)
소파	일반 가정, 사무실, 학교, 도서관 등에서 사용하는 소파에 대하여 적용한다.	-쿠션재
기타 가구류	일반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화장대, 청소용구함, 검색대, 강연대, 사회대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사항

표시사항

- 품명 : 품목별 적용범위에 있는 품목명을 표시한다.
- 외형치수 : 길이, 나비 및 높이는 mm 로 표시하고 표시치의 허용오차는 ± 2 mm 로 한다.
- 구조부재 : 제품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가구 몸체와 외부 하중을 지지하는 문짝, 상판, 측판, 뒤판, 선반, 다리, 서랍재 등의 부재를 말하며 마감재와 쿠션재는 제외한다.
- 표면가공 : 도장, 무늬목, PVC시트, 피니싱 포일, 저압 멜라민 화장판, 고압 멜라민 화장판 등 구조부재의 표면을 장식하거나 마감하는 가공형태를 말한다.
- 쿠션재 : 의자, 소파 등에 내장하여 하중을 분산하거나 충격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철 용수철, 우레탄 폼, 라텍스 등의 재료를 말한다.
- 마감재 : 의자, 소파 등의 구조부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둘러싸는 외피 형태의 가죽, 천 등의 재료를 말한다.
- 매트리스의 쿠션재 : 강제용수철, 스펀지고무, 폼라바, 우레탄폼, 천연라텍스, 케미칼라텍스, 천연+케미칼라텍스로 적는다.
- 벽장의 최대 적재하중(kg) : 최대 적재하중을 적는다.
- 제조연월 : 제품 제조연월을 적는다.
- 수입자명 : 수입자명을 적는다.
- 취급상 주의사항 : 취급상 표시사항은 <부속서 5>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다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7 선글라스

적용범위

일반 옥외에서의 강렬한 태양 광선에 대한 눈의 보건용 선글라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광색필터, 편광필터 등 특수 유형 필터와 아래 적용되는 제품은 선글라스의 적용범위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일광욕실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인공 광원으로부터의 복사선에 대한 보호용 안경류 ②특정 스포츠용 보안경(예를 들면, 스키 고글이나 기타 유형의 것) ③의료용으로 처방된 태양광 복사선 감시를 위한 선글라스 ④부분 일식 또는 금환식 관찰과 같이 태양을 직접 관찰하기 위한 제품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선글라스
- **모델명** : KPSA-1100
- **재질**
테(보기 : 플라스틱 등)
렌즈(보기 : 유리 등)
- **광선 특성**(UV-A 차단율(%)/UV-B 차단율(%)/가시광선 투과율(%)/선글라스 필터에 대한 설명)
※ UV-A와 UV-B를 각각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자외선 차단율(%)로 표시
- **제조연월, 수입연월, 로트번호 중 어느 하나로 표기**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표시위치

선글라스 제품마다 수평방향 렌즈 삽입부 크기, 렌즈간 거리 등 표에 나타난 표시사항을 정해진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조자, 모델명, 색상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표기 방법은 각인이나 인쇄를 규정하나, 쉽게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로 표시하는 것도 수용하며, 꼬리표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표1 안경테의 표시

표시	위치
제조자 또는 공급자	특정하지 않음
모델명	특정하지 않음
색상	특정하지 않음
박스 기호 □와 수평 방향 렌즈삽입부 크기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렌즈간 거리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다리의 전체 길이	다리
치수는 다음의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 [수평 방향 렌즈삽입부 크기](mm), [박스기호], [렌즈간 거리(mm)] (예시: 50 □ 20)	
비고 : 치수의 측정과 표시 등은 KS G ISO 8624에 따른다.	

사용상 주의사항

- (1) 태양 직접 관찰용이 아닙니다.
 (2) 일광욕실에서와 같은 인공 광원에 대한 보호용이 아닙니다.
 (3) 표에 주어진 것과 같은 기호 및/또는 문구 형태로 표시한 필터 범주에 대한 설명. 기호의 최소 높이는 5 mm 이어야 한다.

필터 범주 시각투과율범위	설명	용도	기호
0 $\tau_V > 80\%$	열은색 선글라스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감소	 IEC 60417-5955
1 $43\% < \tau_V \leq 80\%$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제한적인 보호	 KS S ISO 7000-2948
2 $18\% < \tau_V \leq 43\%$	일반 선글라스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양호한 보호	 KS S ISO 7000-2949
3 $8\% < \tau_V \leq 18\%$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우수한 보호	 KS S ISO 7000-2950
4 $3\% < \tau_V \leq 8\%$	매우 짙은 특수 선글라스, 태양광 눈부심 감소 매우 우수	강한 태양광 눈부심에 대한 매우 우수한 보호. 즉, 바다, 설원, 높은 산이나 사막	 KS S ISO 7000-2951
비고 문구 및/또는 그림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 (4) 관련이 있는 경우, 만약 세정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선글라스가 손상될 수 있다면 취급 및 세정관련 설명과 세정에 부적합한 세정제 목록
 (5) 필터가 운전용과 필터 범주 4를 위한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운전 및 도로용에 부적합”이라는 경고를 기호 형태나 문구로 표시한다.
 기호의 최소 높이는 5 mm 이어야 한다.



- (6) 필터의 시각투과율이 8 % 초과 75 % 미만(필터 범주 1~3)인 경우, “해가 진 후나 밤에 운전용으로 부적합” 또는 “밤이나 흐린 상태에서 운전용으로 부적합”이라는 경고.

참고사항

표시사항

- 날개 포장 또는 꼬리표에는 보기 쉬운 곳에 알아보기 쉽게 인쇄하거나 고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글로 표시하여야 함. 그림 문자가 사용된 경우, 그림 문자 의미에 대한 설명은 사용상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별도 용지에 기입하여도 됨.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8 안경테

적용범위

안경테(렌즈가 끼워져 있는 안경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 용도인 것(산업용 안경테 등)은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안경테
- 모델명 : KPSA-1100
- 재질(보기: 플라스틱 등)
- 제조연월, 수입연월, 로트번호 중 어느 하나로 표기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 안경테 제품마다 수평방향 렌즈 삽입부 크기, 렌즈간 거리 등 표에 나타난 표시사항을 정해진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조자, 모델명, 색상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표기 방법은 각인이나 인쇄를 규정하나, 쉽게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로 표시하는 것도 수용하며, 꼬리표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안경테 제품에 표시하는 사항

표시	위치
제조사 또는 공급자	특정하지 않음
모델명	특정하지 않음
색상	특정하지 않음
박스 기호 □와 수평 방향 렌즈삽입부 크기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또는 다리
렌즈간 거리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또는 다리
다리의 전체 길이	다리
치수는 다음의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 [수평 방향 렌즈삽입부 크기(mm)], [박스기호], [렌즈간 거리(mm)] (예시: 50 □ 20)	
비고 : 치수의 측정과 표시 등은 KS G ISO 8624에 따른다.	

참고사항

표시사항

- 날개 포장 또는 꼬리표에는 공통표시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알아보기 쉽게 인쇄하거나 꼬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함.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9 텐트

적용범위

취침용, 주거용, 여행용으로 야영 또는 등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텐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텐트
- 모델명 : KPSA-1100
- 재질
- 치수(높이 × 나비 × 길이) 및 수용인원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방염제품(방염제품인 경우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 화재예방의 주의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 1)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보관방법 사용방법 세탁(손질)방법, 화재예방, 기타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 2)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표시는 다음과 같이 쉽게 읽고 볼 수 있는 위치에 화재방지를 위한 주의문구를 텐트내부에 부착되어야 한다.
 - ① 주의문구의 넓이는 7 cm × 15 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② “화재예방” 문구는 붉은색 문자로 본문구(흰색바탕에 검은 색)보다 2배 이상이어야 한다.

화재예방

- 안전한 야영을 위해서는 아래의 상식적인 규칙을 따를 것
- 벽, 지붕 및 커튼 근처에서 요리, 가열 및 점화 기구를 놓지 말 것
- 항상 이들 기구의 안전지침을 따를 것
- 어린이를 점화기구 근처에서 놀지 못하도록 할 것
- 비상구를 항상 비워 둘 것
- 화재방지 도구가 있는 위치를 숙지할 것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별도의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음.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10 고령자용 신발

적용범위

일상생활에서 고령자가 보행할 때 신는 일반 보행용 신발로 벨크로나 지퍼, 밴드 등을 이용 하여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고령자용으로 고안된 신발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고령자용 신발
- 모델명 : KPSA-1100
- 재료의 종류
- 치수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의 주의사항
- 소비자상담실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제품 문의처
- 취급 설명서(필요시)

사용상 주의사항

1. 천연가죽의 경우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젖었을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솔로 잘 닦을 것
 - 보존시에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할 것
2. 합성가죽의 경우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 불열에 놓으면 변화되거나 변형될 수 있음
 - 표면의 때를 없애기 위해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형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
3. 기타 가죽제품의 제품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

참고사항

표시사항

- 고령자용 신발의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고령자용 신발의 라벨 또는 택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함.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11 고령자용 지팡이

적용범위

고령자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우미 없이 사용하는 지팡이(이하 “지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팡이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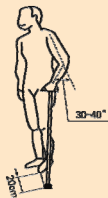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고령자용 지팡이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설명서

1.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읽은 후 보관할 것
2. 지팡이의 전체길이.
단, 조절식 지팡이는 최대 및 최소길이
3. 바른길이의 지팡이 선택방법
올바른 손잡이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
에는 지팡이 끈을 같은쪽 발끝의 앞바
깁 방향 20cm 에 두고 팔꿈치는 30~
40° 굴곡한 위치가 좋고 이 상태에서
지팡이의 길이를 결정할 것
4. 사용방법
단, 일자형지팡이는 제외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1. 사용상 주의사항

- (a) 몸에 맞는 지팡이를 선택할 것
 - (b) 사용전에 각 부분을 점검한 후 사용할 것. 또 지팡이 끝 고무가 부서지거나 마모되는 등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환할 것
 - (c) 지대가 확실히 고정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단, 일자형지팡이는 제외한다.
 - (d) 접이식 지팡이에 있어서는 고무 로프의 열화, 느슨함, 손상 등의 이상이 있는 때는 판매점 등에 알릴 것
 - (e) 조립식지팡이에 있어서는 사용중 헐거움 등의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할 것
 - (f)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 등에서의 사용은 충분히 주의할 것
6. 용도 이외(예를 들어 등산용, 호신용 등)에는 사용하지 말 것
 7. 사용 후 및 보관방법
 - (a) 접이식지팡이에 있어서는 고온의 장소(예를들어 스토브 앞 여름 때의 자동차 내의 방치 등)는 고무 로프가 열화되기 쉽게 되기 때문에 피할 것. 또 저온의 장소(예를 들어 한랭지 등)에 서는 접은 상태에서 바로 고무로프의 탄성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것
 - (b) 그 외의 사용 후 및 보관방법에 대해서 주의

참고사항

표시사항

- 표시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사용설명서

- 사용설명서를 알기 쉬운 내용으로 첨부함.
- 사용설명서 3,4는 그림을 병기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안전경고표시 등을 표시함.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12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적용범위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은 고령자용 휠체어에 장착할 수 있거나 장착되어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치수(가로 × 세로 × 높이)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 주의사항 등을 표시함.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13 고령자용 목욕의자

적용범위

자세유지가 가능한 고령자가 일반가정 등 욕실 내에서 샤워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목욕의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고령자용 목욕의자
- **모델명**(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최대 사용자 체중**
- **목욕 의자의 높이**

사용상 주의사항

1. 취급설명서를 펴히 읽고, 읽은 후 잘 보관할 것
2. 각부의 명칭(그림으로 표시)
3. 조립 및 높이조절 방법
4. 세척 및 소독 방법(세제, 소독제 등을 명시)
5. 사용방법
6. 사용상의 주의사항
 - 사용하기 전에 각부를 점검하고 사용할 것
 - 사용자의 신체상황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 못할 경우 보호자가 동반할 것
 - 구입할 때에는 구입처 또는 전문가와 적절한 선택방법 또는 사용자의 몸에 맞는지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등받이를 잡고 일어서지 말 것
 - 비눗물 샴푸 등으로 좌면이나 바닥에 접하는 부분은 미끄러짐을 주의할 것
 - 사람이 앉은 상태로 이동하지 말 것
 - 발판 대신으로 사용하지 말 것
 - 최대이용자 체중을 지킬 것
7. 재료표(각부의 길이, 질량, 재료, 내열온도 등)
8.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특히 제조연월은 눈에 띄는 곳에 큰 글씨로 표시함.
- 제품에는 사용상 주의사항 및 취급설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생략 가능함. 또한 일반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큰 글씨로 명시하여야 함. d는 취급설명서 표지 등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하고 e의 경우, 안전경고표식을 병기하는 등 보다 인지하기 쉬워야 함.
- 목욕의자는 높이를 조절했을 때 최소높이와 최고높이를 모두 표시해야 함.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14 고령자 위치추적기

적용범위

실외에서 고령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GPS 위치 정보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여 고령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위치추적기에 대해서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고령자 위치추적기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 (수입품에 한함)
- **치수** : 가로 × 세로 × 높이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사용상 주의사항

- ① 배터리 사용 시 주의하십시오.
 - 배터리에 강한 충격을 주거나 뽕뽕한 것으로 뚫지 마십시오.
 - 온도가 높은 곳에 두거나 가열하지 마십시오.
 - 물에 젖거나 잠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배터리를 물거나 뺄지 않도록 하십시오.
 - 배터리 충전용 단자가 액체 및 금속물질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② 충전 시 전원 코드 부분을 함부로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③ 전원 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게 하십시오.
 -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④ 비행기 탑승 시에는 기기의 전원을 끄십시오.
 - 본 기기의 전자파가 비행기 운항에 사용되는 전자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⑤ 무리한 충격을 금합니다.
 - 과도한 충격으로 본 기기를 파손하려 하는 행위 등은 위험할 수 있으니 금합니다.

2. 경고

- ① RF파 에너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밀 의료기기 근처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의료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② 심장박동 보조장치(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심장박동 보조장치(페이스메이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③ 전파기기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는 전원을 끄십시오.
 - 만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파상의 문제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 ④ 손상된 전원 코드나 플러그, 험거운 콘센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⑤ 본 제품에 적합한 충전용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 다른 충전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⑥ 제품에 심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충격에 의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⑦ 기본적인 생활 방수 이상의 습기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제품이 물에 젖었을 경우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품이 물에 젖었을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하신 후 AS센터로 연락하여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주의

- ① 사용자 임의로 기기를 분해하거나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 제품이 손상되거나 고장,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임의로 개조, 분해, 수리하였을 경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리는 반드시 지정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십시오.
- ② 제품의 전자파 관련 정보를 알아 두십시오.
 -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래과학창조부가 입법한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 ③ 제품의 작동 온도인 (-0~60)℃ 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에서의 사용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④ 제품을 열기구(난로, 전자레인지 등) 가까이에 두거나 안에 넣지 마십시오.
 - 제품이 변형되거나, 폭발 화재의 원인이 되며, 이에 따른 고장 시 AS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⑤ 젖은 손으로 제품이나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참고사항

표시사항

- 고령자 위치추적기의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함.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 이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15 물안경

적용범위

수영장 등에서 사용되는 물안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잠수(스킨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등)에 사용하는 물안경 및 도수가 있는 물안경은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물안경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함.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포장, 사용 설명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알레르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함. 사용설명서에는 올바르게 안전한 제품 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내용이 제공되어야 함.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16 반사안전조끼

적용범위

반사안전조끼란 어두운 조건의 먼 거리에서도 사람의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재료 및 재귀반사재료를 사용한 안전조끼를 말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반사안전조끼
- 모델명 : KPSA-1100
- 종류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바탕재, 재귀반사재 등)
- 치수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그림문자
- 취급상 주의표시(세탁방법, 다림질, 건조방법, 사용설명서 등)

사용상 주의사항

1. 착용방법
2. 잘못사용에 따른 경고사항
3. 사용제한
4. 저장방법(보전주기와 정확한 저장 및 보전방법)
5. 성능기준이 저하되지 않는 세탁 최대횟수

참고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한다. 이때 그림문자는 그림은 10 mm 이상, 숫자는 2 mm 이상으로 백색바탕에 검정색 글씨를 사용하여야 함.
- 종류는 표1에 의한 1종/2종/3종 및 표5,6에 의한 1급/2급을 표시하여야 함.
- X : 표 1에 의한 1종/2종/3종을 표기
- Y : 표 5,6에 의한 1급/2급을 표기

표 1. 재귀반사재의 면적(단위 : m²)

구 분	3종	2종	1종
재귀반사재	0.2 이상	0.13 이상	0.10 이상
혼합성능재	-	-	0.20 이상

표 2. 색도(바탕재)

조사각 관측각	5°	20°	30°	40°
12'	250	220	135	50
20'	120	100	75	30
1°	25	15	12	10
1°30'	10	7	5	4

표 3. 색도(혼합성능재)

조사각 관측각	5°	20°	30°	40°
12'	330	290	180	65
20'	250	200	170	60
1°	25	15	12	10
1°30'	10	7	5	4



표시사항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17 스테인레스 수세미

적용범위

스테인레스 수세미란 주방, 욕실, 식당 및 산업계 등에서 사용하도록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 제조된 수세미를 말한다. 다만, 스테인레스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스테인레스 수세미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스테인레스의 종류

사용상 주의사항

- ① 코팅용기 등 흡집이 나기 쉬운 곳에는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② 장시간 사용 시 철이 끊어져 조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용 후 깨끗이 행구어 건조시켜 주시면 위생적입니다
- ④ 영·유아 등 어린이들이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함.
- 스테인레스 수세미의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함.
- 안전기준 부속서 26-A 스테인레스 강의 종류의 기호를 표시함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18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적용범위

독립보행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활필수용품인 흰색 지팡이(이하 “지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점자 및 한글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함.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19 침대 매트리스

적용범위

침대매트리스란 일반 가정에서 성인이 사용하는 보통 침대의 매트리스를 말하며, 물 또는 공기침대 매트리스는 제외한다. 또한, 병원 등의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침대의 매트리스, 유아용 침대 및 아동용 이단침대의 매트리스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침대 매트리스
- 모델명 : KPSA-1100
- 치수(가로 × 세로 × 높이)
- 원단의 섬유명 및 혼용률
- 재생 내장재 사용여부 예) 재생 스프링 사용, 재생 내장재를 사용하지 않았음 등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1. 침대와 함께 판매되지 않을 경우 매트리스의 크기에 대한 설명
2. 침대 매트리스 부근에 전기난로, 가스 불 등과 같은 뜨거운 열과 덮개가 없는 불이 있을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
3. 세탁방법에 대한 주의사항
4. 조립할 때의 주의사항
5. 기타 취급상 주의사항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본체 또는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20 우산 및 양산

적용범위

우산, 양산 및 우산 겸용 양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회성의 용도 등으로 제조된 비닐우산 등은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우산 및 양산
- 모델명 : KPSA-1100
- 원단의 조성
- 자외선 차단율 : 000 %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참고사항

표시사항

- 표시사항은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한글로 스티커 또는 꼬리표에 인쇄하여 표시하여야 함.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21 휴대용 경보기

적용범위

휴대용 경보기는 개인이 휴대하여 위협상황에서 신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높은 음압을 발생하는 1차, 2차 전지를 발생 동력으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휴대용 경보기의 발광(發光)기능과 같은 부과 기능 및 2차 전지를 발생동력으로 사용할 경우 2차 전지의 수명에 의한 제품특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휴대용 경보기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음압레벨
- 연속사용시간(연속사용시간은 분(min) 단위로 표기함)
- 경고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공통표시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 경고는 휴대용 경보기 제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스티커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장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고 음압 레벨에 따른 청력이상 가능성을 경고해야 함.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22 접촉성 금속 장신구

적용범위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pendant),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에 적용하며, 플라스틱, 목재 등의 표면을 금속재료로 도금한 제품도 포함한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과 금(함량이 58.5 % 이상), 은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접촉성 금속 장신구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14세 이상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필요시)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제품의 크기 등으로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단위 포장 또는 꼬리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또한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 설명서에 별도 표시할 수 있음.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23 벽지 및 종이장판지

적용범위

벽지란 실내의 벽·천정 등에 붙이는 종이제, 섬유제, 플라스틱제 및 금속박제 등의 것으로 접착제로 붙이는 것을 말하며, 제품의 한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점착 시트(인테리어 필름)를 포함한다. 종이장판지란 온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천연 소재로 만든 벽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벽지

- 제품명 : 벽지
- 모델명 : KPSA-1100
- 내황화성 유무
- 난연성 유무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2. 장판지

- 제품명 : 장판지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벽지는 재료의 종류, 치수(평판제품 : 가로(cm) × 세로(cm), 롤 제품 : 길이(m) × 폭(cm)), 매수, 사용상 주의사항과 장판지는 치수(mm × mm), 평량(g/m²), 매수(매),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음.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

적용범위

합성수지제품이란 합성수지 재질로 된 제품을 말하며 합성수지 재질이라 함은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U(폴리우레탄), PVC(폴리염화비닐), PC(폴리카보네이트), PEVA(폴리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NBR(니트릴부타디엔 고무), EVA(에틸초산비닐 공중합체), ABS, 실리콘 등이 있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합성수지제품
- 모델명 : KPSA-1100
- 재질 : PE, PP, PU, PVC, PC, PEVA, NBR, EVA, ABS, 실리콘 등
- 치수(해당 제품에 한함)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참고사항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소형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되어 표시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에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표시사항 및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

적용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25 감열지

적용범위

감열지란 열에 노출 시 색이 변하는 현색제가 배합된 재료로 코팅된 특수한 용지로서, 감열프린터를 통해 인쇄되고 가정 및 상업시설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감열지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참고사항

표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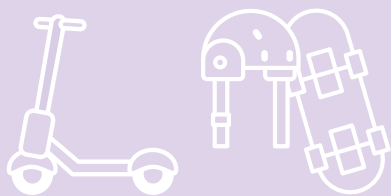
-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사용상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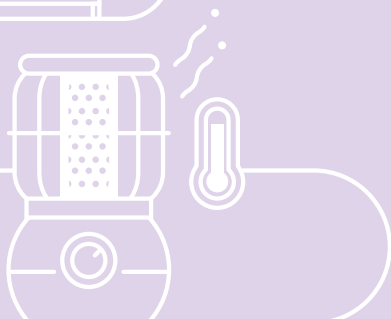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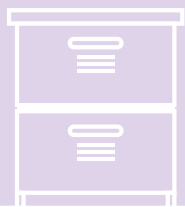
-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사항을 표시함.



부록



지정 시험 기관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





부록

❶ 지정 시험 기관

시험 · 인증기관 안내

기관명	소재지	대표번호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경상남도 진주시 총의로 10	055-791-3114	https://www.ktl.re.kr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02-2102-2500	http://www.kcl.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02-2164-0011	http://www.ktr.or.kr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KTC)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1899-7654	http://www.ktc.re.kr
FITI시험연구원(FITI)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79 (마곡동 778)	02-3299-8000	https://www.fiti.re.kr
한국이류시험연구원(KATRI)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완산로 52 (용두동 232-22)	02-3668-3000	http://www.katri.re.kr/kr
KOTITI시험연구원(KOTITI)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 (상대원동 138-7)	02-3451-7000	http://www.kotiti-global.com

시험 · 인증기관 담당부서 안내

담당기관	품목 구분	세부품목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전확인	휴대용 레이저용품	정보조명평가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안전인증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생활제품인증팀
	안전확인	건전지, 자동차용타이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인증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안전인증팀
	안전확인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전동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승차용안전모, 운동용안전모, 온열팩, 수유판드, 휴대용 예초기날 및 보호덮개, 스포츠용 구명복, 미끄럼 방지타일, 실내용바닥재	
	공급자적합성확인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담당기관	품목 구분	세부품목	담당부서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안전인증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물놀이기구	어린이제품안전센터
	안전확인	스케이트보드, 전동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휴대용 예초기날 및 보호덮개,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건전지, 디지털 도어록	소재부품평가센터
		휴대용 레이저용품	조명기술센터
		자동차용브레이크액	화학분석센터
FIT시험연구원	안전인증	비비탄총,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인증팀
	안전확인	실내용비탁재, 스포츠용 구명복	부품소재사업팀
		온열팩, 수유파드, 스노보드, 스키용구, 등산용로프	안전인증팀
	공급자적합성확인	창문 블라인드	부품소재사업팀
	안전기준준수	벽지 및 종이장판지	섬유소비재사업팀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가구(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반사안경조끼, 스테인리스 수세미,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접착성 금속 장신구,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안전인증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인증사업본부
	안전확인	온열팩, 수유파드, 등산용로프	
	공급자적합성확인	가구 일부(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쌍꺼풀용 테이프,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안전기준준수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선글라스, 안경테, 고령자용 신발, 물안경,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접착성 금속 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KOTIT시험연구원	안전인증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제품인증팀
	공급자적합성확인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가구 일부(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안전기준준수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가구(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우산 및 양산, 접착성 금속 장신구, 가정용 섬유제품	



부록

❶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4] 안전인증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 고무를 포함한다)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타이어 재생용 트레드고무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공기주입물놀이기구 공기주입보우트 수영보조용품(착용형)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비비탄 총	청소년용 비비탄 총 성인용 비비탄 총
기계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솔	가정용 압력냄비 압력솔
섬유	대상없음	
건축	대상없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5] 안전확인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화학	건전지	망간 건전지 알칼리 · 망간 전지(L)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승용차용 타이어 소형 트럭용 타이어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
생활용품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보조차
	디지털도어록	디지털도어록
	롤러스포츠허 보호장구	롤러스포츠허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노보드 부츠 바인딩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생활용품	전동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보드류	
	스키용구	스키(알파인용) 스키화(알파인용) 스키바인딩(알파인용)	
	이륜자전거	일반용자전거 산악용자전거 전기자전거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헬스기구	고정식운동기구 벤치 프레스 러닝머신 고정식자전거	스텝퍼 로잉 머신 운동용슬라이더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야외운동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눈보호구	
	운동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롤러스포츠헤드 안전모 등산용 안전모 스키용 안전모 야구용 안전모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온열팩	온열팩	
	수유판드	수유판드	
	기름난로	기름난로	
	야외 운동기구	야외 운동기구	
	가정용 미용기기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	
기계금속	빙삭기	빙삭기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 휴대용 예초기 보호덮개	
섬유	등산용로프	등산용로프	
	스포츠용 구명복(부력 보조복)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 보조복	
건축	미끄럼 방지 타일	미끄럼 방지 타일	
	실내용 바닥재	실내용 바닥재	



부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6] 공급자적합성확인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화학	폴리염화비닐관 (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연질염화비닐호스 폴리염화비닐관
생활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한다)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바퀴달린 운동화	바퀴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창문 블라인드
	쌍커풀용 테이프	쌍커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속눈썹 열 성형기
	가(假) 속눈썹(인조속눈썹)	가(假) 속눈썹(인조속눈썹)
	쇼핑카트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주택용 사다리 도배용 사다리 원예용 사다리 계단식 소형 사다리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킥보드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자동차용 유압식 잭 자동차용 나사식 잭
	빙삭기	빙삭기
섬유	대상 없음	-
건축	물탱크	물탱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7] 안전기준준수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화학	가죽제품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매트류 신발류 기타류
생활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책상 및 테이블 의자 수납가구 침대 싱크대 소파 기타 가구류
	간이 빨래걸이	간이 빨래걸이
	선글라스	선글라스
	안경테	안경테
	텐트(난방용 텐트를 포함한다)	텐트 난방용 텐트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고무신발 고령자용 염화비닐신발 고령자용 가죽신발 고령자용 발포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일자형지팡이 고령자용 조절식지팡이 고령자용 접이식지팡이 고령자용 조립식지팡이 고령자용 다축지팡이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용 위치추적기	고령자용 위치추적기
	물안경	물안경
	반사 안전조끼	반사 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침대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 및 종이 자판지	벽지 및 종이 자판지
	감열지	감열지
기계금속	대상없음	-
섬유	가정용 섬유제품	의류,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
	양탄자	양탄자
건축	대상없음	-



Index

안전인증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16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타이어 재생용 트레드고무	17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18
가스라이터 / 가스라이터	19
물놀이기구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20
물놀이기구 / 공기주입보트	21
물놀이기구 / 수영보조용품(착용형)	22
물놀이기구 /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23
비비탄총 / 청소년용	24
비비탄총 / 성인용	25

안전확인

등산용 로프 / 등산용 로프	28
스포츠용 구명복 / 스포츠용 구명복	29
스포츠용 구명복 / 부력 보조복	30
건전지(충전지를 제외한다) / 건전지(충전지를 제외한다)	31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32
자동차용 타이어 / 자동차용 타이어	33
미끄럼방지타일 / 미끄럼방지타일	34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35
고령자용 보행차 / 워킹프레임	36
고령자용 보행차 / 롤레이터	37
고령자용 보행차 / 워킹테이블	38
디지털 도어록 / 디지털 도어록	39
롤러스포츠보호장구 / 롤러스포츠보호장구	40
스노보드 / 스노보드	41
스케이트보드 / 스케이트보드	42

스케이트보드 / 전동스케이트보드	44
스케이트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45
스케이트보드 / 전동보드류	46
스키용구 / 스키용구	47
이륜자전거 / 일반용 자전거	48
이륜자전거 / 산악용 자전거	50
이륜자전거 / 전기자전거	51
헬스기구 / 고정식운동기구	52
헬스기구 / 벤치 프레스	53
헬스기구 / 러닝머신	54
헬스기구 / 고정식 자전거	55
헬스기구 / 스텝퍼	56
헬스기구 / 로잉머신	57
헬스기구 / 운동용 슬라이더	58
휴대용 레이저용품 / 휴대용 레이저용품	59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다) / 승차용 안전모	60
운동용 안전모 / 자전거·롤러스포츠용 안전모	61
운동용 안전모 / 등산용 안전모	62
운동용 안전모 / 스키용 안전모	63
운동용 안전모 / 야구용 안전모	64
실내용 바닥재 / PVC 바닥재	65
실내용 바닥재 /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67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 온열팩	68
수유판드 / 수유판드	69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휴대용 예초기의 날	70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휴대용 예초기 보호덮개	71
기름 난로(연료소비량 600g/h 이하) / 기름 난로	72
전동보드 / 전동스케이트보드	74

전동보드 / 전동킥보드	76
전동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77
전동보드 / 전동외륜 / 이륜보드	78
야외 운동기구 / 야외 운동기구	79
가정용 미용기기 / LED 마스크	80
가정용 미용기기 / 두피관리기	81
가정용 미용기기 / 눈 마사지	82
가정용 미용기기 / 플라즈마 미용기기	83

공급자적합성확인

폴리염화비닐관 / 연질염화비닐호스	86
폴리염화비닐관 / 폴리염화비닐관	87
물탱크 / 물탱크	88
롤러 스케이트 / 롤러 스케이트	91
바퀴달린 운동화 / 바퀴달린 운동화	92
모터 달린 보드 / 모터 달린 보드	93
창문블라인드 / 창문블라인드	94
쌍꺼풀용 테이프 / 쌍꺼풀용 테이프	96
속눈썹 열 성형기 / 속눈썹 열 성형기	97
자동차용 휴대용잭 / 자동차용 유압식 잭	98
자동차용 휴대용잭 / 자동차용 나사식 잭	99
가(假)속눈썹 / 가(假)속눈썹	100
쇼핑카트 / 쇼핑카트	101
휴대용 사다리 / 주택용 사다리	102
휴대용 사다리 / 도배용 사다리	105
휴대용 사다리 / 원예용 사다리	107
휴대용 사다리 / 계단식 소형 사다리	109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11

킥보드 / 킥보드	112
빙삭기 / 빙삭기	113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마스크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마스크	114

안전기준준수대상

가정용 섬유제품 / 가정용 섬유제품	116
양탄자 / 양탄자	118
가족제품 / 가족제품	119
간이빨래걸이 / 간이빨래걸이	121
가구(높이 762mm 이상 서랍장/파일링캐비닛 제외)	122
선글라스 / 선글라스	124
안경테 / 안경테	126
텐트 / 텐트	127
고령자용 신발 / 고령자용 신발	128
고령자용 지팡이 / 고령자용 지팡이	129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130
고령자용 목욕의자 / 고령자용 목욕의자	131
고령자 위치추적기 / 고령자 위치추적기	132
물안경 / 물안경	133
반사안전조끼 / 반사안전조끼	134
스테인레스 수세미 / 스테인레스 수세미	135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136
침대 매트리스 / 침대 매트리스	137
우산 및 양산 / 우산 및 양산	138
휴대용 경보기 / 휴대용 경보기	139
접촉성 금속 장신구 / 접촉성 금속 장신구	140
벽지 및 종이장판지 / 벽지 및 종이장판지	141
합성수지제품 / 합성수지제품	142



Index 색인(가나다순)

감열지 / 감열지	143	모터 달린 보드 / 모터 달린 보드	93
가(假)속눈썹 / 가(假)속눈썹	100	물놀이기구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20
가구(높이 762mm 이상 서랍장/파일링캐비닛 제외)	122	물놀이기구 / 공기주입보트	21
가스라이터 / 가스라이터	19	물놀이기구 /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23
가정용 미용기기 / LED 마스크	80	물놀이기구 / 수영보조용품(착용형)	22
가정용 미용기기 / 눈 마사지	82	물안경 / 물안경	133
가정용 미용기기 / 두피관리기	81	물탱크 / 물탱크	88
가정용 미용기기 / 플리즈마 미용기기	83	미끄럼방지타일 / 미끄럼방지타일	34
가정용 섬유제품 / 가정용 섬유제품	116	바퀴달린 운동화 / 바퀴달린 운동화	9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솔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솔	18	반사안전조끼 / 반사안전조끼	134
가족제품 / 가족제품	119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마스크 /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마스크	114
간이빨래걸이 / 간이빨래걸이	121	벽지 및 종이장판지 / 벽지 및 종이장판지	141
감열지 / 감열지	143	비비탄총 / 성인용	25
건전지(충전지를 제외한다) / 건전지(충전지를 제외한다)	31	비비탄총 / 청소년용	24
고령자 위치추적기 / 고령자 위치추적기	132	빙삭기 / 빙삭기	113
고령자용 목욕의자 / 고령자용 목욕의자	131	선글라스 / 선글라스	124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35	속눈썹 열 성형기 / 속눈썹 열 성형기	97
고령자용 보행차 / 롤레이터	37	쇼핑카트 / 쇼핑카트	101
고령자용 보행차 / 워킹테이블	38	수유파드 / 수유파드	69
고령자용 보행차 / 워킹프레임	36	스노보드 / 스노보드	41
고령자용 신발 / 고령자용 신발	128	스케이트보드 / 스케이트보드	42
고령자용 지팡이 / 고령자용 지팡이	129	스케이트보드 / 전동보드류	46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130	스케이트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45
기름 난로(연료소비량 600g/h 이하) / 기름 난로	72	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44
등산용 로프 / 등산용 로프	28	스키용구 / 스키용구	47
디지털 도어록 / 디지털 도어록	39	스테인레스 수세미 / 스테인레스 수세미	135
롤러 스케이트 / 롤러 스케이트	91	스포츠용 구명복 / 부력 보조복	30
롤러스포츠보호장구 / 롤러스포츠보호장구	40	스포츠용 구명복 / 스포츠용 구명복	29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다) / 승차용 안전모	60	접촉성 금속 장신구 / 접촉성 금속 장신구	140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136	창문블라인드 / 창문블라인드	94
실내용 바닥재 / PVC 바닥재	65	침대 매트리스 / 침대 매트리스	137
실내용 바닥재 /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67	킥보드 / 킥보드	112
쌍꺼풀용 테이프 / 쌍꺼풀용 테이프	96	텐트 / 텐트	127
안경테 / 안경테	126	폴리염화비닐관 / 연질염화비닐호스	86
야외 운동기구 / 야외 운동기구	79	폴리염화비닐관 / 폴리염화비닐관	87
양탄자 / 양탄자	118	합성수지제품 / 합성수지제품	142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 온열팩	68	헬스기구 / 고정식 자전거	55
우산 및 양산 / 우산 및 양산	138	헬스기구 / 고정식운동기구	52
운동용 안전모 / 등산용 안전모	62	헬스기구 / 러닝머신	54
운동용 안전모 / 스키용 안전모	63	헬스기구 / 로잉머신	57
운동용 안전모 / 야구용 안전모	64	헬스기구 / 벤치 프레스	53
운동용 안전모 / 자전거·롤러스포츠용 안전모	61	헬스기구 / 스텝퍼	56
이륜자전거 / 산악용 자전거	50	헬스기구 / 운동용 슬라이더	58
이륜자전거 / 일반용 자전거	48	휴대용 경보기 / 휴대용 경보기	139
이륜자전거 / 전기자전거	51	휴대용 레이저용품 / 휴대용 레이저용품	59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11	휴대용 사다리 / 계단식 소형 사다리	109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32	휴대용 사다리 / 도배용 사다리	105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16	휴대용 사다리 / 원예용 사다리	107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타이어 재생용 트레드그루	17	휴대용 사다리 / 주택용 사다리	102
자동차용 타이어 / 자동차용 타이어	33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휴대용 예초기 보호덮개	71
자동차용 휴대용잭 / 자동차용 나사식 잭	99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휴대용 예초기의 날	70
자동차용 휴대용잭 / 자동차용 유압식 잭	98		
전동보드 / 전동스케이트보드	74		
전동보드 / 전동외륜 / 이륜보드	78		
전동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77		
전동보드 / 전동킥보드	76		

알기쉬운 생활용품 표시사항 작성 가이드북

1쇄 발행 2020년 12월 1일

2쇄 발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 한국제품안전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10호(구로동)
www.ksafety.kr

발행인 : 이영식

전 화 : 02-890-8300

팩 스 : 02-890-8309

주 최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